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사이버상 유권자의사 왜곡 방지에 관한 연구

김대근 임석순 유진



본 연구보고서는 2017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용역연구과제로서
연구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견해가 아님

연 구 진

연구책임자 김대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법학 박사)
공동연구자 임석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법학 박사)
유 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과학기술학 박사)

목 차

| 제1장 | 연구의 목적과 방법 1

제1절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의 방법 4

| 제2장 |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의 개념과 범위 7

제1절 이른바 가짜뉴스의 개념과 범위 9

1. 가짜뉴스의 문제배경과 인접개념 9

가. '가짜뉴스'의 문제배경 10

나. '가짜뉴스'의 인접개념 13

1) 풍자적 가짜뉴스(satirical fake news)와 패러디 13

2) 루머 16

3) 오보 17

2. '가짜뉴스'의 정의와 판단기준 18

가. 가짜뉴스, 잘못된 정보, 허위정보 18

나. 가짜뉴스의 발화주체 요소: 인식과 의도 20

다. 가짜뉴스의 내용 요소: 허위성 21

라. 가짜뉴스의 형식 요소: 언론보도 양식 23

3. 가짜뉴스의 유형과 특성 23

가. 선거정보(election information)의 유형 23

나.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25

다. 사회적 이슈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26

제2절 가짜뉴스의 불법성 검토 28

1. 일반론 28

2. 불법성의 요인 30

가. 인격권 침해의 쟁점 - 명예훼손, 모욕, 사생활침해 30

나. 혐오표현의 확산 32

다. 저작권 33

라.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기본법 34

마. 공직선거법 위반	35
3. 관련 행위주체별 책임성 판단	38
가. 가짜뉴스 작성자	38
나. 가짜뉴스 배포·확산자	38
다. 언론사 - 뉴스의 진실 여부를 체크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퍼다 나른” 주요 언론사의 책임	39
라. 인터넷서비스사업자	40
마. 정당, 시민단체 등 - 팩트체크 없이 가짜뉴스를 무분별하게 정략적으로 이용한 경우	43

| 제3장 | 허위사실 생성·유포의 현황 및 요인 45

제1절 제18대 대선(2012) 및 제19대 대선(2017)에서 나타난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 현황	47
-------------------------	----

1. 사이버 선거범죄 현황	47
2. 가짜뉴스 유포 현황	50

제2절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의 요인 51

1. 정치적 환경요인	51
가. 사이버 선거운동의 등장	51
나. 정치적 의사표현의 민주화와 이념적 극단화	54
2. 심리적 설명요인	55
가. 태도극화와 집단극화	55
나. 선택적 노출과 확증편향	56
3. 기술적 환경요인	58
가. 모바일 환경의 보편화	58
나. SNS의 유형과 가짜뉴스	61

제3절 차단과 규제가능성 검토 65

1. 기술적 차단 가능성과 한계	65
2. 팩트체크	66
가. 전문 언론인에 의한 팩트체크	66
나. 자동화된 팩트체크	68
3. 사이버 리터러시	69

**| 제4장 |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사이버상) 유권자 왜곡에
대한 법적 규제와 쟁점 73**

제1절 표현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와의 충돌 75

제2절 관련 법적 규제와 제도 검토 77

1. 공직선거법에 따른 ‘가짜뉴스’ 제재 가능성 - 이른바 “찌라시”를
이용한 유권자 의사왜곡의 경우 79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유권자 의사왜곡 -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분석 ... 84

제3절 피해자 구제방안 90

1. 해당 선거 무효 및 재선거 가능성 90
2. 선거관리위원회 및 후보자의 삭제요청 권한 90
3. 당사자의 이의신청 권한 90

**| 제5장 |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사이버상 유권자 의사
왜곡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91**

제1절 미국의 대응 사례와 정책 93

1. 선거에 등장한 가짜뉴스 현황 93
 - 가. 가짜뉴스 사례 93
 - 나. 소셜네트워크에서 가짜뉴스 유통 경로 95
 - 다. 가짜뉴스의 영향력에 대한 평가 98
2.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99
 - 가.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의 역사 및 기본 태도 99
 - 나. 각종 법적 규제 100
 - (1) 연방형법 100
 - (2) 미국연방규정집 100
 - (3) 캘리포니아 주의 정치적 사이버사기 방지법 101
3. 인터넷 사업자 등의 자체적 대응방안 102
 - 가. 페이스북 102
 - 나. 구글 104

제2절 영국의 대응 사례와 정책	105
1. 선거에 등장한 가짜뉴스 현황	105
가. 가짜뉴스 사례	105
나. 가짜뉴스의 영향력에 대한 평가	107
2.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응방안	108
가. 명예훼손법(Defamation Act 2013)	108
(1) 보통법상 명예훼손죄 폐지와 명예훼손법 개정	108
(2) 명예훼손법의 주요 내용	110
1) 중대한 해악	110
2) 일반적 면책사유 : 본질적 진실과 정직한 의견	110
3) 웹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면책규정	111
나. 하원 문화·미디어·스포츠위원회의 조사	112
다. 각종 위원회와 공공기관의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	114
3. 인터넷 사업자 등의 자체적 대응방안	115
제3절 독일의 대응 사례와 정책	116
1. 선거에 등장한 가짜뉴스 현황	116
2.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119
가. 독일형법	119
(1) 국민선동죄(형법 제130조)	119
(2) 모욕에 관한 죄(형법 제185조 ~ 제188조)	120
나. 독일 연방선거법	122
다. 소셜네트워크에서 법집행 개선을 위한 법률	123
(1) 입법 배경 및 경과	124
(2) 주요 내용	125
(3) 본 법률에 대한 평가	126
3. 인터넷 사업자 등의 자체적 대응방안	128
제4절 프랑스의 대응 사례와 정책	130
1. 선거에 등장한 가짜뉴스 현황	130
2.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131
가. 언론 출판의 자유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	131
나. 선거법상 허위정보로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132
다.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안	133

- 3. 민간 차원의 대응책 134
 - 가.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페이스북과 프랑스 언론사의 공조 134
 - 나. 르 몽드의 Les Décodeurs 134
- 제5절 일본의 대응 사례와 정책 136
 - 1. 선거에 등장한 가짜뉴스 현황 136
 - 2.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139
 - 가. 일본형법 139
 - (1) 명예훼손죄 139
 - (2) 업무방해죄 140
 - 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140
 - 3. 민간 차원의 대응책 : 팩트체크 이니셔티브
(ファクトチェック・イニシアティブ) 141
 - 가. 단체의 설립배경 및 취지 141
 - 나. 2017 총선거 프로젝트 142
- 제6절 각국의 정책 비교 및 시사점 144
 - 1. 가짜뉴스에 대한 우려와 영향력 144
 - 2. 가짜뉴스 제재정책의 방향성 145
 - 가. 종래 형사처벌 규정 활용 145
 - 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강화 146
 - 3. 시사점 147

**| 제6장 |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 149**

- 제1절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확산방지를 위한 법적 대응 방안 151
 - 1.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규제 법률 개관-사전 규제의
관점에서 151
 - 가. 법적 규제의 대상으로서 가짜뉴스의 문제점 151
 - 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152
 - 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법 위반 선거정보 전송 및 게시 155
 - 라. 기타 가짜뉴스 관련 규정 157

2. 사전규제 방식의 모색	158
가. 사전규제의 내재적 한계	158
나. 사전규제 유사효과 도출 방안 검토	160
다. 해외 사이트 차단 및 절차 간소화	162
3. 형법, 선거법 상 형사처벌 규정 정비	163
가. 가짜뉴스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적 규제	163
나. 재산취득을 위한 가짜뉴스 규제	165
다. 선거목적의 가짜뉴스 규제	165
라. 사회혼란 야기를 위한 가짜뉴스 규제	166
4. 정보매개자에 의한 가짜뉴스 유통확산 규제	166
5.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입법적 대응 모색	167
가. 현재 법제 담론 동향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대두	167
나. 언론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팩트체크 기능 의무화 검토	168
다. 공직선거법 개정 가능성 검토	169
(1)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기능 확대	169
(2) 사이버부정감시단의 기능 명확화	169
(3) 선거관리위원회 자체 팩트체크 링크 사이트 운영	170
(4) 선거정보 활용 리터러시 교육 근거규정 신설	170
6. 주요 언론 및 인터넷사업자의 팩트체크 법적 의무화?	170
제2절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피해 최소화 방안	172
제3절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피해회복 방안	175
참고문헌	179

표 차례

〈표 2-1〉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짜뉴스” 정의	18
〈표 3-1〉 제18대 및 제19대 대선 사이버 위반행위 유형 및 조치 현황	48
〈표 3-2〉 제18대 대선 사이버 상 비방·흑색선전 행위 매체 및 조치 현황	48
〈표 3-3〉 제19대 대선 사이버 상 허위사실공포 및 후보자 등 비방행위 매체 및 조치 현황	49
〈표 3-4〉 19대 총선 서울 지역 후보들의 트위터 캠페인 활동	53
〈표 3-5〉 19대 총선 유권자들의 트위터 선거참여 활동(서울 지역)	53
〈표 3-6〉 연령대별 주이용 SNS 서비스 현황	60
〈표 5-1〉 2017년도 독일 연방하원 총선 득표율	118

그림 차례

[그림 2-1] 2013년 세계 위험 지도	12
[그림 2-2] 데일리 쇼 캡처화면	14
[그림 2-3] 콜베어 리포트 캡처화면	14
[그림 2-4] 온라인 뉴스 풍자 사이트 'the Onion' 홈페이지	15
[그림 2-5] 가짜뉴스의 침해법익과 생산주체에 따른 규제 법률 영역	28
[그림 3-1] 가짜뉴스로 판단되는 정보를 받아 본 주된 경로	51
[그림 3-2] 가짜뉴스로 판단되는 정보를 받아 본 주된 인터넷서비스 경로	64
[그림 5-1] 미국의 소셜미디어 인지도	96
[그림 5-2] 월간 소셜 네트워킹 모바일 앱 사용시간(7월)	97
[그림 5-3] 2016년도 선거에 대한 정보획득 수단	98
[그림 5-4] Your Brexit의 가짜뉴스 화면	106
[그림 5-5] Les Décodeurs가 설치된 브라우저	135
[그림 5-6] "한국신문" 메인화면 캡처	137

연구의 목적과 방법

연구의 목적과 방법

제1절 연구의 목적

가짜뉴스(fake news)에 대한 피해 내지 심각성이 최근 자주 거론되고 있다. 물론 타인을 비방하거나 공격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흑색선전 또는 루머의 형태로 오래전부터 존재해왔지만, 최근의 형태는 발달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에 힘입어 그 영향력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이러한 가짜뉴스는 후보자 내지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rational choice)을 방해하고 선호를 왜곡하기 마련이다.

이는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정착된 사회에서 보다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선거 운동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이러한 표현들은 시민들에게는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일환으로 행사되고 동시에 피선거권자에게는 선거 운동의 자유로서 광범위하게 허용되는 것이다. 때문에 이를 규제하는 것은 자칫 표현의 자유 내지 선거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그 규제가 매우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가짜뉴스(fake news)라는 용어 또한 미국 및 유럽 등지에서 사용되면서 사회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독일의 경우, 가짜뉴스나 증오 발언 등 불법적인 내용을 24시간 이내에 삭제하지 않는 소셜미디어 기업에 최대 5000만유로(약 602억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되기도 한 것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것이다. 한편 이는 표현물에 관한 규제(내용규제)에 신중한 입법 태도를 견지

1) 합리적 선택이론에 대해서는 김대근, 「권리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의 의의와 한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제2장 일반화된 법경제학 개관, 특히 IV. 법경제학의 한계상황 이하; 캐플란, (이현우 외 역), 『합리적 투표자에 대한 미신 : 민주주의가 나쁜 정책을 채택하는 이유』, 북코리아, 2008, 특히 제5장 “합리성의 비합리성” 부분 참조.

4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사이버상 유권자의사 왜곡 방지에 관한 연구

해 오던 국가들에 있어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논란이 되었던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른바 가짜뉴스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 더 나아가 이를 통해 사이버상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는 것에 대한 분석과 규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대응방안과 그러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논의에서는 표현의 자유 및 선거의 자유와, 법적 규제 수단과의 팽팽한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제2절 연구의 방법

이를 위해 먼저 가짜뉴스를 통한 유권자 의사가 왜곡되는 현상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논리상 먼저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의 개념과 범위를 확정한다(제2장). 이 안에서 가짜뉴스의 문제배경과 인접 개념을 검토하고(제1절) 가짜뉴스의 판단기준을 발화주체별, 내용요소별, 형식요소별로 검토한다(제2절). 이를 통해 가짜뉴스의 불법성과 그에 따른 행위주체별 책임을 분석하게 될 것이다(제3절).

앞의 부분에서 가짜뉴스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였다면,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특히 이와 같은 허위사실 등의 유포가 선거에서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제3장). 유권자의 의사 왜곡이라는 문제의식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체적인 현상에 대한 분석과 이해가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 비교적 최근의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2012년의 제18대 대선과 2017년의 대선에서 나타난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 현황을 살피고(제1절), 이를 통해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의 요인(제2절)과 그에 대한 차단 및 규제가능성(제3절)을 검토한다.

이에 더 나아가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사이버상 유권자 의사의 왜곡에 대한 법적 쟁점과 규제 수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제4장). 당연하게도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제1절), 특히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규제 방안에 대한 법해석학적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제2절). 이를 통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피해자 구제방안도 검토한다(제3절).

한편 이에 대해 선제적으로 고민을 했던 외국의 비교법적 검토가 매우 유용할 것이다.(제5장). 가짜뉴스에 대한 미국의 대응 사례와 정책을 필두로(제1절), 영국의 대응 사례와 정책(제2절), 독일의 대응 사례와 정책(제3절), 프랑스의 대응 사례와 정책(제4절), 일본의 대응 사례와 정책(제5절)을 상세하게 검토한 후에, 각국의 정책을 비교하여 우리 법과 실무에 유용할 시사점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제6절)

이러한 다각도의 분석을 바탕으로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을 찾는다(제6장). 먼저 미시적으로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확산방지를 위한 법적 대응을 사전(ex ante) 규제 방안과 사후(ex post) 규제 방안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구체적인 입법적 대안을 제시한다(제1절). 더불어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피해 최소화 방안과(제2절) 피해회복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다(제3절).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의 개념과 범위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의 개념과 범위

제1절 이른바 가짜뉴스의 개념과 범위

1. 가짜뉴스의 문제배경과 인접개념

타인을 비방하거나 공격하는 허위사실은 흑색선전 또는 루머의 형태로 오래 전부터 존재해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이러한 허위사실은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를 해치는 복병으로 지목되어 허위사실 유포 현상의 원인 분석 및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촉발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 5월에 치러진 제19대 대선을 전후하여 허위사실 유포가 “가짜뉴스”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 “가짜뉴스”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2017년 4월부터 9월까지 6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2017년 12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이들 개정법률안은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규정과 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킨 경우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나아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가짜뉴스 삭제의무 규정과 의무 미이행 시 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²⁾

2) 김관영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2006708, 2017. 4. 11. 발의; 주호영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2006804, 2017. 4. 25. 발의; 안호영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2007095, 2017. 5. 30. 발의; 이은권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2008194, 2017. 7. 26. 발의; 송희경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2008392, 2017. 8. 4. 발의; 이장우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2008920, 2017. 9. 1. 발의.

이처럼 가짜뉴스 현상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한편, 이러한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특히, 가짜뉴스의 개념 정의가 명확히 되지 않으면 과잉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가짜뉴스의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규제가 필요한 영역을 구획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³⁾ 이러한 문제제기에 따라 여기에서는 가짜뉴스의 문제배경을 먼저 살펴본 후, 관련된 인접개념들과 “가짜뉴스”의 개념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가. ‘가짜뉴스’의 문제배경

옥스퍼드 영어사전은 2016년 올해의 단어로 “post-truth”를 선정하면서, 이를 여론형성에서 감정과 개인적 믿음에 대한 호소보다 객관적 사실의 영향력이 적은 상황을 이르는 형용사로 정의한 바 있다.⁴⁾ ‘사실’의 무력함을 선언하는 단어 선정은 2016년 6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한 국민투표 결과와 2016년 11월 도널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미국 대선 결과에 기인한 바 크다. 당시 전세계의 관심과 이목을 끌었던 브렉시트(Brexit) 국민투표와 미국 대선은 언론과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은 결과를 내놓았고 이러한 결과가 나온 한 원인으로 페이크 뉴스(fake news)가 지목되었다.

미국 대선의 경우, 두 후보 지지자들 간에 대립이 심화되면서 선거운동 시기에 당파성을 띤 허위사실 유포가 선거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2016년 10월에 발표된 버즈피드 뉴스(Buzzfeed News)의 분석에 따르면 페이스북에서 방문자가 많은 당파성을 띤 페이지 중 6개 페이지를 살펴본 결과 가장 부정확한 콘텐츠가 게시되는 페이지가 가장 많이 공유되거나 댓글이 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버즈피드가 분석한 우파 성향의 페이스북 계정 3개가 올린 콘텐츠 중 38%가 허위사실을 담고 있었으며 진보 성향의 계정 3개를 분석한 결과 19%가 거짓을 담고 있었다. 버즈피드의 분석에서 눈에 띄는 것은 허위사실을 담고 있는 콘텐츠 비율이 가장 높은 계정이 가장 많은 수의 ‘좋아요’, ‘공감’, 공유를 기록했으며, 당파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거나 의견을 피력하거나 또는 독자를 오도하는 콘텐츠가 그러한 반응을 더 많이 이끌어냈다는

3) 황용석·권오성, 「가짜뉴스의 개념화와 규제수단에 관한 연구 -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 언론과 법 제16권 제1호, 2017, 57쪽.

4) <https://en.oxforddictionaries.com/word-of-the-year/word-of-the-year-2016>(2017년 11월 30일 최종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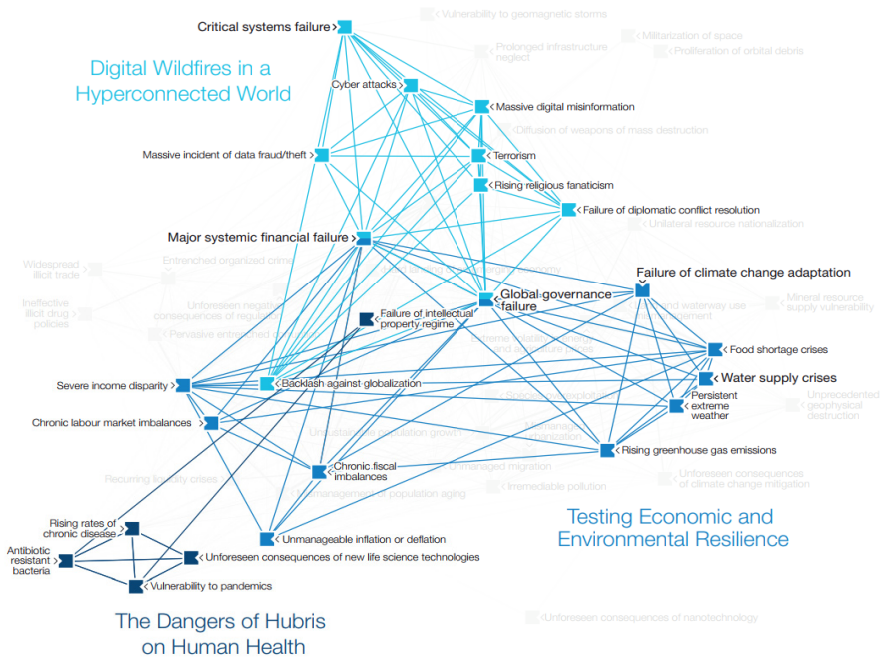
점이다. 이처럼 당파성을 띤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라온 허위사실은 트럼프를 당선시킨 대선 시기의 대립적인 정치구도를 반영하여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위치한 집단에 대한 공격과 고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로써 분열과 양극화를 추동했다는 우려를 낳았다.⁵⁾

그러나 거짓정보의 유포가 사회적 위험요소로 등장한 것은 비단 미국 대선 등 최근 일이년 간의 계기로 인한 것은 아니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산업계, 정부, 학계, 시민사회의 전문가 1,000명 이상의 의견을 모아 향후 10년 간 가장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요소들을 선정하여 해마다 “세계의 위험” 보고서(Global Risks report)를 발표한다. 2013년 “세계의 위험” 보고서에는 ‘초연결된 세계의 디지털 산불’(Digital Wildfires in a Hyperconnected World)이라는 제목 아래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들을 수록하고 있다. 여기에 속하는 위험요소는 잘못된 디지털 정보가 대규모로 유포되는 문제(massive digital misinformation) 외에도 사이버공격, 대규모 데이터 유출, 시스템 붕괴 등이 포함되어 있다.⁶⁾

5) “Hyperpartisan Facebook Pages Are Publishing False And Misleading Information At An Alarming Rate”, https://www.buzzfeed.com/craigsilverman/partisan-fb-pages-analysis?utm_term=.upPAm5G54O#.fo01WdxdDg (2017년 12월 5일 최종검색).

6) World Economic Forum, *Global Risks 2013*, Eighth Edition, 6쪽, http://www3.weforum.org/docs/WEF_GlobalRisks_Report_2013.pdf (2017년 11월 30일 최종검색).

12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사이버상 유권자의사 왜곡 방지에 관한 연구



[그림 2-1] 2013년 세계 위험 지도

※ 출처: World Economic Forum, *Global Risks 2013, Eighth Edition*, 6쪽
 (http://www3.weforum.org/docs/WEF_GlobalRisks_Report_2013.pdf, 2017년 11월 30일 최종검색).

‘디지털 산불’(Digital Wildfires)은 수용자를 오도하거나 도발하는 정보가 바이러스처럼 빠르게 퍼져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 현상을 뜻한다.⁷⁾ 세계경제포럼의 보고서는 이러한 디지털 산불이 가장 위험한 경우로서 다음 두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재난이나 전쟁 등 긴장이 고조된 시기에 잘못된 정보가 유포되는 경우, 인파가 들어찬 극장에서 누군가 불이 났다고 외친 것처럼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대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 둘째,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면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자 하는 시도에 저항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정보의 진위여부와 무관하게 기존에 지니고 있던 세계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선별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임으로써 잘못된 믿음을 수정하는 데 저항하는 현상은 흔히 ‘확증편향’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경제포럼 보고서는 이러한 현상이 정보가 공적으로 게시되지 않고 페이스북의 친구

7) World Economic Forum, 앞의 글, p.23

네트워크를 따라 유포되거나 또는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와 같이 더욱 불투명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유포되는 경우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처럼 신뢰관계로 엮인 네트워크를 통해 잘못된 정보가 유포되는 경우 수용자는 해당 정보를 더 쉽게 신뢰하므로 이를 발견하여 바로잡는 것은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⁸⁾

나. ‘가짜뉴스’의 인접개념

1) 풍자적 가짜뉴스(satirical fake news)와 패러디

흔히 가짜뉴스로 번역되는 ‘페이크 뉴스’(fake news)는 본래 풍자적 시사 엔터테인먼트 장르를 주로 일컫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 미국의 코미디 전문채널인 코미디 센트럴에서 방영하는 ‘데일리 쇼’(The Daily Show)와 ‘콜베어 리포트’(The Colbert Report)는 대표적인 정치풍자 페이크 뉴스이다. 데일리 쇼는 1996년 최초 방영된 후 1999년부터 2015년까지 존 스투어트가 진행을 맡아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얻은 프로그램이며, 스티븐 콜베어(Steven Colbert)가 진행하는 콜베어 리포트는 2005년부터 방영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정치풍자 프로그램은 CNN과 같은 주류 뉴스채널이나 FOX 뉴스와 같은 정파적 색채가 짙은 채널의 뉴스 보도 및 인터뷰 형식을 차용하되 주요 사회적 이슈와 정치에 대한 농담과 풍자를 통해 현실정치의 모순과 불합리함을 부각시키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진품이 아닌 모조품이나 위조물을 뜻하는 ‘페이크’(fake)로서 이러한 정치풍자 쇼는 기존 뉴스 프로그램의 형식을 빌린 패러디 장르를 의미한다.

8) World Economic Forum, 앞의 글, p.25

14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사이버상 유권자의사 왜곡 방지에 관한 연구



[그림 2-2] 데일리 쇼 캡처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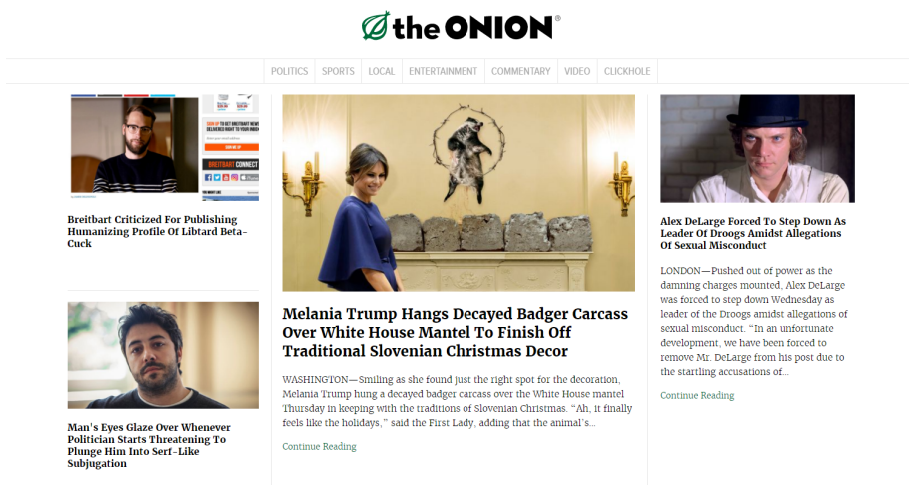
※ 출처: "Jon Stewart Jokingly Threatened to Quit Early if Donald Trump Didn't Run for President", Vanity Fair, 2015. 6. 24.
(<https://www.vanityfair.com/hollywood/2015/06/jon-stewart-donald-trump-daily-show>, 2017년 12월 12일 최종검색).



[그림 2-3] 콜베어 리포트 캡처화면

※ 출처: "Stephen Colbert explains why he thinks Donald Trump doesn't really want to be president at all", Business Insider, 2016. 1. 26.
(<http://www.businessinsider.com/stephen-colbert-says-donald-trump-doesnt-want-to-be-president-2016-1>, 2017년 12월 12일 최종검색).

온라인 상에서 풍자적 페이크 뉴스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사이트로는 ‘어니언’(The Onion)을 들 수 있다. 1988년에 오프라인 간행물로 출발한 어니언은 현재 온라인 간행물만 내고 있는 풍자 뉴스 사이트이다.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뉴스 정보 통”(America’s finest news source)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는 어니언은 주로 코메디 장르의 전문 작가들로 구성된 조직으로 뉴욕타임즈와 같은 주류 언론의 문체와 스타일을 모방하여 풍자물을 생산해낸다.⁹⁾



[그림 2-4] 온라인 뉴스 풍자 사이트 ‘the Onion’ 홈페이지

(<https://www.theonion.com>, 2017년 12월 1일 최종검색)

2016년 미국 대선을 경유하면서 가짜뉴스의 부작용과 차단방안에 대한 논의가 점화됨에 따라, 어니언과 같은 풍자 사이트는 거짓된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페이크 뉴스와 풍자를 구분하려고 애쓰기도 하였다. 일례로 어니언의 창립자인 스캇 디커스(Scott Dikkers)는 페이크 뉴스와 풍자를 구분하면서 어니언은 풍자매체이며 거짓이나 프로파간다를 퍼뜨리는 페이크 뉴스와 전적으로 다름을 지적하기도 했다.¹⁰⁾ 즉, 어니언과 같은 풍자 매체는 독자를 기만하려는 의도로 기사를 생산하지 않으며, 풍자기사

9) The Onion, <https://www.theonion.com/>(2017년 12월 4일 최종검색).

10) “The Onion’ founder: We do satire, not fake news”, <http://www.wisn.com/article/the-onion-founder-we-do-satire-not-fake-news/8940879> (2017년 12월 4일 최종검색).

가 사실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은 일종의 농담이라는 것을 독자가 파악하여 웃음을 유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¹¹⁾

풍자적 페이크 뉴스가 문제가 되는 것은 콘텐츠 생산자의 의도와 달리 해당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인 수용자들이 이를 유포하면서 진위의 구분이 흐려지는 경우이다. 일례로 페이스북에서 “Real News Right Now”라는 제목으로 운영되는 풍자 사이트에서 오바마 정부가 25만 명의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여 나바호 미국원주민 보호구역에 수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는 패러디 뉴스를 올렸다. 이후 폭스 뉴스와 트럼프가 25만 명의 난민 수용 계획을 언급하면서 이를 비난했고, 팩트체크 프로젝트인 폴리티팩트(PolitiFact)에서 트럼프가 비난한 난민수용 계획은 사실과 다르며 25만 명의 난민 수용계획을 언급한 기사는 풍자 목적의 가짜뉴스였음을 밝혀냈다.¹²⁾ 이처럼 풍자적 페이크뉴스는 이를 작성한 자의 의도와 달리 일부 수용자에게 사실로 받아들여져 유포되기도 한다.¹³⁾

2) 루머

‘루머’(rumor)는 “확실한 증거가 없지만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구전 등을 통해 전달되는 진술”¹⁴⁾ 또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사적인 관계성을 통해 확산되는 정보”¹⁵⁾라고 정의할 수 있다. 루머, 또는 소문은 공식적인 미디어 채널이 아닌 사람들 사이의 관계망을 타고 전달되어 유포되는 이야기로 사실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즉, ‘루머’라는 용어는 대체로 부정적인 맥락에서 사용되지만 사실성의 측면에서 반드시 허위인 것은 아니며 오히려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11) “The Onion in the age of Trump: ‘What we do becomes essential when its targets are this clownish’”, <https://www.theguardian.com/culture/2017/aug/28/the-onion-in-the-age-of-trump-what-we-do-becomes-essential-when-its-targets-are-this-clownish> (2017년 12월 4일 최종검색).

12) “Donald Trump says President Obama wants the U.S. to take in 250,000 people from Syria”, <http://www.politifact.com/texas/statements/2015/dec/01/donald-trump/donald-trump-says-president-obama-wants-us-take-25/> (2017년 12월 4일 최종검색).

13) “As fake news takes over Facebook feeds, many are takine satire as fact”, <https://www.theguardian.com/media/2016/nov/17/facebook-fake-news-satire> (2017년 12월 4일 최종검색).

14) 황용석·권오성, 앞의 논문, 63쪽.

15) 마츠다 미사(이수형 옮김), 『소문의 시대』, 추수밭, 2016, 29쪽.

3) 오보

‘가짜뉴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내용의 허위성이다. 즉,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가짜뉴스일 가능성이 높는데, 이 가운데 텍스트 작성자의 의도와 관련하여 정보 수용자를 기만하려는 의도 없이 풍자 등의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담아 제작된 텍스트는 풍자 또는 패러디 장르의 하나로서 가짜뉴스와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앞에서 지적하였다. 이외에 잘못된 내용을 포함한 보도, 즉 오보(誤報)와 가짜뉴스의 구별기준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잘못된 보도’를 뜻하는 ‘오보’는 ‘정확한 보도’와 ‘잘못된 보도’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느냐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가능한 개념이다. 예를 들어, 사실 오인을 유도할 수 있는 의견표명을 오보의 영역으로 포섭할 수 있는지, 갈등 상황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균형잡힌 시각으로 전달하지 않고 한 쪽의 입장전달을 생략한 편파보도를 오보라고 볼 수 있는지 등의 모호한 영역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처럼 회색지대에 걸쳐 있는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시도로서, 객관적 오보와 주관적 오보를 나누어 고찰할 필요가 있다. 객관적 오보란 실제 사실과 불일치하는 것을 말하며 주로 날짜, 장소, 이름 등 해석의 여지 없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뜻한다. 반면, 주관적 오보는 “의미의 생략이나 잘못된 강조, 의미 축소, 과장 등의 맥락상 오해, 전체적 인상, 기사 내용 또는 제목에 의견 삽입으로 인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¹⁶⁾ 즉, 명백히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것 뿐 만 아니라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확정된 것처럼 전달하는 보도, 과장·왜곡보도, 편파적 해석을 담고 있는 보도 등도 경우에 따라 오보로 판단할 수 있다.¹⁷⁾

16) 김영욱·신호창·임유진, 「정보 소스로서 홍보담당자와 언론인의 오보에 대한 인식 비교」, 한국방송학보 통권 제21-3호, 2007, 166쪽.

17) 국정홍보처, 오보 유형에 대한 내부 자료, 2006(김영욱·신호창·임유진, 앞의 논문, 166-167쪽에서 재인용).

2. ‘가짜뉴스’의 정의와 판단기준

가. 가짜뉴스, 잘못된 정보, 허위정보

황용석과 권오성은 “언론의 외양적 진실스러움을 흠친 기만적 가짜정보”를 가짜뉴스로 정의한다.¹⁸⁾ 이러한 의미에서의 가짜뉴스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세 가지 요소로 ① “상업적 또는 정치적 목적에서 타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담긴 정보”, ② “수용자가 허구임을 오인하도록 언론보도의 양식을 띤 정보”, ③ “사실검증이라는 저널리즘의 기능이 배제된 가운데 검증된 사실처럼 허위포장한 정보”를 들 수 있다.¹⁹⁾ 이와 유사하게 박아란은 가짜뉴스를 “작성 주체와 상관없이 ① 허위의 사실관계를 ② 허위임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유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③ 기사 형식을 차용해 작성한 것”으로 정의한다.²⁰⁾ 지금까지 발의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도 대체로 이러한 정의를 따르고 있다.

〈표 2-1〉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짜뉴스” 정의

대표 발의자	의안번호	발의연월일	“가짜뉴스” 정의
김관영 의원	2006708	2017. 4. 11.	“거짓의 사실을 언론보도의 형식으로 제공해 이용자들이 오인하게 하는 정보”
주호영 의원	2006804	2017. 4. 25.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고의로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포함하는 내용의 정보” 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
안호영 의원	2007095	2017. 5. 30.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업적 또는 정치적으로 정보를 매개로 타자를 속이려는 기만적 의도성을 가진 행위로 수용자가 허구임을 오인하도록 언론보도의 양식을 띤 정보 또는 사실검증이라는 저널리즘의 기능이 배제된 가운데 검증된 사실로 포장하는 행위”
이은권 의원	2008194	2017. 7. 26.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
송희경 의원	2008392	2017. 8. 4.	“거짓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의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
이장우 의원	2008920	2017. 9. 1.	“본인 또는 제3자의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고의로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

18) 황용석·권오성, 앞의 논문, 53쪽.

19) 황용석·권오성, 앞의 논문, 68쪽.

20) 박아란, 「가짜뉴스에 대한 법률적 쟁점과 대책: 범위 설정, 판별법, 판단 주체 등 해결 과제 ‘산 넘어 산’」, 신문과 방송, 2017년 4월호, 14쪽.

각 발의안은 규제대상인 ‘가짜뉴스’를 정의하는 데 있어 허위성과 언론보도로 오인될 수 있는 형식적 요소를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두 가지 요소는 각각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가짜뉴스를 변별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기준이라 할 수 있는 허위성 요소와 관련하여 발의된 법률안들은 “거짓의 사실”,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포함하는 내용의 정보”, “허구”, “사실검증이라는 저널리즘의 기능이 배제된 가운데 검증된 사실로 포장하는 행위”를 ‘가짜뉴스’의 개념적 구성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거짓의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론(異論)의 여지가 있으며, 사실 판단의 맥락에 따라 무엇이 ‘사실’인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를 비롯한 대응방안을 고민하는 데 있어 그 대상인 ‘가짜뉴스’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핵심 기준이라 할 수 있는 허위성, 즉 “거짓의 사실”이나 “왜곡된 사실”, “허구” 등의 개념이 의미는 바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되는 가짜뉴스 현상은 앞서 세계경제포럼의 “세계의 위험” 보고서에서 보았듯이 ‘잘못된 디지털 정보’(digital misinformation)라는 표현으로 바꿔 말할 수 있다. 여기에서 ‘잘못된 정보’(misinformation)는 ‘부정확한 정보’(inaccurate information)를 뜻하며 ‘기만적 정보’(deceptive information)를 의미하는 ‘허위정보’(disinformation)와 구분되기도 한다.²¹⁾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는데, 가장 포괄적인 정의 방식은 ‘불완전한’(incomplete) 정보를 ‘잘못된 정보’로 보는 것이다.²²⁾ 이보다 좀 더 구체적인 분류방식으로는 은폐(concealment), 모호함(ambivalence), 왜곡(distortion), 조작(falsification)이 ‘잘못된 정보’에 속한다고 보기도 한다.²³⁾ 이외에도 ‘잘못된 정보’의 기준을 부정확성(inaccurate), 불확실성(uncertain), 불분명함(vague, unclear), 모호함

21) Natascha A. Karlova & Karen E. Fisher, “Plz RT”: A Social Diffusion Model of Misinformation and Disinformation for Understanding Human Information Behaviour”, *Proceedings of the ISIC 2012*, 2013, p.4.

22) Robert M. Losee, “A Discipline Independent Definition of Inform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Vol. 48 No. 3, pp.254-269(Natascha A. Karlova & Karen E. Fisher, 앞의 논문, p.3에서 재인용).

23) Lina Zhou & Dongsong Zhang, “An Ontology-Supported Misinformation Model: Toward a Digital Misinformation Library”, *IEEE Transactions on Systems, Man, and Cybernetics—Part A: Systems and Humans*, Vol. 37 No. 5, pp.804-813(Karlova & Fisher, 앞의 논문, p.3에서 재인용).

(ambiguous)을 들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불확실성’은 하나 이상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을 뜻하며 ‘모호함’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상황을 의미한다.²⁴⁾

이와 같은 개념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잘못된 정보’는 내용의 특성에 따라 판단되며 발화자의 의도는 고려되지 않는다. 반면, ‘허위정보’(disinformation)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정보수용자를 기만하려는 발화자의 ‘의도’를 중요한 요소로 포함하는 개념이라 볼 수 있다. 영어에서 허위정보를 뜻하는 ‘disinformation’은 비교적 최근인 1949년에 등장한 단어로, ‘잘못된 정보’의 한 유형으로 다뤄지기도 하지만 이와 구분되는 별개의 개념으로 보기도 한다. 예를 들어, 반드시 부정확하지 않더라도 특정 맥락에서 정보수용자를 오도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허위정보’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²⁵⁾

나. 가짜뉴스의 발화주체 요소: 인식과 의도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볼 때,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기준은 발화주체, 내용, 형식의 요소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발화주체의 요소는 발화자가 허위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누군가를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즉, 가짜뉴스를 단순히 ‘잘못된 정보’가 아닌 ‘허위정보’라고 본다면, 허위정보의 중요한 개념적 구성요소로서 기만성(欺瞞性)을 고려해야 하며, 여기에서 기만성은 정보를 유포할 때 누군가를 속이려는 의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²⁶⁾

발화주체의 허위성 인식과 기만의 의도는 가짜뉴스 규제방안 중 특히 제재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즉,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의 책임을 밝히고자 할 때 발화주체의 인식과 의도에 대한 판단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UN의 “표현의 자유와 “페이크 뉴스”, 허위정보, 프로파간다에 관한 공동 선언”은 특정 콘텐츠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데 참여하지 않고 단순히 유포한

24) Natascha A. Karlova & Jin Ha Lee, “Notes from the Underground City of Disinformation: A Conceptual Investigation”, Paper presented at the ASIST 2011(Karlova & Fisher, 앞의 논문, p.4에서 재인용).

25) Don Fallis, “A Conceptual Analysis of Disinformation”, Paper presented at the iConference 2009, 2009, p.6(Karlova & Fisher, 앞의 논문, p.4에서 재인용).

26) 황용석·권오성, 앞의 논문, 59쪽.

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기도 하다.²⁷⁾

그러나 사후적으로 책임을 밝히고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짜뉴스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정보의 흐름을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면 발화주체의 인식과 의도는 정보의 내용과 형식 요소에 비해 부차적인 것일 수 있다. 애초에 정보를 생산한 자 외에 2차적 발화자라고 할 수 있는 정보유포자 등이 허위사실을 진실이라고 믿고 기만의 의도 없이 이를 유통시킬 때 가짜뉴스의 부정적 효과가 오히려 증폭될 수 있다. 즉, 가짜뉴스가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여론 형성을 왜곡하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침식하는 등 규제가 필요할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경우에, 이를 사실로 믿고 기만의 의도 없이 정보를 실어 나르는 '선의의 정보전달자'들의 역할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정보생산자 또는 유포자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공론장을 형성하기 위해 가짜뉴스를 판별해내야 할 때에는 발화자의 인식이나 의도와 무관하게 정보의 내용 및 형식적 요소에 따라 가짜뉴스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다. 가짜뉴스의 내용 요소: 허위성

둘째, 가짜뉴스를 판단하는 기준 가운데 내용의 요소는 해당 정보가 사실과 다른 요소를 담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즉, 정보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지 여부에 따라 가짜뉴스를 변별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했듯이, 무엇이 사실인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으며 특히 정치적·사회적 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는 사실규명을 둘러싼 논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뉴스로 전해지는 내용은 특정한 날짜나 장소와 같이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사실의 전달을 넘어서 사건이나 이슈에 대한 '서술'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서술에서는 일부 사실의 생략과 누락, 또는 과장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거짓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이외에도,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의견이 혼합된 형태로 정보가 전달되는 경우, 진위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실'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 경계가 불분명할 수 있다.

27)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OHCHR), Joint Declaration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Fake News", Disinformation and Propaganda,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1287&LangID=E>(2017년 12월 11일 최종검색).

앞서 발화주체 요소와 관련하여 책임규명 및 제재의 목적과 가짜뉴스의 영향력 차단이라는 각각의 목적에 따라 발화자의 인식과 의도가 달리 고려되어야 함을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내용의 사실 합치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판단의 목적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즉,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한 것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고자 할 때에는 가짜뉴스의 판단기준으로서 허위성 여부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이는 특히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한계설정의 문제와 관련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명예훼손 사건에서 어떤 표현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²⁸⁾ 다른 대법원 판결에서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요건이 의미하는 바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진실한 사실”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표현의 세부 내용까지 객관적 사실과 완전히 일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고 보고 있다.²⁹⁾

이처럼 정보 생산자나 유포자의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 정보의 진위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는 과잉규제로 나아가지 않기 위해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자유로운 견해의 개진과 공개된 토론과정에서 다소 잘못되거나 과장된 표현은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³⁰⁾ 반면, 가짜뉴스의 폐해를 최소화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공론장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서는 정보의 진위여부 판단기준을 보다 엄밀하게 하여 이를 지향점으로 삼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불확실한 사실을 확정된 사실처럼 전달하거나 과장, 왜곡, 편파적 정보를 제공하는 보도 역시 오보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³¹⁾

28)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29)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30)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판결.

31) 국정홍보처, 「오보 유형에 대한 내부 자료」, 2006(김영욱·신호창·임유진, 앞의 논문, 166-167쪽에서 재인용).

라. 가짜뉴스의 형식 요소: 언론보도 양식

셋째, 가짜뉴스의 판단기준에서 형식적 요소는 언론보도로 오인될 수 있는 형식을 띠고 있는지 여부를 의미한다. 지금까지 발의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이를 “언론보도의 형식”,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언론보도의 양식을 띤 정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언론보도’는 일정한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언론이 발행하는 기사 등을 의미하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은 “언론”을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방송”은 방송법에 따른 “텔레비전 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뜻하며, 신문과 인터넷신문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뉴스통신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되고 있다.

이러한 형식적 요소와 관련된 정의는 ‘가짜뉴스’의 범위를 언론보도가 아님에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정보, 즉 언론사가 작성하지 않은 정보에 한정함으로써 생산주체의 범위를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언론보도의 양식을 띤 정보”를 가짜뉴스의 판단기준으로 보았을 때, 기사형식을 완벽하게 차용하지 않고 기자이름, 작성일시, 제호 등 일부요소를 생략하고 있더라도 수용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높다면 가짜뉴스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³²⁾ 이러한 경우, 기사 형식을 갖추지 않고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유포되는 루머 또는 ‘증권자 정보지’라고 불리기도 하는 일명 ‘짜라시’는 가짜뉴스의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가짜뉴스의 유형과 특성

가. 선거정보(election information)의 유형

선거과정에서 규제가 필요한 가짜뉴스의 범위와 유형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의 유형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권자의 투표행위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는 선거기간에 유통되고 투표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32) 박아란, 앞의 논문, 14쪽.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첫째, 공직선거법 상 후보 등록 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포함되는 개인정보, 둘째, 후보자와 소속정당의 정책공약 및 정견, 셋째, 선거운동과정에서 생산되는 정보, 넷째, 기자회견과 같은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생산되는 정보가 그것이다.³³⁾ 각각의 유형은 유권자에게 전달되는 경로와 내용의 특성에서 차이가 있다.

먼저, 후보자의 개인정보는 후보의 자격요건과 적합성을 판단하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는 정보이다. 선거과정에서 다뤄지는 개인정보는 공직선거법 상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제반 자료와 그 외에 후보자의 자질 및 과거의 행적에 대한 기록을 포함한다. 공직선거법 제49조제4항은 후보자 등록을 신청할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서류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등록대상재산 신고서, 병역사항, 최근 5년간 후보자 및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 신고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범죄경력, 정규학력 증명서, 과거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경력이 포함된다. 공직선거법 제65조 제8항은 이 가운데 유권자들에게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책자형 선거공보 둘째 면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해야 하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정보는 ①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혼인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제외한 직계존·비속의 각 재산총액, ② 후보자 및 후보자의 직계비속의 군별·계급·복무기간·복무분야·병역처분사항 및 병역처분사유 등 병역사항, ③ 최근 5년간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혼인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제외한 직계존·비속의 연도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액과 체납액 및 완납시기, ④ 후보자의 죄명과 형, 확정일자 등 범죄경력, ⑤ 직업·학력·경력 등이다.

두 번째 유형인 후보자와 소속정당의 정책공약 및 정견은 주로 선거공보나 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유권자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많다. 세 번째 유형으로서 선거운동과정에서 생산되는 정보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 형식을 통해 생산되고 유통되는 정보를 말한다. 공직선거법은 제64조에서 제82조의7에 걸쳐 합법적인 선거운동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허용되는 선거운동은 선거벽보, 선거공보,

33) 이종문, 「선거정보의 페이크뉴스에 대한 유권자 인식 분석 연구 - 제19대 대통령선거 정보를 중심으로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8권 제3호, 2017, 115-116쪽.

선거공약서, 현수막, 어깨띠나 소품, 신문광고, 방송광고,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방송 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경력방송,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및 대담, 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 및 토론회,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 및 토론회,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 및 토론회,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 토론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 게재 등이다.

이러한 선거운동 과정을 통해 유권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정보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소속정당, 경력, 학력 등의 개인정보, 그리고 후보자의 정견이나 소속정당의 정강 및 정책, 선거공약 및 각 사업의 목표와 이행절차를 비롯한 추진계획 등이다. 이외에도, 선거운동 기간에는 기자회견 등의 형태를 통해 대국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후보자의 다양한 정치적 메시지가 생산된다.³⁴⁾

나.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며,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법 제58조 제1항). 이에 따라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이 없이 이루어진 의사표현은 공직선거법 상 부당한 선거운동으로 규제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³⁵⁾ 좁은 의미에서의 부당한 선거운동은 "금권, 관권 및 폭력에 의한 선거, 흑색선전을 통한 선거"를 포함하며 이 가운데 흑색선전을 통한 부당한 경쟁은 후보자에 대한 인식공격적 비난, 허위사실 적시를 통한 비방, 유언비어를 통한 비난 등을 의미한다.³⁶⁾

이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을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

34) 이종문, 앞의 논문, 116쪽.

35) 이상현·전홍식, 「사이버선거운동의 자유화 및 사이버선거범죄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형사제재의 대응: SNS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한국법학회 제46권, 2012, 267쪽.

36) 헌법재판소 2011.12.29.선고 2007헌마1001, 2010헌바88, 2010헌마173·191결정.

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허용조건을 마련해두고 있다(제110조 제1항, 제2항).

이외에도, 공직선거법은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규정을 마련하여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하여 우편이나 전보 또는 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253조). 이러한 규정은 가상의 정체성을 취하여 활동하는 것이 가능한 온라인 상에서 익명성을 활용하여 특정 후보자 등의 것으로 신원이 오인될 수 있는 SNS계정을 개설하고 후보자를 사칭하여 해당 개인의 명예와 평판을 실추시킬 수 있는 내용을 게시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³⁷⁾

다. 사회적 이슈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앞서 언급했듯이, 공직선거법이 규제하고 있는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그와 관련된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에 대한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제110조). 따라서 선거시기에 문제가 되는 가짜뉴스의 규제 범위 역시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후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국한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유권자의 투표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비단 후보자 요소 뿐 아니라 정당 요인, 정책 및 공약요인, 사회적 쟁점 요인, 유권자의 환경 요인을 포함한다.³⁸⁾ 후보자 요소는 후보자 개인의 내재적 속성 및 이미지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과 관련된 것으로 후보자의 외모, 성품, 학력, 과거 경력, 지도력 등과 관련된다.³⁹⁾ 정당요인은 후보자

37) 이상현·전홍식, 앞의 논문, 282쪽.

38) 정인태, 「유권자들의 소셜미디어 활용 정도가 투표결정요인에 미치는 영향: 2014년 6.4 부산 동시 지방 선거 분석」, 언론학연구 18권 4호, 2014, 242쪽.

39) 정인태, 「선거 캠페인의 홍보매체가 후보자 결정요인과 투표 선택에 미치는 영향 연구: 4·27

의 소속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선호도와 관련되며 이 역시 투표행위의 중요한 결정요 소이다. 정책 및 공약요인은 투표행위를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으로 설명할 때 자주 논의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유권자들이 각 후보자 및 소속정당에서 제시한 정책과 공약 가운데 본인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과 가장 부합하는 것을 선택하여 투표한다고 본다.⁴⁰⁾ 유권자 요인은 유권자 자신의 사회경제적 특성 등에 의해서 투표행위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유권자의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등 사회경제적 지위, 거주지, 출신지역 등에 의해 형성된 정치적 선호에 따라 투표행위가 결정되기도 한다.⁴¹⁾

이외에도 사회적 쟁점 요인이 유권자의 투표행위에 중요하게 작용하기도 한다. 즉, 선거 기간 중에 제기된 정치적·사회적 이슈가 특정 후보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더라도 유권자들이 투표 여부 및 후보자 선택에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다.⁴²⁾ 우리나라에서는 선거 시기 안보위협을 일컫는 이른바 ‘북풍’이 후보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거나 대통령 탄핵 이슈, 세월호 사건의 원인규명 및 사후대처를 둘러싼 이슈 등이 투표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쟁점의 예로 들 수 있다. 이처럼 선거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쟁점에 대한 허위사실이 무분별하게 유포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짜뉴스는 개인의 인격권 침해와 같은 개인적 법익의 침해 뿐만 아니라 사회적 법익침해를 수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예방 및 규제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즉, 공공의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기반하여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는 공론장의 운영을 사회적 법익이라고 본다면 선거기간 중 주요 사회적 쟁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이러한 공론장에서 유통되는 담론을 왜곡시킴으로써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황용성과 권오성은 가짜뉴스의 침해법익과 생산주체에 따라 이를 규제하는 현행 법령을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제시

김해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중심으로, 홍보학 연구 16권 2호, 2012, 88-126쪽(정인태, 「선거 캠페인 법정 홍보매체의 후보자 결정요인과 투표 선택에 미치는 영향 연구: 4·11 부산지역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언론학연구 17권 2호, 2013, 242쪽에서 재인용).

40) Anthony Downs,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New York: Harper, 1957(정인태, 2013, 앞의 논문, 244쪽에서 재인용).

41) 정인태, 2013, 앞의 논문, 245쪽.

42) 박기묵, 「정치적 이슈에 대한 신문의 보도량과 정당지지도에 관한 연구: 17대 총선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9권 1호, 2004, 309~327쪽(정인태, 2013, 앞의 논문, 245쪽에서 재인용).

하였다. 이에 따르면 현재 언론이 아닌 주체가 생산한 가짜뉴스가 사회적 법익을 침해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일부 규제되고 있으나 추가적인 자율적 규제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⁴³⁾



[그림 2-5] 가짜뉴스의 침해법익과 생산주체에 따른 규제 법률 영역

※ 출처: 황용석·권오성, 「가짜뉴스의 개념화와 규제수단에 관한 연구 -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 언론과 법 제16권 제1호, 2017, 71쪽에서 발췌.

제2절 가짜뉴스의 불법성 검토

1. 일반론

제20대 총선과 제18대,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가짜뉴스는 선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어떤 특정한 집단 혹은 개인의 의도된 왜곡정보에 의해 선거 결과가 왜곡된다면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 할 수 있다.

43) 황용석·권오성, 앞의 논문, 75-76쪽.

또한 가짜뉴스는 언론의 형식을 가장하여 유포된다는 점에서 가짜뉴스의 영향력은 언론사에서 보도하는 기존의 뉴스를 위협하는 수준이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과정에서의 투명성, 논란성, 대표성'을 뒷받침 해주는 공론장에서 합리적 토론이 불가능할 정도로 '훼방꾼' 노릇을 하는 가짜뉴스는 사적·공적 법익을 모두 침해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것이 전 세계 도처에서 - 미국 뿐 아니라 한국의 선거판을 뒤흔들 정도로 - 현실로 들어나고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⁴⁴⁾

가짜뉴스 유포의 목적에 따라 가짜뉴스의 유형이 달라지고, 이 유형에 따라 불법성의 내용도 달라진다. 특히 가짜뉴스는 언론의 영향력을 이용하고자 언론의 형식을 교묘하게 취하고, 이를 통해 허위 정보를 날조해 사적인 이익을 취한다는 점에서 그 불법성이 매우 심각하다. 또한 이 가짜뉴스를 통해 피해본 사람들 -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 보다는 특정한 시기(선거시간)에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에서 가짜뉴스를 대량 살포하는 경향이 강하다 -은 추후라도 그 피해의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⁴⁶⁾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주로 행해지는 상대 후보나 상대 당(黨)에 대한 비방 내지,

44) 2016년 미국에서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는 아예 가짜뉴스 사이트가 만들어져 흥행했고 한국에서는 짧게는 지난 20대 총선과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언론사가 가담하는 가짜뉴스에 시민들이 팩트체크 뉴스로 대응하면서 그 심각성이 수면위로 드러났다. 길게는 지난 2012년 제 19대 총선과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기관이 나서서 인터넷 댓글 부대를 통해 댓글 조작, 카카오톡을 통한 왜곡된 뉴스를 살포하면서 가짜뉴스의 변형된 형태 혹은 진화된 가짜뉴스를 여론조작에 활용하였음이 드러났다. 서영지, 「단독」 국정원, 댓글알바 30개팀 3500명 운영했다, 『한겨레신문』, 2017.08.03., 링크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05477.html(최종검색일 : 2017.12.10.)

4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짜뉴스 등 비방·흑색선전 대응 유관기관 대책회의」, 2017년 3월 16일 회의록 : 류미나, 「선관위 “가짜뉴스 엄중 대응”...감·경과 협업 강화」, 『연합뉴스』 2016.3.16., 링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16/0200000000AKR20170316143600001.HTML> (최종검색일 : 2017.12.10.)

46) 우리가 통칭 '가짜뉴스'라 부르고 있는 이 뉴스는 -원래 의미의 뉴스와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는 지도 제고해 봐야 할 부분이지만- 본래 인터넷 유머 사이트에서 시작되었다. 풍자, 해학, 유머의 측면에서 시작된 이 가짜뉴스가 주로 선거 등에서 기만적으로 이용되면서 그 폐해와 심각성이 더해졌다. 원래 시초의 가짜뉴스와 변화되어 사용되어온 '가짜뉴스'는 다른 것으로 국내학자들이 Fake news를 정밀한 개념 규정이 없이 너무나 쉽게 '가짜뉴스'로 오역하여 네이밍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이재진, 「포스트 트루스(post-Truth) 시대의 페이스북뉴스와 저널리즘」, 『가짜뉴스 문제점과 대응방안』 발제문, 2017.2.23.). 이에 서구 언론사들이 무비판적으로 사용하는 'Fake news' 라는 용어는 국내 언론시장에서 걸러서 사용해야하고 '가짜콘텐츠', '기만뉴스', '사기뉴스', '조작뉴스' 등의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 옳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임종섭, 「언론의 위기와 가짜뉴스 파동 - 뉴스에 가짜는 없다」, 『관훈저널』 142, 2017.3, 87-93쪽). 다만 '가짜뉴스'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본 연구서에서도 '가짜뉴스'로 지칭하였지만, 기만뉴스, 사기뉴스, 조작뉴스의 개념을 의미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허위 사실 그리고 경제적 이익 편취를 위한 가짜뉴스 유포 그리고 특정 집단이나, 사회적 소수자 - 이민자, 성소수자 등-에 대한 혐오 감정을 부추기는 내용의 가짜뉴스는 일반적으로 당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이라는 불법이 가해진다.⁴⁷⁾

더 나아가 사안에 따라서는 (일반적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아닌) 혐오포현의 확산, 저작권 침해,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이 부수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하에서는 가짜뉴스의 일반적 불법성의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2. 불법성의 요인

가. 인격권 침해의 쟁점 - 명예훼손, 모욕, 사생활침해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명예훼손죄를 규율하고 있다. 또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는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다. ‘모욕’이란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없이 사람에게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의 적시가 있더라도 그것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모욕이 된다. 그래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구별기준은 바로 사실의 적시 여부에 있다. 다시 말해,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의 적시가 있으면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고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없이 사람에게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면 모욕에 해당한다.⁴⁸⁾ 가짜뉴스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마치 사실인양 특정인에 대해 허위정보를 유포하게 된다. 따라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확률이 높다. 또한 선거과정에서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가짜뉴스의 경우 특정인에 대한 경멸적 내용도 담고 있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확률도 높다.⁴⁹⁾ 예를 들어,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중인

47)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사이버 위법게시물 유형별 삭제요청 현황을 살펴보면 공직선거법 제 250조의 허위사실공포로 인한 삭제요청 건수가 2만 51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직선거법 제108조 위반에 해당하는 ‘여론조사공포 금지’가 1만 2083건이었다. 다음으로는 공직선거법 제 251조에 해당하는 ‘후보자비방’이 839건이었고, 공직선거법 제110조 위반에 해당하는 ‘지역비하모욕’이 428건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9대 대통령선거 통계」, 2017.5.10.

48)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4. 192쪽.

49) 장휘일, 「가짜뉴스의 심각성과 법적대응방안 - 한국의 19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제10권 제1호, 2017.07., 46-49쪽.

2017년 5월 2일 SBS 8시 뉴스를 통해 보도된 ‘차기 정권과 거래? 인양 지연 의혹 조사’⁵⁰⁾라는 제목의 단독 보도 내용은 차기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세월호 인양을 고의로 지연시키기 위해 이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의 공무원과 거래를 했다는 가짜뉴스가 전형적으로 문재인 당시 후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2016년에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허위보도가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⁵¹⁾ 트럼프 후보 입장에서는 이득일 수 있겠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의 경우에는 가톨릭이나 교황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앞선 SBS의 세월호 인양 지연 보도 건도 문재인 후보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자칫하면 선거에서 낙선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후보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뿐 아니라 후보를 배출한 당에 대한 명예훼손까지도 고려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사이버명예훼손을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의 사실적시명예훼손과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등이 통상 함께 고려되어 진다.

기존 인터넷상에서는 사이버 명예훼손 보다는 사이버 모욕이 문제가 되었지만, 가짜뉴스의 등장으로 모욕보다는 명예훼손에 가까운 피해사태가 급증하고 있다. 또 가짜뉴스의 특성상 특정 정치적 방향을 유도하기 위해 고도로 조작된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는 점에서, 특정인에 대한 비방할 목적이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볼 수 있어 형법 제309조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도 함께 고려된다.⁵²⁾

한편, 가짜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어떤 개인이나 - 특히 연예인과 같은 유명인·단체 혹은 집단에 대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50) 오수진, 「'세월호 인양 고의지연 보도' SBS 8시 뉴스에 법정제재」, 『연합뉴스』 2017.05.22., 링크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22/0200000000AKR20170522134700033.HTML> (최종검색일 2017.12.10.).

51) 이 뉴스는 미국의 인터넷 뉴스 매체 버즈피드(BuzzFeed)의 분석에 따르면 페이스북으로 유통된 2016년 정치관련 상위 5대 가짜뉴스로 선정되었다. 장휘일, 「가짜뉴스의 심각성과 법적대응방안 - 한국의 19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제10권 제1호, 2017.07., 48쪽.

52) 장휘일, 「가짜뉴스의 심각성과 법적대응방안 - 한국의 19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제10권 제1호, 2017.07., 46-49쪽 ; 황용석·권오성, 「가짜뉴스의 개념화와 규제수단에 관한 연구 -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 『언론과법』 제16권 제1호, 한국언론법학회, 2017.4., 69-75쪽.

가짜뉴스가 사생활 침해로 직결된 사례는 발생되지 않았으나, 지금까지 발생하지 않았다고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쉽게 확신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연예인 혹은 정치인 또는 기업인에 대한 가짜뉴스를 만들기 위해 취재를 가장해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상황이나, 가짜뉴스의 유포로 인해 당사자에 대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2차 피해가 발생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 혐오표현의 확산

모든 가짜뉴스는 대체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위한 목적, 정치적 이득을 위한 목적 등등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제작유포된다. 이렇듯 다중,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제작되는 가짜뉴스의 내용에는 주로 특정 집단 혹은 대중의 혐오감정을 부추기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 내용 자체에 직접적으로 혐오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혐오표현을 위해 제작된 가짜뉴스에는 정치인 뿐 아니라 명사, 경제인, 소수자와 약자 등도 포함된다.⁵³⁾ 그러나 혐오표현⁵⁴⁾을 위해 제작된 가짜뉴스로 인해 데미지가 가장 큰 피해자는 주로 사회적 약자, 소수자가 - 성소수자, 난민, 이민족, 그 사회의 비주류 종교를 믿는 집단 등-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가짜뉴스는 범죄에 가까운, 그리하여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이 혐오표현을 확산하는 또 하나의 루트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나 혐오표현은 그 사회의 특유한 역사, 문화에서 발생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계층과 무관하지 않은데⁵⁵⁾, 우리의 경우 선거 때마다 이용된 색깔논쟁의 진화버전인

53) 특히 혐오표현에 대한 주목할 만한 저서로는 홍성수, 『말이 칼이 될 때: 혐오표현은 무엇이고 왜 문제인가?』, 어크로스, 2018 참조.

54) 혐오라는 표현 자체가, 그리고 혐오표현이라는 자체가 인종, 민족, 성별, 종교, 성적 기호 등의 차이에 따라 소수자나 약자집단을 대상으로 경멸이나 증오를 드러내거나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을 뜻한다.

55) 파시즘을 경험한 독일의 경우 나치 범죄를 부인하거나, 나치의 피해가 가장 컸던 유대인에 대한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짜뉴스를 SNS를 통해 유통하는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추진한 바 있다. 연방법무부장관인 하이코 마스(Heiko Maas)는 “거리에서 혐오 발언을 하면 불법이듯이 소셜네트워크 상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지난 9월 총선을 앞두고 독일 정부는 혐오표현과 가짜뉴스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24시간 내에 삭제되지 않을 경우 플랫폼 업체에 5000만 유로(오너 65억, 업체 659억)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독일의회는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부결시켰다. 김유향, 「가짜뉴스 현황과 입법적 대응방향」, 『가짜뉴스, 어떻게 막을 것인가?』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주최 토론회 발제문, 2017.2.21., 8쪽 : 장휘일, 「가짜뉴스의 심각성과 법적대응방안 - 한국

‘종북’도 혐오표현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본격적으로 혐오를 공공연하게 드러내게 된 대상인 성소수자 관련해서도 당선이 유력한 후보자에게 동성애와 동성혼을 섞어 질문하면서 유도한 답변을 근거로 특정 종교집단에서 SNS를 통해 무차별 살포된 동성애자들에 대한 혐오표현도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다.⁵⁶⁾ 그 밖에 한국의 선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지역감정 부추기기와 특정 지역에 대한 혐오표현인 ‘홍어X’, ‘보리문XX’, ‘5·18 택배’ 등이 그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각 집단은 이해가 상충할 때 토론과 합의를 거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지 않으면서 공공선(public goods)을 추구하도록 도와준다. 그러나 혐오표현은 차별과 폭력을 암시하며 - 암시를 넘어 사회 갈등과 폭력을 유발하는 측면이 강해지고 있다 -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손상하도록 의도된 것이다.⁵⁷⁾ 가짜뉴스는 사회갈등을 일으키고 진실을 왜곡하며 개인의 존엄성을 해쳐 집단혐오로 몰고 갈 위험이 크며 혐오감정에서 혐오표현으로 옮겨갈 때 그 폐해는 더 심각해진다 고 할 수 있다.⁵⁸⁾

다. 저작권

가짜뉴스는 대체로 일반 뉴스의 형태를 차용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또 언론사에서 가짜뉴스를 제작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언론사에서 제작하는 가짜뉴스는 대부분 오보의 성격을 띠는데 의도적이든, 실수이든 가짜뉴스는 온라인 뉴스의 신뢰도 심대

의 19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제10권 제1호, 53쪽 : Sook Yeong Hong, Eui Chul Jung, 「Fake News and Journalism's Credibility Crisis」, 『Crisisonomy』 Vol.13 No.8, 2017, p.47.

56) 황금비·박수지, 「대선후보들 성소수자 차별 발언 '혐오의 가이드라인' 될 우려 커」, 『한겨레신문』, 2017.04.26., 링크: <http://www.hani.co.kr/arti/PRINT/792440.html>(최종검색일 : 2017.12.10.).

57)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 차별-엄밀히 말하면 구별-은 불가피하지만, 인간을 동등한 인격으로 존중하지 않은데서 비롯된 구별은 '부당한 차별'로서 폐지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논의를 하는 데버러 헬먼(김대근 역), 『차별이란 무엇인가: 차별은 언제 나쁘고 언제 그렇지 않은가』, 서해문집, 2016 참조. 특히 이 책에서는 과거에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거나 현재 낮은 지위에 있는 집단을 특징짓는 특성-저자는 이러한 특성을 HSD(history of mistreatment or current social disadvantage)라고 부른다-을 근거로 구분하는 것은 다른 특성들에 기초해 구분하는 것과는 도덕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에 따르면 HSD 특성을 기초로 하는 구별짓기는 비하가 될 가능성이 높고, 비하의 맥락을 가져오는 구별이 바로 차별이 될 수 있다.

58) 같은 의견으로는 Sook Yeong Hong, Eui Chul Jung, 「Fake News and Journalism's Credibility Crisis」, 『Crisisonomy』 Vol.13 No.8, 2017, 47쪽.

한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역설적으로 온라인 뉴스의 저작권 보증의 문제가 새롭게 고민거리로 떠올랐다.

가짜뉴스를 제작, 유포하는 과정에서 제1차 저작권을 무단 도용·사용하여 직접적으로 저작권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으나 이는 카카오톡이나, 사적인 -개인간- 유통에서 문제가 주로 발생하여 저작권 위반 여부를 엄밀하게 따질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가짜뉴스의 등장으로 온라인 뉴스의 신뢰도와 가치가 하락하면서, 온라인 뉴스의 신뢰도 제고 방안으로 온라인 뉴스 저작권 보증제도 방안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⁵⁹⁾

라.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기본법

허위사실 또는 허위정보의 유포가 주목적이지, 행위태양인 가짜뉴스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명예훼손죄(동법 제70조 제2항) 등을 위반하여 직접적인 규율 대상이 된다. 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과거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를 규제 하였었다. 그러나 이는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을⁶⁰⁾ 계기로 표현의 자유 제한과 형벌조항이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 위배로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아 개정, 삭제되었다.⁶¹⁾

언론이 아닌 자가 생산한 가짜뉴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의 제재를 받는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59) 외국에서는 ‘공통 플랫폼’에 의한 언론 생태계 교란에 대한 다양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06년 벨기에 언론출판사 저작권보호단체 코피프레스(copie press)는 구글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11년 벨기에 고등법원은 구글이 뉴스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코피프레스 손을 들어주었고, 판결직후 구글은 벨기에에서 뉴스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후 벨기에 언론출판사 및 저작권협회와 구글의 협상이 이뤄졌고, 2013년 뉴스 서비스가 재개됐다. 여성국, 「벨기에, 구글에 뉴스 저작권 침해 판결」, 『중앙일보』, 2017.09.22., 링크: <http://news.joins.com/article/21960645>(최종검색일: 2017.12.10.).

60) 정운섭, 「현재, ‘미네르바 구속’ 근거 전지통신법 위헌 결정」, 『KBS 뉴스』, 2010.12.28., 링크: <http://news.kbs.co.kr/news/view.do?ncd=2217330>(최종검색일: 2017.12.10.).

61) 현재 2010.12.28. 선고 2008헌바168.

있다. 또 동조 제1항은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자까지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행위는 이 법에 따라 규제 대상이 된다.

가짜뉴스의 표현으로 인해 당장 인격권의 침해가 예상될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통한 구제도 가능하다. 대개 요청 즉시 적용되는 임시조치는 명예훼손 등의 문제 소지가 있을 경우 인터넷 사업자가 해당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막는 조치다. 정보를 게재한 사람의 복원 신청이 없는 경우 법에서 정한 30일의 기간이 지난 뒤에 해당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국내의 포털이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 등 인터넷 상의 정보 유통을 맡는 대부분의 사업자를 말한다.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바로 차단 조치가 행해지고, 정보게시자로서는 번거로운 이의제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이상 조치의 효과가 이어지는 현행 규정 탓에 임시조치는 다양한 정보와 의견의 교환이 가능한 인터넷의 가치와 표현의 자유를 과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오기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2016년 임시조치로 차단된 게시물은 50만 건을 넘겨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⁶²⁾

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동법 제44조의3).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해당하는 정보가 유통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4조의7).⁶³⁾

마. 공직선거법

가짜뉴스는 주로 선거와 관련하여 뚜렷한 목적성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선거에

62) 황용석·권오성, 「가짜뉴스의 개념화와 규제수단에 관한 연구 -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 『언론과법』 제16권 제1호, 한국언론법학회, 2017.4, 74쪽.

63) 김수연, 「가짜뉴스, 어떻게 막을 것인가? - 선거의 영역에서의 가짜뉴스, 허위사실의 규제」, 『가짜뉴스, 어떻게 막을 것인가?』 바른정당 하태경의원실 주최 심포지움 토론문, 201.02.21., 16-18쪽.

관련된 가짜뉴스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차적인 규제 대상이 된다.

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기 위해’ 또는 ‘선거에 혼란을 초래하거나 선거질서를 파괴할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제작·유포하는 행위자에 대하여는 보통 공직선거법을 통해 이를 규제하고 있다.⁶⁴⁾ 공직선거법의 경우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다만,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을 밝힌 경우”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고 있다.⁶⁵⁾⁶⁶⁾

공직선거법은 선거라는 특수한 상황에 한해서이긴 하지만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잘못된 정보에 대한 규제 조항도 두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2는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두고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한 방송사에 대하여 제재조치 등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조의3은 선거기간 동안 언론 보도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국회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추천하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신문, 잡지 등의 선거 기사를 대상으로 “공정 여부를 조사”하고 공정 기준에 미달하는 기사

64) 한갑운·윤종민, 「가짜뉴스의 규율방법에 대한 법적 고찰」, 『과학기술과 법』 제8권 제1호, 2017. 6, 72-73쪽.

65)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및 제2항 위반으로 선거운동의 자유 및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여,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른바 있다. 특히 정봉주 전 의원이 대통령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 선거 캠프대변인으로서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자의 BBK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정 전 의원은 한나라당 이명박 당시 후보로부터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제250조 제1항, 제2항)으로 고소당했고, 결국 대법원 판결을 통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계속되어 왔고, 본격적으로 현재의 심판대에 올랐다. 박경신, 「정봉주와 BBK의 진실, 이명박 그리고 선거법」, 『오마이뉴스』, 2011.12.27., 링크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76557(최종검색일 : 2017. 12.10). 그러나 현재는 이 법조항이 “후색선전과 혼탁선거를 방지하고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입법목적과 허위사실 유포행위로 인해 상대 후보자가 입게 될 정신적인 고통, 범죄 동기에 대한 높은 비난가능성, 향후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고려 등”을 고려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결 2009.9.24. 선고 2008헌바168.

66) 김가희, 「가짜뉴스 규제 방안 : 허위사실 표현의 헌법적 보호 여부 및 과잉금지원칙에 따른 규제 합헌성 검토」,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12-13쪽.

에 대해서는 정정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경고결정문게재, 주의사실 게재, 경고나 주의, 권고 등의 제재조치를 부과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8조의 5는 방송, 신문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기사에 대해서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두어 인터넷언론사의 공정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제96조 제2항 제1호는 언론에 대해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제8조의 8이 규정하고 있는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심의는 불공정 정보로부터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는 이 법의 제재 대상이 언론사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 준다. 해당 조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되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들 조사를 심의하며, 여론조사의 주체가 정해진 공정성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시정명령·경고·정정보도문 게재 등의 제재 명령을 내리도록 하였다.⁶⁷⁾

한편, 공직선거법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게재한 경우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사시를 발견할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동법 제82조의4 제3항). 이 법 조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동조 제4항).

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해당 정보의 삭제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자는 당해 정보가 삭제되거나 그 취급이 거부·정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요청을 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동조 제5항).⁶⁸⁾

67) 황용석·권오성, 「가짜뉴스의 개념화와 규제수단에 관한 연구 -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 『언론과법』 제16권 제1호, 한국언론법학회, 2017.4, 75-76쪽.

68) 김수연, 「가짜뉴스, 어떻게 막을 것인가? - 선거의 영역에서의 가짜뉴스, 허위사실의 규제」, 『가

3. 관련 행위주체별 책임성 판단

가. 가짜뉴스 작성자

가짜뉴스의 위법성을 규율하고 있는 법에 따라, 가짜뉴스 작성자에게는 가짜뉴스의 목적과 행태에 따라 앞서 상술한 것처럼 직접적으로 위법성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가짜뉴스작성자 언론사 소속 기자인 경우는 대체적으로 1차적으로는 언론사나 언론사 대표, 편집국장에게 책임을 묻고, 2차적 혹은 부차적으로 해당 법(형법상 명예훼손죄 혹은 사이버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혹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된다.

나. 가짜뉴스 배포·확산자

가짜뉴스 배포·확산자는 정보유통자 내지는 유통과 관련된 정보매개자라고 부를 수 있다. 이에 대한 책임성 판단과 연관되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지가 주요 논란이 되고 있고, 연장선상에서 형사적 및 행정적 규제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가짜뉴스의 확산이 대부분 정보매개자가 운영하는 인터넷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가짜뉴스가 불법정보의 유통에 해당하는 경우 종래의 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규제법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독일 같은 경우 가짜뉴스와 관련하여 정보매개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를 규정하는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지난 4월 연방의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부결시킨 바 있다. 다만, 가짜뉴스 배포·확산자가 개인인 경우- 일테면 SNS를 통하여 가짜뉴스를 유통하는 경우나 카카오톡 등 개인 메시지를 통하여 가짜뉴스를 유통·확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가짜뉴스임을 알면서도 어떠한 목적을 위해⁶⁹⁾ 이를 배포·확산한 경우는 위법하게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뉴스의 진실 여부를 체크 하지 않고 무분별 하게 ‘퍼다 나른’ 주요 언론사에 대한

짜뉴스, 어떻게 막을 것인가?』 바른정당 하태경의원실 주최 심포지움 토론문, 201.02.21., 18-19쪽.

69) 어떠한 개인 내지 사실, 현상에 대한 확증편향에 따라 혹은 확증편향의 목적을 가지고 유통시킨 경우도 마찬가지다.

책임뿐만 아니라 인터넷서비스사업자 -주로 정보매개자- 들의 위법성에 대한 책임 판단은 그 위법한 행위가 가짜뉴스 내지 가짜 콘텐츠를 1차적으로 생산한 책임이 아니라 2차적으로 유통(배포 내지 확산)시킨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같다고 할 수 있다.

다. 언론사 - 뉴스의 진실 여부를 체크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퍼다 나른” 주요 언론사의 책임

앞서 상술한 법률 외에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짜뉴스 작성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언론사가 정식으로 보도한 언론내용, 기사 내용이 아닌 진실 여부를 체크하지 않고 단순 ‘퍼다 나른’ 즉 유통확산한 책임을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생각건대 언론사란 뉴스를 제작하고, 보도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며 직접적으로 제작한 뉴스 콘텐츠가 아니고 제작된 뉴스 콘텐츠를 배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언론사의 뉴스 보도의 한 형태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⁷⁰⁾ 따라서 언론사의 무분별한 가짜뉴스 퍼다 나르기에 따라서 개인 및 법인 등이 재산상의 손해 내지는 정신적 손해를 받은 경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론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⁷¹⁾

따라서 이 경우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동법 제14조 제1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 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언론 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70) 가짜뉴스의 심각성이 극대화됐던 2016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가짜뉴스를 유통시키는 SNS가 이 가짜뉴스 유행의 주원인으로 지목되었으나, 문제는 SNS가 아니라 우파매체가 가짜뉴스 문제 확산의 주범이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우파 매체는 전통적으로 매체의 영향력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팽창되었을 뿐 아니라 공격적 성향이 강한 우파매체가 이 가짜뉴스를 공유재생산하는 등 교묘하게 선지의 기술로 이용하면서 가짜뉴스의 위세를 키웠다는 분석이다(권오성, 「가짜뉴스, 문제는 SNS가 아니라 우파야」, 『한겨레신문』, 2017.4.03., 링크:http://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789021.html 최종검색일 : 2017.12.12.). 이러한 분석결과만 보아도 이제는 언론사가 보도에 준하는 방식으로 가짜뉴스를 확대-재생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71) 공직선거와 관련한 가짜뉴스의 경우 피해를 본 후보자 이거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이 경우 퍼다 나른 언론사에 대한 책임을 따지고자 할 때에는 언론중재법이 아닌 형법이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에게 그 언론 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 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는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 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의도를 불문하고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언론사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또 동조에 의한 정정보도 청구의 경우 언론보도에 의한 개인 및 법인의 피해를 입증해야 하므로 재산상의 손해나 정신적 손해 등이 없는 경우에는 허위의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가짜뉴스라 하더라도 이 법에 따라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라. 인터넷서비스사업자

네이버(Naver)나 다음(Daum) 같은 뉴스 포털은 언론사 겸 인터넷서비스제공 사업자로서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네이버나 다음이 주로 자체적으로 뉴스 콘텐츠를 생산하고 보도하지 않고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를 유통하는 역할을 하므로 인터넷서비스제공 사업자의 성격이 보다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또 새로운 뉴스의 소비방식이자 유통구조가 되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트위터 등도 인터넷서비스제공 사업자로 분류된다.

이와 같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는 정보유통을 매개하는 역할을 함으로 정보매개자로 불리기도 한다. 정보유통을 매개하는 정보매개자에게 가짜뉴스의 유통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형사 제재는 현행 법률에 없는 실정이다. 다만, 정보매개자의 가짜뉴스유통에 대한 일정한 조치의무를 규정한 법률은 존재하므로 이 법에 따라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가짜뉴스 유통에 대한 책임 귀속이 가능하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및 3조에서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의 정보유통으로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일정한 삭제조치나 임시조치를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즉,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로 자신이 권리를 침해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으며(제44조의2 제1항),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는 그에 따른 삭제 또는 임시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조 제2항).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특정정보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되

는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4조의3 제1항). 이에 따라 가짜뉴스 정보의 유통으로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일정한 조치를 취할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공직선거법에서도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또는 후보자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전송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후보자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후보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삭제요청 또는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한 정보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요청 또는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동법 제3항). 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여 정보매개자의 가짜뉴스 유통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였다(동 제4항).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독일은 가짜뉴스 유통과 관련하여 정보매개자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법률을 도입하려고 시도한 바 있으나,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가짜뉴스의 제작유통과 관련되어 정보매개자의 역할이 점점 증대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독일과 같이 정보매개자를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의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도 없지 않다. 즉 정보매개자에게 가짜뉴스의 모니터링과 그 예방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이러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 그러하다.⁷²⁾

그러나 이러한 제재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72) 한갑운·윤종민, 「가짜뉴스의 규율방법에 대한 법적 고찰」, 『과학기술과 법』 제8권 제1호, 2017.6., 82쪽.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은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에게 선거기간 동안 선거 관련 게시물의 경우 실명제 조치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 조항은 표현의 자유 침해 및 인터넷게시판사업자에 대한 직업의 자유 침해 등이 문제되었다. 지난 2013년 위헌법률심판이 청구 되었지만, 헌법재판소는 “선거기간 동안 기본권 제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과도하지 않다”며 기각결정을 내린 바 있다.⁷³⁾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조항에 대한 사전검열 금지 원칙 위배 등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앞선 가짜뉴스 대응 방안으로 제기되는 정보매개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법률의 도입 안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여, 오히려 선거기간 동안 유권자가 알아야 할 피선거권자에 대한 정보의 제약으로 오히려 공정한 선거를 해치게 돼 소탐대실하는 우려 범하게 될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언론사나 포털사 등 정보매개자들은 스스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자율적 대응방안 및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⁷⁴⁾

또 국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 정보매개자들은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응하는 조치들을 내놓고 있다. 이는 정보매개자들이 가짜뉴스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느끼고 있음을 방증하는 조치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국내 포털사인 네이버와 다음은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해 뉴스제공사업자검증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허가 받은 매체만이 뉴스 공급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블로그 등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 시 블라인드 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 이번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포털사인 네이버, 카카오와 페이스북 코리아 등은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하여 위법게시물 삭제 및 게시자에게 삭제사유 통지, 후보자 비방욕설 필터링 강화 등 자율규제 방안을 내놓고 실천하고 있다.⁷⁵⁾ 정보매개자들의 자율적 방지책이란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73) 헌재결 2015.07.30. 선고 2012헌마734, 2013헌바338 병합 등

74) 이와 관련하여서는 자세한 내용을 제6장에서 자세히 후술하였다.

75) 한갑운·윤종민, 「가짜뉴스의 규율방법에 대한 법적 고찰」, 『과학기술과 법』 제8권 제1호, 2017.6., 84쪽

마. 정당, 시민단체 등 - 팩트체크 없이 가짜뉴스를 무분별하게 정략적으로 이용한 경우

정당이 선거기간 동안 가짜뉴스를 무분별하게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로인한 폐해도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두드러졌다. 더불어민주당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의 아들 채용비리 건과 앞서 언급했던 SBS의 세월호 인양 거래 의혹 보도 등을 상대당 후보 캠프에서 적극 이용했던 사례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⁷⁶⁾ 이러한 허위사실에 가까운 가짜뉴스 이용에 대해 선거기간 동안에는 고소·고발이 난무하다. 그러나 선거의 특성상 선거가 끝나게 되면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것이 또한 그동안의 누적된 관례였다. 이 때문에 어차피 결과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는 역사가 반복되면서, ‘변종 허위사실’이자 ‘흑색선전’의 진화인 가짜뉴스는 선거 때 정당에서는 상대당 후보를 공격하는 좋은 무기로 인식되는 것 같다.

이 경우는 굳이 책임을 귀속시키고 묻기 위한 새로운 규제 방안 및 규제 법안을 마련할 필요도 없이, 현행 관련법에 따른 처벌을 통해 책임을 물으면 그만이다. 즉, 누적되어 온 나쁜 관행을 타파하는 것이 공당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정당정치와 선거문화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는 주로 가짜뉴스의 감시자(watchdog)로서 역할을 해오며, 가짜뉴스의 유포 및 확산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지는 역할을 해왔다.⁷⁷⁾ 시민단체가 가짜뉴스의 생산 및 유포, 확산의 주도자가 된다면 앞서 상술한 위법한 양태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76) 최혜정·안광욱, 「홍준표·박지원, SBS보도 이용 ‘문 때리기’ …세월호 가족 “가짜뉴스 정치악목 말라”, 『한겨레신문』, 2017.5.3., 링크 :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93372.html> (최종검색일 2017.12.10.).

77) 지난 제20대 총선과 제19대 총선에서 가짜뉴스 감시단을 운영하여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종합편성언론의 내용을 감시하여 재빠르게 팩트체크하여 가짜뉴스의 효용을 떨어뜨린 민주언론시민연합의 활약상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허위사실 생성·유포의 현황 및 요인

허위사실 생성·유포의 현황 및 요인

제1절 제18대 대선(2012) 및 제19대 대선(2017)에서 나타난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 현황

1. 사이버 선거범죄 현황

2017년 5월에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의 범위를 가늠해보기 위해 사이버 상에서 행해진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18대 대선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2012년 12월에 치러진 제18대 대선에서 사이버 상 위반행위에 대해 경고·수사의뢰·고발·이첩 등 조치가 취해진 사건은 총 42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고발은 10건, 경고는 9건이었고 나머지 23건은 수사의뢰 조치가 취해졌다. 이와 비교해 보면, 제19대 대선에서 조치가 취해진 사이버 상 위반행위는 총 122건으로 지난 대선에 비해 3배 가량 증가했다. 이 가운데 고발 조치된 사건은 42건으로 제18대 대선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했으며 경고 조치된 사건은 8배 가량 증가한 72건이었다. 삭제요청된 게시물은 제18대 대선 당시 7,159건에서 제19대 대선에는 40,222건으로 5.6배 이상 증가했다.

위반행위 가운데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등 비방, 지역 및 성별·모욕을 포함하는 사건만 살펴보면 제18대 대선에서 경고·수사의뢰·고발·이첩 등 조치가 취해진 사건은 31건, 게시물 삭제요청이 된 사건은 4,012건이었다. 이 수치는 제19대 대선에서 각각 70건과 26,378건으로 5년 사이 2.3배와 6.6배 증가하였다. 이외에도 '기타'로 분류된 사건 중 공직선거법 상 허위논평·보도 등 금지조항(제96조)을 위반하여 게시물 삭제요청된 사건이 1,016건으로 집계되었다.

〈표 3-1〉 제18대 및 제19대 대선 사이버 위반행위 유형 및 조치 현황

(단위:건)

선거별	유형별	조치별	계	조치					삭제요청
				소계	고발	수사의뢰	경고	이첩	
제18대 대통령선거 (2012. 12. 19)	계		7,201	42	10	23	9	-	7,159
	비방·흑색선전		4,043	31	9	20	2	-	4,012
	여론조사공표·보도금지		2,670	-	-	-	-	-	2,670
	부정선거운동		13	4	1	-	3	-	9
	기타		475	7	-	3	4	-	468
제19대 대통령선거 (2017. 5. 9)	계		40,344	122	42	7	72	1	40,222
	비방 흑색 선전	소계	26,448	70	18	6	45	1	26,378
		허위사실 공표	25,178	67	16	5	45	1	25,111
		후보자 등 비방	841	2	1	1	-	-	839
		지역·성별비하·모욕	429	1	1	-	-	-	428
		선거운동금지자의 선거운동	115	18	10	-	8	-	97
		여론조사공표·보도금지	12,088	5	2	-	3	-	12,083
		기타	1,693	29	12	1	16	-	1,664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렇다면, 허위사실공표 또는 후보자 등 비방의 요소가 있는 사건에서 해당 표현이 게시되거나 전달된 매체는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제18대 대선의 경우, 후보자 등 비방과 같은 흑색선전 행위에 대해 조치가 취해진 사건은 총 31건으로 이 가운데 17건이 인터넷게시판에 게재되어 6건이 고발조치되고 2건은 경고조치되었다. 이외에 트위터를 통해 비방행위가 이루어져 수사가 의뢰된 사건이 5건이었다.

〈표 3-2〉 제18대 대선 사이버 상 비방·흑색선전 행위 매체 및 조치 현황

(단위:건)

구분	계	고발	수사의뢰	경고
블로그	1	-	1	-
인터넷게시판	4	3	-	1
카카오톡	1	-	1	-
트위터	2	-	2	-
계	8	3	4	1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9대 대선에서 사이버 위반행위로 적발되어 경고·수사의뢰·고발·이첩 등 조치가 취해진 사건 중 허위사실공포 또는 후보자 등 비방의 요소가 있는 사건은 총 70건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위반행위가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인스턴트 메시저의 일종인 '밴드'로 총 31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4건은 고발조치, 1건은 수사 의뢰되었으며 나머지 26건은 경고 조치되었다. 페이스북은 7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71%인 5건이 고발 조치되어 밴드에서 적발된 사건보다 고발 조치된 비율은 오히려 높았다. 다음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사건은 10건이며 이 중 1건은 고발 조치되었으며 8건은 경고 조치되었다. 이외에 인터넷게시판을 통해 허위사실공포 및 비방행위가 이루어진 사건은 9건, 블로그 6건, 카카오톡스토리 1건이었다. 이를 통해볼 때, 밴드, 페이스북, 카카오톡과 같이 유저들 간의 사회적 관계가 비교적 친밀한 사이에서 허위사실 및 비방을 담고 있는 콘텐츠 유통이 자주 일어났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표 3-3〉 제19대 대선 사이버 상 허위사실공포 및 후보자 등 비방행위 매체 및 조치 현황

(단위:건)

구분	계	고발	수사의뢰	경고	이첩
문자메시지	2	1	-	1	-
밴드	31	4	1	26	-
카카오톡스토리	1	1	-	-	-
페이스북	7	5	1	1	-
블로그	6	1	1	4	-
유튜브	1	1	-	-	-
인터넷게시판	9	2	2	5	-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2	1	1	-	-
카카오톡	10	1	-	8	1
트위터	1	1	-	-	-
계	70	18	6	45	1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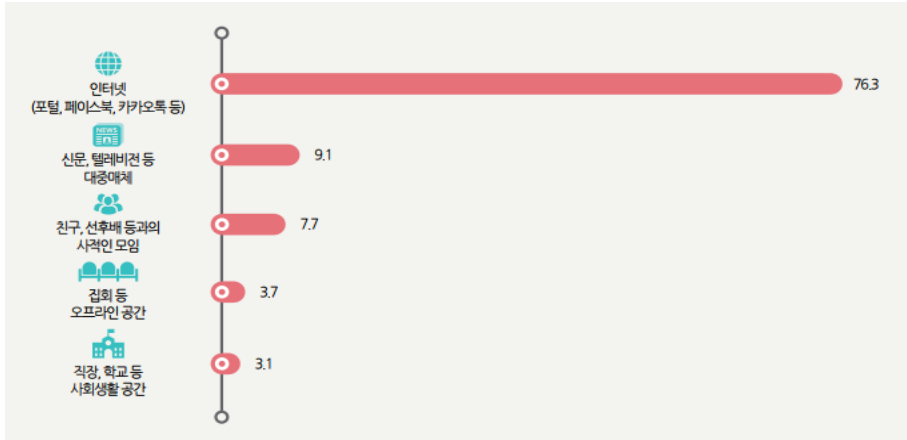
2. 가짜뉴스 유포 현황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고·수사의뢰·고발·이첩 등 조치를 취하거나 게시물 삭제요청이 이루어진 사안은 이른바 가짜뉴스 유통의 범위와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제도적인 규제장치에 포착되지 않은 채 유권자들 사이에서 유통되는 허위사실을 담은 콘텐츠는 앞에서 표로 제시된 사건들보다 다양하고 광범위한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이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조사가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에 의해 실시된 바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제19대 대선이 치러지기 얼마 전인 2017년 3월에 20~50대 성인 1,084명을 대상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본인이 가짜뉴스라고 판단한 콘텐츠를 직접 받아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2.3%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구분해보면 남성 중 36.1%, 여성 중 28.4%가 가짜뉴스로 판단되는 정보를 직접 받아본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연령별로 나누어보면 20대가 37%의 응답률을 보여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어서 30대 중 34.1%, 40대 중 33.7%, 50대 가운데 24.7%가 가짜뉴스를 받아봤다고 답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그 비율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⁷⁸⁾

가짜뉴스로 판단되는 정보가 주로 유포되는 경로에 대한 질문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얻은 것은 포털,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인터넷이었다. 가짜뉴스를 접해본 적 있다고 답한 응답자 350명 중 76.3%가 주로 인터넷을 통해 가짜뉴스를 접하였다고 응답했다. 이는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방안이 주로 정보통신방법을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제시된 것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수치는 가짜뉴스가 비단 인터넷 상에서만 유통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데, 본 조사결과에 따르면 친구나 선후배 등과의 사적인 모임에서 가짜뉴스를 들었다는 응답이 7.7%, 집회 등 오프라인 공간이나 직장, 학교 등 사회생활 공간에서 가짜뉴스를 접했다는 응답이 각각 3.7%와 3.1%로 나타났다. 또한, 신문이나 텔레비전 등 공식 언론을 통해서 가짜뉴스를 접했다는 응답도 무려 9.1%로 나타났다.⁷⁹⁾

78) 오세욱·박아란, 「일반 국민들의 '가짜뉴스'에 대한 인식」, 미디어 이슈 3권 3호, 2017, 6쪽.

79) 오세욱·박아란, 앞의 글, 7쪽.



[그림 3-1] 가짜뉴스로 판단되는 정보를 받아 본 주된 경로

※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온라인 설문조사 (2017년 3월 17일~19일, N=350)

※ 출처: 오세욱·박아란, 「일반 국민들의 '가짜뉴스'에 대한 인식」, 미디어 이슈 3권 3호, 2017, 7쪽에서 발췌.

제2절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의 요인

1. 정치적 환경요인

가. 사이버 선거운동의 등장

가짜뉴스를 비롯한 허위뉴스 유포가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사이버 선거운동의 등장과 함께 일반 유권자들이 온라인 상에서 정치적 의사표현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등 정치문화의 변화가 깔려있다. 이러한 변화를 추동한 중요한 계기를 제공한 것은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사항을 담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한 한정위헌결정이다.

2011년 12월 29일에 내려진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일반유권자 또는 일반국민이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배부·첨부·살포·상영·게시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이 인터넷 상에 게시된 UCC(User-Created Contents, 이용자제작콘텐츠), 블로그, 트위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아닌 일반 유권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이 사건에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들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결정문에서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과 같은 금지사항이 1958년부터 존재해온 것으로서 본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탈법방법에 의한 오프라인 상의 선거운동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른 일반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금지조항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한 것이다.⁸⁰⁾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기 바로 전인 2011년 10월에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 선거는 SNS의 잠재력이 확인된 선거로 주목받았다. 특히, SNS 가운데 트위터의 활동이 크게 주목받았는데 해당 선거기간 중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트윗은 직전 선거인 2011년 4월 27일 재보선에 입후보한 후보들에 대한 트윗보다 10배에 이르러 SNS 상에서의 정치의견 표현이 폭발적인 수준을 보였다.⁸¹⁾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SNS를 비롯한 온라인 상의 선거운동의 잠재력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도 함께 높아졌다. 이에 따라 2012년에 치러진 19대 총선에서 서울지역 48개 선거구에 출마한 172명의 후보 중 63.4%에 해당하는 109명이 트위터를 통한 선거캠페인을 펼쳤으며 48명의 당선자 가운데 46명이 트위터를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⁸²⁾

80) 헌법재판소 2011.12.29.선고 2007헌마1001, 2010헌바88, 2010헌마173·191결정.

81) 오택섭·설진아·마동훈·김해명, 「SNS 정치 발언의 '진실 검증(fact-checking)': 평가와 함의」,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 2012, 174쪽.

82) 장우영, 「스마트 소셜 시대 선거법제 개선과 선거관리 전략」, 입법과 정책 제4권 제2호, 2012, 39쪽.

〈표 3-4〉 19대 총선 서울 지역 후보들의 트위터 캠페인 활동

시기	항목	전체	평균(후보 1인당)
총선기간 (2012.3.29.~4.11.)	후보 트위터 계정 보유율		68.0%
	당선자의 트위터 캠페인 비율		95.8%
	후보의 선거 트윗수	17,911	153.1
	후보의 팔로어수	2,041,434	17,448.2
	후보의 팔로잉수	1,398,473	11,952.8
	후보 선거 트윗의 리트윗수	206,772	1,767.3
	리트윗 된 후보 선거 트윗수	10,428	89.1
	후보 선거 트윗의 도달인원수	33,495,065	276,818.7

※ 출처: 장우영(2012), 40쪽에서 발췌.

〈표 3-5〉 19대 총선 유권자들의 트위터 선거참여 활동(서울 지역)

시기	항목	전체	평균(후보 1인당)
총선기간 (2012.3.29.-4.11.)	후보 언급 트윗수	2,293,420	18,953.9
	후보 언급 트윗 작성 유권자수	432,728	3,576.3
	후보 선거 트윗의 리트윗수	206,772	1,767.3
	후보 선거 트윗을 리트윗한 유권자수	78,373	647.7
	유권자 팔로어수	2,103,900	17,387.6
	유권자 팔로잉수	1,452,743	12,006.1

※ 출처: 장우영(2012), 41쪽에서 발췌.

2011년 이후로 SNS를 비롯한 온라인 선거캠페인이 보편화되는 변화를 겪었지만 이러한 변화가 실제 투표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소셜 미디어를 비롯한 홍보 및 커뮤니케이션 매체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첫째, 매체가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둘째, 유권자의 투표의지에 미치는 영향, 셋째,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 나누어볼 수 있다.⁸³⁾ 지금까지 각 주제에 대한 다양한 실증연구가 국내외에서 발표되었지만 그 내용은 하나로 수렴되지 않으며 상반된 결과를 내놓고 있다. 즉, 소셜미디어의 폭발적인 정치 동원력과 의제설정 기능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표하는 연구가 한 축을 이루고 있는 한편으로, 실제 투표행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도출되고 있다. 일례로, 2014

83) 정인태, 2014, 앞의 논문, 248쪽.

년 6.4 부산 지역 동시 지방선거에서 투표한 유권자 5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투표할 후보자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 매체는 법정 공보물 매체, 방송 매체(TV연설, TV경력방송, 라디오 연설, 라디오 경력 방송), 가두 대면 홍보(길거리 공개 연설, 선거 운동원 운동), 가두 홍보물 매체(현수막, 명함, 유세차량), 광고(TV광고, 신문 광고, 인터넷 광고, 라디오 광고), 인터넷 매체(후보자 홈페이지, 전자 메일), 소셜미디어, 전화 매체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카카오톡, 카카오토리, 유튜브, 밴드와 같은 소셜미디어는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걸려온 전화 다음으로 영향력이 낮은 정보매체로 조사되었다.⁸⁴⁾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소셜미디어를 통한 선거 캠페인은 후보자 결정요인 중 공약 정보 전달에 효과성이 있었고 20대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외에는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여부 및 후보자 선택에서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선거 캠페인이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선거 캠페인에서 소셜미디어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⁸⁵⁾ 즉, 선거 캠페인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과 유권자들의 투표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통제하여 소셜미디어의 영향을 검토해보면 유권자들의 투표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특히 지방선거의 경우에 해당하는 결론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⁸⁶⁾

나. 정치적 의사표현의 민주화와 이념적 극단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은 일반 유권자들이 온라인 상에서 정치적 의사표현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여기에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하여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개방성, 상호작용성, 탈중앙통제성, 접근의 용이성, 다양성 등을 기본으로 하는 사상의 자유시장에 가장 근접한 매체”로 규정하였다.

“즉, 인터넷은 저렴한 비용으로 누구나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가장 참여적인 매체로서, 표현의 쌍방향성이 보장되고, 정보의 제공을 통한 의사표현 뿐 아니라 정보의

84) 정인태, 2014, 앞의 논문, 257-258쪽.

85) 정인태, 2014, 앞의 논문, 270쪽.

86) 정인태, 2014, 앞의 논문, 271쪽.

수령, 취득에 있어서도 좀 더 능동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특성을 지니므로, 일반유권자도 인터넷 상에서 정치적 의사표현이나 선거운동을 하고자 할 개연성이 높고,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의 공정성 훼손이라는 폐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현저히 낮으며, 매체 자체에서 잘못된 정보에 대한 반론과 토론, 교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국가의 개입이 없이 커뮤니케이션과 정보의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확연히 대비된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인터넷은 국민주권의 실현 및 민주주의의 강화에 유용한 수단인 동시에 '기회의 균형성, 투명성, 저비용성의 제고'라는 선거운동 규제의 목적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매체로 평가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⁸⁷⁾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은 민주주의에 있어서 인터넷의 잠재력에 대한 낙관적 기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처럼 인터넷이 자발적인 정치적 의사표현과 평등한 의견교환을 촉진함으로써 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의 반대편에는 인터넷이 제공하는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다양한 집단 간의 의견교환을 차단하고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즉, SNS를 통한 선거운동이 정치적 의견이 다른 집단 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포퓰리즘적 선동을 활용하는 정치인들에게 유리한 장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⁸⁸⁾ 또한, 트윗봇(twitt bot)이나 고용된 자를 활용하여 특정 의견을 퍼뜨리는 등 SNS 상의 여론이 조작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전파력이 빠른 SNS의 특성 상 허위정보가 확산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하였다.⁸⁹⁾

2. 심리적 설명요인

가. 태도극화와 집단극화

사회공동체 내의 정치적 의견이 극단화되는 현상에 대해서 시도된 다양한 설명방식 가운데 심리학 이론을 활용한 설명은 주로 '태도극화'(attitude polarization)와 '집단극화'(group polarization) 개념을 통해 이루어진다. 태도극화는 대상에 대해 견지하고 있는 태도가 강해지는 경향을 의미하며 이는 대상에 대해 특정한 도식과 태도가 이미

87) 헌법재판소 2011.12.29.선고 2007헌마1001, 2010헌바88, 2010헌마173·191결정.

88) 이상현·전홍식, 앞의 논문, 277-278쪽.

89) 이상현·전홍식, 앞의 논문, 278-279쪽.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 나타난다.⁹⁰⁾ 집단극화 현상은 의사결정이나 태도의 형성에 있어 집단 내 상호작용의 결과 개인이 본래 가지고 있던 것보다 더 강한 태도로 귀착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이러한 현상은 집단 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본래 개인이 가지고 있던 태도를 지지하는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면서 다소 불확실했던 태도가 더욱 확실한 것으로 변화하는 측면을 보여준다. 또한 개인이 속한 집단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에 동조함으로써 개인의 태도가 더욱 분명한 것으로 극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⁹¹⁾

집단 내 통용되는 규범에 동조함으로써 태도가 강화되는 현상은 집단정체감이 태도 극화 현상으로 이어지는 측면을 보여주기도 한다. 여기에서 “집단정체감”은 단순히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자기의 동질성에 대한 인식, 즉 “인지된 동질성”(perceived homogeneity)을 포함하는 개념이다.⁹²⁾ 이렇게 보았을 때, 개인이 속한 내집단과 외집단이 구별되어 범주화됨에 따라 내집단의 구성원 간 차이보다 집단 간 차이가 크게 지각되고 내집단에 대한 동질감이 강화되면서 ‘극화된 내집단 규범’(polarized in-group norms)에 동조함으로써 태도극화를 추동할 수 있다. 특히, 외집단이 정치적 적대관계에 있다고 간주될 경우, 외집단에 대한 배척이 강화되고 내집단에서 통용되는 신념을 중심으로 집단극화가 일어날 여지가 크다.⁹³⁾

나. 선택적 노출과 확증편향

태도극화와 집단극화가 일어나는 메커니즘에 있어서 ‘정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흔히 ‘선택적 노출’(selective exposure)과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 개념을 통해 설명된다. 스트라우드(Natalie Jomini Stroud)는 “선택적 노출”을

90) 한규석, 『사회심리학의 이해』, 개정판, 학지사, 2002, 252쪽.

91) 한규석, 앞의 책, 417-418쪽.

92) E-J. Lee, “Deindividuation Effects on Group Polarization in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The Role of Group Identification, Public-self-awareness, and Perceived Argument Quality”, *Journal of Communication* Vol.57 No.2, 2007, pp.385-403(노정규·민영, 「정치 정보에 대한 선택적 노출이 태도 극화에 미치는 효과 - 비정치적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언론학보 제56권 제2호, 2012, 237쪽에서 재인용).

93) J. C. Turner, M. S. Wetherell, & M. A. Hogg, “Referent Informational Influence and Group Polarization”,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28, 1989, pp.135-147(노정규·민영, 앞의 논문, 233쪽에서 재인용).

“개인의 믿음과 성향에 일치하는 언론매체를 선택하는 것”으로 정의한다.⁹⁴⁾ “확증편향”은 기존의 신념, 기대, 가설을 지지하는 편파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찾거나 해석하는 것을 의미하며 의도적인 왜곡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작용을 일컫는다.⁹⁵⁾ 선택적 노출 개념이 정보선택 과정을 설명해준다면 확증편향은 정보의 인지적 처리와 수용과정을 설명해주는 개념으로 태도극화의 두 가지 차원과 각각 관련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선택적 노출 효과에 대한 연구는 1950년대 사회심리학 발전의 한 축을 이루었던 사회부조화 이론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인지부조화를 줄이기 위해 본인의 태도와 친화적인 정보를 선택적으로 접함으로써 기존의 태도를 강화하게 현상에 대한 초기 연구는 미디어보다 주로 선거운동의 효과와 관련하여 이루어졌다. 이 당시 연구는 특정 정보에 대한 선택적 노출이 정보수용자의 의도적인 선택의 결과인지 아니면 정보수용자의 개인적인 네트워크나 사회적 환경에 따른 결과인지를 구별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었다.⁹⁶⁾ 이후 인지부조화 이론에 대한 연구들은 개인의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설명하는 심리학 이론으로서 어떠한 현상을 인지부조화 이론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을 정교화하였다. 즉, 특정 행동을 상황적 압력이 아니라 본인의 선택에 의해 취했다고 인식해야 하며, 이러한 선택의 결과 부정적인 영향을 예견했을 때 인지부조화가 나타나는 등, 행위주체의 인식 및 상황적 요소가 인지부조화 현상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작용한다.⁹⁷⁾

인지부조화를 감소시키기 위한 심리적 기제가 발현된 것으로 선택적 노출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정보수용자가 본인의 태도와 불일치하는 불편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였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적대적 매체지각’ 현상은 정보수용자가 본인의 태도와 불일치하는 정보를 편향된 것으로 지각하는 인지적 메커니즘을 보여준다. 적대적 매체지각 현상은 논쟁적 사건에 대한 미디어의 보도를 편파적이며 자신이 취하는 입장에 적대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말한다.⁹⁸⁾

94) Natalie Jomini Stroud, “Media Use and Political Predispositions: Revisiting the Concept of Selective Exposure”, *Political Behavior* Vol. 30, No. 3, 2008, p.342.

95) Raymond S. Nickerson, “Confirmation Bias: A Ubiquitous Phenomenon in Many Guise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Vol. 2 No.2, 1998, p.175.

96) Shanto Iyengar & Kyu S. Hahn, “Red Media, Blue Media: Evidence of Ideological Selectivity in Media Use”, *Journal of Communication* Vol. 59 No. 1, 2009, pp.20-21.

97) 한규석, 앞의 책, 231쪽.

98) Robert P. Vallone, Lee Ross, & Mark R. Lepper, “The Hostile Media Phenomenon: Biased

이처럼 주류 언론을 편향된 것으로 지각한 수용자는 인지부조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 불편한 정보를 회피하고 본인의 태도와 보다 일치하는 정보를 찾아나설 수 있으며,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뉴스채널의 다변화 환경이다. 일례로, 미국의 보수 공화당 입장에 친화적인 FOX 뉴스 채널이 개국하면서 공화당을 비롯한 정치적 보수진영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CNN이나 NPR과 같은 기존의 주류 언론 대신 보수 언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으며, 이는 선택적 노출 현상을 심화시키는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 바 크다.⁹⁹⁾ 한 연구에 따르면, FOX, CNN, NPR, BBC 가운데 정치적 성향을 가장 분명히 드러내는 FOX 뉴스채널이 보수층의 관점에 부합하는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는 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¹⁰⁰⁾ 이처럼 미디어 기술 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용자들이 정보획득경로를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면서 선택적 노출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 이는 인터넷 기술이 정보의 지평을 확대시키기보다 축소시키고 있다는 평가와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유권자들이 기존 신념을 지지하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접함으로써 태도를 강화하는 현상은 정치적 지형의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다.¹⁰¹⁾

3. 기술적 환경요인

가. 모바일 환경의 보편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실시한 2016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 7월 기준 만 3세 이상 인구 중 최근 1개월 이내에 인터넷을 이용한 적이 있는 비율은 88.3%였다. 이 가운데, 만 60세 이상 인구의 인터넷이용률은 2016년 51.4%로 조사되어 2010년 21.8%에 비해 2.3배 이상, 2015년 39.5%에 비해 17.7% 상승했다.¹⁰²⁾ 선거권이 있는 20대 이상의 연령대별 인터넷이용률을 살펴보면, 20대와 30대의 인터넷이용률은

Perception and Perceptions of Media Bias in Coverage of the Beirut Massac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49 No. 3, 1985, p.584.

99) Shanto Iyengar & Kyu S. Hahn, “Red Media, Blue Media: Evidence of Ideological Selectivity in Media Use”, *Journal of Communication* Vol. 59 No. 1, 2009, p.22.

100) Iyengar & Hahn, 앞의 논문, p.28.

101) Iyengar & Hahn, 앞의 논문, p.34.

102) 한국인터넷진흥원, 2016 「인터넷이용실태조사」, 2016, 25쪽.

각각 99.9%와 99.8%로 거의 모두 인터넷을 이용한다고 볼 수 있다. 40대도 99.4%의 높은 인터넷이용률을 보였고 50대의 경우도 94.9%로 조사되었다. 60대의 인터넷이용률은 74.5%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다소 낮은 수치를 보였지만 전년도 조사에 비해 14.9%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70세 이상의 경우 전년도보다 8.0% 증가한 25.9%의 인터넷이용률을 나타냈다.¹⁰³⁾

최근 한 달 내에 1회 이상 이동전화나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인구 비율은 85.9%였으며, 특히 최근 24시간 이내의 모바일 인터넷이용자 비율은 79.3%로 나타나, 우리나라 인구 4명 중 3명 이상이 상시적으로 모바일을 이용해 인터넷에 접속한다고 볼 수 있다. 유권자 연령대별로 모바일 인터넷이용률을 살펴보면, 20대 99.8%, 30대 99.6%, 40대 99.1%로 대부분 모바일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의 경우 94.0%, 60대는 73.0%였으며 70세 이상의 모바일 인터넷 이용률은 24.5%로 나타났다.¹⁰⁴⁾

인터넷 사용목적에 대한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이메일, SNS, 채팅 등 '커뮤니케이션'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91.6%로, 커뮤니케이션이 인터넷이용의 주된 목적임을 알 수 있다.¹⁰⁵⁾ 이 가운데, 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구글 행아웃과 같은 인스턴트 메신저를 지난 1년 간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만6세 이상 인구 가운데 92.5%였고 최근 24시간 이내 인스턴트 메신저 이용률은 81.6%로 나타났다.¹⁰⁶⁾ 60대의 인스턴트 메신저 이용률은 2016년 80.3%로 지난 해에 비해 8.0% 상승했으며, 70세 이상 인구의 경우 작년보다 12.3% 상승한 48.4%로 나타났다.¹⁰⁷⁾ 주로 사용하는 인스턴트 메신저 종류를 살펴보면 이용자 중 99.2%가 '카카오톡'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응답했다.¹⁰⁸⁾

언론보도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하여 인터넷이용행태를 살펴보면, 만6세 이상 인터넷이용자 가운데 86.5%가 인터넷을 통해 언론사 홈페이지나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뉴스, 신문기사를 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50대 인터넷이용

103) 한국인터넷진흥원, 앞의 글, 28쪽.

104) 한국인터넷진흥원, 앞의 글, 44쪽.

105) 한국인터넷진흥원, 앞의 글, 40쪽.

106) 한국인터넷진흥원, 앞의 글, 71쪽.

107) 한국인터넷진흥원, 앞의 글, 72쪽.

108) 한국인터넷진흥원, 앞의 글, 74쪽.

자들 중 90% 이상이 온라인 뉴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60대는 74.0%, 70세 이상은 43.6%가 온라인 뉴스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⁰⁹⁾

SNS를 최근 1년 이내에 이용한 인구 비율은 만6세 이상 인터넷이용자 가운데 65.2%였으며, 연령대별로는 20대 가운데 91.5%, 30대 83.9%, 40대 69.5%, 50대 52.6%, 60대 29.8%, 70세 이상 8.4%로 조사되었다.¹¹⁰⁾ SNS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질문한 문항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얻은 것은 ‘카카오토티’(71.7%)였으며, ‘페이스북’(61.4%), ‘네이버밴드’(42.1%)에 비해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¹¹¹⁾ 주로 사용하는 SNS서비스는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20대의 경우 페이스북 이용률이 가장 높았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페이스북 이용률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30대 이상에서는 카카오토티가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50대와 60대 연령층에서는 페이스북 이용률보다 카카오토티 이용률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네이버밴드의 경우, 40대와 50대에서 이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¹¹²⁾

〈표 3-6〉 연령대별 주이용 SNS 서비스 현황

구분	카카오토티	페이스북	네이버밴드	인스타그램	네이버카페	네이버블로그
20대	64.5	81.8	31.5	36.9	10.1	12.3
30대	72.5	67.6	41.4	24.7	11.9	13.7
40대	77.9	48.8	54.0	15.3	12.1	10.2
50대	73.8	33.7	57.6	9.8	9.9	7.5
60대	71.7	33.2	49.3	10.0	8.1	6.2
70세 이상	66.0	42.6	41.9	14.8	8.4	5.6

※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2016 인터넷이용실태조사, 2016, 81쪽.

SNS 이용자들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5.1%는 ‘타인이 게시한 콘텐츠를 살펴보기 위해서’ SNS를 이용한다고 답했으며, ‘정보나 지식, 사건사고 등을 공유하기 위해서’라는 응답도 41.1%로 조사되었다. 즉, 친교나 교제 목적으로 SNS를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긴 하지만(84.0%) 이외에도 콘텐츠나 정보획득이 SNS 이용의 주요목적 가운데

109) 한국인터넷진흥원, 앞의 글, 112쪽.

110) 한국인터넷진흥원, 앞의 글, 77~ 78쪽.

111) 한국인터넷진흥원, 앞의 글, 80쪽.

112) 한국인터넷진흥원, 앞의 글, 81쪽.

하나임을 알 수 있다.¹¹³⁾ 나아가 SNS에 대한 인식조사 문항에서 ‘SNS를 통해 최신 정보를 가장 빠르게 얻을 수 있다’고 응답한 SNS이용자가 74.0%로, 정보소통 기능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이 다수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SNS를 불필요한 정보, 요청 등을 받는다’는 응답도 50.1%에 달해 부정적 측면에 대한 인식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¹¹⁴⁾

이처럼 인터넷이용률이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이동 중에도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기기 사용과 다른 유저들과의 네트워킹 기능이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모든 연령대를 아우르는 스마트폰 보급과 이에 따른 SNS 및 인스턴트 메신저 이용률이 증가하면서 과거에 비해 연령대별 디지털 격차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18대 대선에서는 SNS에 후보지지 또는 비판내용이 담긴 콘텐츠를 직접 올리는 등 SNS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20대보다 50대와 60대에서 더 두드러졌다는 연구결과도 있다.¹¹⁵⁾

나. SNS의 유형과 가짜뉴스

SNS는 Social Network System, Social Network Sites, Social Networking Sites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실시한 2016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서는 SNS(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인터넷상에서 친구, 동료 등 지인과의 인간관계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를 공유하는 활동으로 타인이 게시한 콘텐츠를 단순히 열람·관찰하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¹¹⁶⁾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러한 SNS정의에 포함되는 서비스로 미니홈피, 블로그, 트위터, 카카오톡, 페이스북, 구글플러스를 예로 들고 있다.¹¹⁷⁾

SNS 서비스는 사용 목적과 네트워킹 형태 등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유튜브와 같이 콘텐츠를 공유하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형’ SNS와 페이스

113) 한국인터넷진흥원, 앞의 글, 83쪽.

114) 한국인터넷진흥원, 앞의 글, 84쪽.

115) 박상운, 「왜 SNS에서 정치 양극화가 지속되는가? - 의사소통 대상, SNS 정보 신뢰도, 타인 신뢰도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30권 제1호, 2014, 11쪽.

116) 한국인터넷진흥원, 앞의 글, 4쪽.

117) 한국인터넷진흥원, 앞의 글, 77쪽.

복과 같이 사용자의 프로필을 중심으로 친구맺기를 통해 다양한 일상과 관심사를 공유하는 '소셜 네트워킹형' SNS, 그리고 트위터와 같이 단문으로 작성된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마이크로 블로그형' SNS로 나눌 수 있다.¹¹⁸⁾ 또는, 이보다 간략하게 사용목적에 따라 '정보지향성' SNS와 '관계지향성' SNS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정보지향성 플랫폼에는 트위터, 유튜브가 해당되며 페이스북은 관계지향성 플랫폼으로 분류할 수 있다.¹¹⁹⁾

장우영은 2012년 논문에서 다양한 SNS유형 가운데 “트래픽 규모의 증가세, 정보공유와 소통의 개방성 및 사회정치적 파급력이 훨씬 크다는 점에서 정보지향성 SNS, 특히 트위터의 정치적 역할이 더욱 크게 주목된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트위터를 통한 온라인 공론장의 활성화와 참여적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2010년을 전후하여 많이 이루어졌다면, 이번 19대 대선에서 쟁점이 되었던 가짜뉴스의 경우 트위터와 같은 정보지향성 SNS보다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과 같은 관계지향성의 폐쇄형 SNS를 통해 유통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SNS의 확장과 변화경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이드(boyd)와 엘리슨(Ellison)은 2008년 논문에서 SNS(Social Network Sites)를 ① 제한된 시스템 내에서 공적이거나 반(半)공적인 프로필을 구축하여 ② 상호연결된 유저들의 연결 목록을 만들고 ③ 시스템 내에서 본인이나 다른 유저들이 만든 연결목록을 타고 다니며 볼 수 있는 웹 기반 서비스로 정의하였다.¹²⁰⁾ 이러한 정의가 도출될 당시에 등장했던 SNS는 싸이월드, 페이스북과 같이 각 유저의 연결목록이 공개되어 있어 페이지 방문자들이 해당 유저의 연결목록을 타고 다른 유저들의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이처럼 연결목록의 공개가 당시 SNS의 핵심요소로 여겨지기도 하였다.¹²¹⁾

그러나 이후 카카오톡과 같은 폐쇄형 SNS의 등장은 기존의 개방형 SNS와 다소

118) Matthew Fraser & Soumitra Dutta, 2009, *Throwing Sheep in the Boardroom: How Online Social Networking Will Transform Your Life, Work and World*, Wiley(오강탁·송경재·장우영·양희인, 「스마트 시대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사용자 리터러시(literacy) 제고 방안 연구: 정책적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12, 606쪽에서 재인용).

119)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공직자 SNS 가이드라인』, 2011(장우영, 앞의 논문, 33쪽에서 재인용).

120) danah m. boyd & Nicole B. Ellison, Social Network Sites: Definition, History, and Scholarship,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Vol. 13, No. 1, 2008, p.211.

121) boyd & Ellison, 앞의 논문, p.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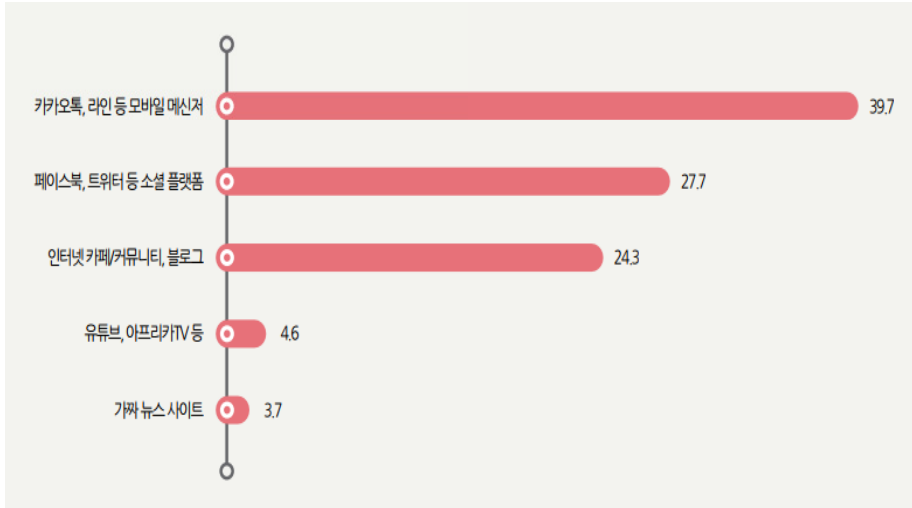
다른 작동방식으로 운영된다. 대표적인 SNS인 페이스북과 인스턴트 메신저인 카카오톡은 네트워크의 형성과 콘텐츠의 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다. 우선, 페이스북은 모바일 환경에서도 활성화되어 있지만 원래 PC기반 서비스로 시작했으며 이메일 기반으로 친구추천이 이루어지며 상호 수락에 의해 친구관계가 맺어진다. 반면, 카카오톡은 모바일 기반 서비스로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를 통해 자동으로 친구 등록이 이루어진다. 페이스북의 경우 각각의 게시물에 대해 공개범위를 설정할 수 있으며 전체 공개 게시물은 친구맺기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볼 수 있는 개방성을 지니며, 오프라인 상에서의 친교가 없더라도 친구맺기가 가능하다. 이에 비해 카카오톡은 개인의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을 정도의 관계에서 친구맺기가 되며 대화내용은 기본적으로 대화방에 참여한 개인들에게만 공개된다. 즉, 카카오톡은 페이스북에 비해 오프라인 상에서의 교류가 있는 친밀한 관계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목적으로 더 많이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¹²²⁾ 이러한 특성은 가짜뉴스가 유포되는 데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기도 한다. 즉, 폐쇄형 SNS의 경우 아는 사람을 통해 정보가 유통되며 공개적인 팩트체크나 반론을 통한 정보의 수정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가짜뉴스가 보다 위력을 발휘하기 쉬운 기술적 환경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제19대 대선 시기에 가짜뉴스 유포현황에 관한 조사에서 카카오톡과 같은 폐쇄형 SNS를 통해 가짜뉴스가 유포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2017년 3월에 성인 1,0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짜뉴스라고 판단한 정보를 접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350명 가운데 해당 정보를 포털,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인터넷을 통해 접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76.3%였다.¹²³⁾ 이를 보다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카카오톡, 라인 등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가짜뉴스라고 판단한 정보를 접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39.7%로 가장 많았으며,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플랫폼은 27.7%, 인터넷카페나 커뮤니티, 블로그는 24.3%, 유튜브, 아프리카TV등은 4.6%, 가짜뉴스사이트는 3.7%였다.¹²⁴⁾

122) 정희석, 「한국형 SNS의 진화: 카카오톡 사례를 중심으로」, 디지털정책연구 제10권 제10호, 2012, 151쪽.

123) 오세욱·박아란, 앞의 글, 7쪽.

124) 오세욱·박아란, 앞의 글, 8쪽.



[그림 3-2] 가짜뉴스로 판단되는 정보를 받아 본 주된 인터넷서비스 경로

※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온라인 설문조사 (2017년 3월 17일~19일, N=350)

※ 출처: 오세욱·박아란, 「일반 국민들의 '가짜뉴스'에 대한 인식」, 미디어 이슈 3권 3호, 2017, 8쪽에서 발췌.

그러나 가짜뉴스의 유포는 비단 폐쇄형 SNS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특히 페이스북과 같은 개방형 SNS에서는 앞서 논의된 집단극화 및 확증편향 효과에 의해 잘못된 정보가 빠르게 공유되어 유포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페이스북의 자료를 활용한 연구에서 잘못된 정보가 유포되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선택적 노출이 잘못된 정보 유포의 일차적 동력이며 “반향실”(echo chambers)과 같은 동질적 집단형성으로 귀결됨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 연구는 음모론과 과학정보에 대한 포스트의 작성과 공유패턴을 분석하였는데, 음모론은 최초 발원지가 불분명하며 내용에 있어 불확실성을 담고 있는 반면 과학정보는 작성주체가 명확하며 과학적 사고과정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음모론과 과학정보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확증가능성 여부이다.¹²⁵⁾ 각 유형의 정보를 공유하는 페이스북 유저들은 분리된 집단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전달은 대부분 동질적 집단 안에서 이루어졌다. 정보의 유포양상에 있어서는 두 유형의 정보가 차이를 보였는데, 과학뉴스는 포스트

125) Michela Del Vicario, Alessandro Bessi, Fabiani Zollo, Fabio Petroni, Antonio Scala, Guido Caldarelli, H. Eugene Stanley, & Walter Quattrociocchi, “The Spreading of Misinformation Online”,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Vol.113 No.3, 2016, p.554.

가 작성된 초기에 가장 많이 유포되었고 온라인상에서 포스팅이 이루어진 기간이 길더라도 특별히 유저들의 관심을 많이 받지 않았다. 반면, 음모론은 서서히 확산되고 온라인상에서 오래 회자될수록 더 많은 유저들의 관심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¹²⁶⁾

제3절 차단과 규제가능성 검토

1. 기술적 차단 가능성과 한계

2016년 11월 14일 구글은 페이크뉴스 사이트에 구글의 광고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를 추동하는 동기 중 경제적 이득추구를 차단함으로써 가짜뉴스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구글 네트워크에 포함된 페이지에 광고를 실어주는 AdSense 서비스를 특정 페이지에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광고수익을 차단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구글은 검색 알고리즘이나 구글 뉴스 서비스에서 결과순위를 매기는 시스템을 수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즉, 구글 검색 결과에 가짜뉴스가 상위에 오르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나 특정 콘텐츠의 정확성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것이다. 이는 특히 미국 대선 직후 “최종 투표 결과”(final election count)라는 검색어에 대해 트럼프가 일반투표율에서 앞선다는 거짓 뉴스가 구글 검색결과 상단에 위치해있었던 문제가 불거진 것과 관련하여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음을 의미한다.¹²⁷⁾

검색엔진이나 소셜미디어의 뉴스피드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는 가짜뉴스 문제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자동화된 뉴스피드 알고리즘이 확증편향과 태도극화 현상을 강화시킨다는 분석에 의해 뒷받침된다. 즉, 페이스북과 같은 서비스는 특정 유저가 ‘공유’, ‘좋아요’ 등의 반응을 보이는 콘텐츠와 유사한 페이지를 뉴스피드의 상단에 오도록 알고리즘이 운영된다. 이에 따

126) Del Vicario, et al., 앞의 논문, p.556.

127) “Google, Facebook move to restrict ads on fake news sites”, <https://www.reuters.com/article/us-alphabet-advertising/google-facebook-move-to-restrict-ads-on-fake-news-sites-idUSKBN1392MM> (2017년 12월 4일 최종검색).

라 정보수용자의 자발적인 선택적 노출 이전에 기술적으로 유저의 취향 및 성향과 매칭되는 콘텐츠를 선별하여 보여줌으로써 태도 극화 현상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가용한 정보가 급증하는 인터넷 환경이 과거에 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저의 성향에 부합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접하게 됨으로써 편향된 정보접근성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즉,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제공하는 정보만 접하게 되는 반향실(echo chamber) 현상과 유저의 이전 클릭 등 인터넷 검색활동을 토대로 한 알고리즘에 의해 선택된 콘텐츠만 접하게 되는 필터버블(filter bubble) 현상이 가짜뉴스가 공유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한다는 것이다.¹²⁸⁾

2. 팩트체크

가. 전문 언론인에 의한 팩트체크

팩트체크(fact check)는 “비허구적(Non-Fictional) 텍스트에 포함된 사실적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인하는 행위”를 뜻한다.¹²⁹⁾ 우리보다 앞서 팩트체크를 시작한 미국의 경우, 1988년 대통령 선거 당시 조지 부시(George W. Bush)의 선거운동이 상대후보에 대한 비방을 주로 하는 네거티브 캠페인의 양상을 띠었던 것에 대한 비판에서 팩트체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¹³⁰⁾ 이후 1996년과 2000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정치인의 말 바꾸기(flip)가 논란이 되면서 이에 대한 추적확인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언론인이나 대학의 연구기관 중심의 팩트체크 기구들이 구성되어 팩트체크 결과를 주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¹³¹⁾ 대표적인 팩트체크 기구로는 플로리다 주의 신문사인 탬파 베이 타임즈(Tampa Bay Times)가 운영하는 ‘폴리티팩트’

128) E. Pariser, *The Filter Bubble: What the Internet Is Hiding from You*, Penguin Press, 2011; S. Flaxman, S. Goel, and J.M. Rao, “Ideological Segregation and the Effects of Social Media on News Consumption”, SSRN Scholarly Paper ID 2303138, Social Science Research Network, Rochester, NY, 2013(Etyan Bakshy, Solomon Messing, and Lada A. Adamic, “Exposure to Ideologically Diverse News and Opinion on Facebook”, *Science* Vol. 348 No. 6239, 2015, p.1130에서 재인용).

129) 오세욱, 「팩트체크의 현재와 자동화한 팩트체크: 편견 없는 ‘완벽한’ 팩트체크를 위하여」, 신문과 방송, 2017년 2월호, 23쪽.

130) 오택섭·설진아·마동훈·김해영, 앞의 글, 181쪽.

131) 오택섭·설진아·마동훈·김해영, 앞의 글, 182쪽.

(PolitiFact),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애너버그 공공정책 센터(Annenberg Public Policy Center)가 운영하는 ‘팩트체크’(FactCheck.org)가 있으며, 워싱턴 포스트와 같은 주류 언론사에서도 ‘팩트 체커’(the Fact Check)라는 고정 칼럼을 두어 주기적인 진실 검증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¹³²⁾ 이러한 미국의 팩트체크 기구들은 인터넷 상에 유포되는 “가짜뉴스” 문제가 대두되기 이전에 유명 정치인들의 정치적 발언의 진실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탐사보도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는 특징이 있다.

팩트체크(fact check)는 정치인의 발언, 언론 보도, 인터넷 상의 게시물에 담긴 ‘사실’을 단순히 확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진술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와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의 관계에 대한 해석을 포함하는 “맥락성(contextuality)의 해석” 문제이다. 즉, 검증 대상이 되는 발언이 담고 있는 “주장(claim)”이 ‘적합한(relevant)’ ‘사실(fact)’을 근거로 한 것인가를 판단함으로써 “진실성(truth)”을 확인하는 것이다.¹³³⁾

예를 들어 미국의 대표적인 팩트체크 사이트인 ‘폴리티팩트’(Politifact)는 정치인들의 발언이나 정당 및 사회운동단체 등 정치담론에 참여하는 집단 구성원들의 발언에 대한 팩트체크를 실시한다. 팩트체크의 대상은 연설, 뉴스기사, 보도자료, 선거운동 홍보책자, TV광고, 페이스북 게시물, TV나 라디오 인터뷰를 망라하며 그 가운데 뉴스의 가치가 있고 널리 유포될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하여 이루어진다. 다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에 근거한 발언이 아닌 전적인 의견 표명에 해당하는 발언은 팩트체크 대상에서 제외한다. 팩트체크 결과는 해당 발언의 상대적인 정확성에 따라 6단계로 구분한 ‘진실 측정기’(Truth-O-Meter)로 표시된다. 폴리티팩트가 밝힌 팩트체크의 원칙에 따르면 대상 진술은 진공 상태에서 검증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진술이 나온 전후 맥락과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증된다.¹³⁴⁾

이러한 팩트체크 기능을 활용하여 이른바 가짜뉴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시행 가능한 팩트체크 시스템과 검증대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132) PolitiFact, <http://www.politifact.com/truth-o-meter>; FactCheck.org, <http://www.factcheck.org>; Fact Checker, Washington Post,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fact-checker/?utm_term=.a798c0f46dc6 (2017년 12월 9일 최종검색).

133) 오택섭·설진아·마동훈·김해영, 앞의 글, 173쪽.

134) “The Principles of PolitiFact, PunditFact and the Truth-O-Meter”, <http://www.politifact.com/truth-o-meter/article/2013/nov/01/principles-politifact-punditfact-and-truth-o-meter/> (2017년 12월 9일 최종검색).

팩트체크의 주체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검증 주체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뢰가 확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팩트체크 기구의 정치적 중립성과 재정적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학계와 언론의 산학협력 모형”이 제안되기도 하였다.¹³⁵⁾ 특히, 주류 언론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언론 소비자들의 신뢰가 합의를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고 볼 수 있는 학계의 기관을 중심으로 특정 언론사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배경의 언론인들을 포함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나. 자동화된 팩트체크

앞에서 언급된 팩트체크 모델은 경륜있는 언론인들이 주축이 되어 내용을 검증하는 방식으로서 검증대상이 될 텍스트를 선정하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진다. 그런데 주류 언론 뿐 아니라 수많은 인터넷 언론과 그 외 일반 시민들이 생성해내는 텍스트의 양이 막대한 만큼 팩트체크 기구의 검증대상이 되는 텍스트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에 의한 팩트체크는 모든 정보를 검증할 수 없으며 특정한 기준에 의해 검증할 텍스트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 과정 또한 완전한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컴퓨터를 활용한 자동화된 팩트 체크 기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¹³⁶⁾

이러한 시도의 일환으로 인디애나주립대의 복잡계 네트워크 및 시스템 연구 센터의 연구진은 2015년 컴퓨터를 이용한 팩트체크 방식을 발표했다. 이 방식은 복잡한 팩트 체크 과제를 간단한 네트워크 분석으로 치환시킴으로써 개념들 간의 연결패턴을 계산하여 특정 진술문이 사실일 확률을 도출해내는 식으로 이루어진다.¹³⁷⁾ 이처럼 자동화된 팩트체크 기술은 기본적으로 사실여부에 대한 판단을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수학적 문제로 치환하며,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되어 있는 기존의 콘텐츠를 기준점으로 삼아 새로운 진술문이 사실일 확률을 계산해낸다. 즉, 현재까지 축적된 사실정보에

135) 오택섭·설진아·마동훈·김해영, 앞의 글, 201쪽.

136) 오세욱, 앞의 글, 23쪽.

137) Giovanni Luca Ciampaglia, Prashant Shiralkar, Luis M. Rocha, Johan Bollen, Filippo Menczer, Alessandro Flammini, “Computational Fact Checking from Knowledge Networks”, *PLOS ONE* Vol.10 No.6, 2015, p.10.

비추어 팩트체크가 이루어지며 인디애나주립대의 연구진이 수행한 팩트체크 방식은 위키피디아(Wikipedia)를 판단의 근거점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한계는 기존에 축적된 정보를 통해 사실여부를 유추할 수 있을 때에만 팩트체크 기능이 발휘될 수 있으며 데이터베이스에 관련정보가 충분히 집적되지 않은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는 기계적 방식의 판단이 어렵다는 것이다.¹³⁸⁾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화된 팩트체크 기술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한국어의 특성상 자연어 처리 기술이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실제로 활용될 수 있는 수준의 자동화된 팩트체크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¹³⁹⁾ 또한, 현재 개발 중인 자동화된 팩트체크 기술은 기존에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를 근거점으로 삼거나 기계학습방식을 통해 진실성을 확률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근거점이 되는 데이터베이스를 형성하는 기존의 언론보도나 기계학습의 토대가 되는 인간행위자의 판단이 충분히 객관적이고 투명한 수준으로 확보되어야 신뢰할 만한 자동화된 팩트체크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자동화된 기술은 팩트체크 결과를 확률적으로 제시할 뿐 최종적인 판단은 인간에 의해 결정된다.¹⁴⁰⁾ 자동화된 팩트체크 기술은 하나의 도구로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정보량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활용할 수 있으나 가짜뉴스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팩트체크를 위해서는 전문 언론인에 의한 팩트체크 모델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자동화된 팩트체크 기술을 결합시키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3. 사이버 리터러시

2017년 3월 3일,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인권 특별조사위원회와 유럽안전보장협력기구(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OSCE), 미주기구(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OAS), 아프리카 인권위원회(African Commission on Human and People's Rights, ACHPR)는 “표현의 자유와 “페이크 뉴스”, 허위 정보와 프로파간다에 관한 공동선언”(Joint Declaration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Fake

138) 오세욱, 앞의 글, 25쪽.

139) 오세욱, 「자동화된 사실 확인(fact checking) 기술(technology)의 현황과 한계」,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34권 3호, 2017, 167쪽.

140) 오세욱, 앞의 논문, 172쪽.

News”, Disinformation and Propaganda)을 채택하였다.¹⁴¹⁾

여기에서는 “거짓 뉴스”(false news)나 “비객관적 정보”(non-objective information) 등 애매모호한 내용을 담은 정보를 유포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당한 제한이 아니므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나아가, 잘못된 정보와 프로파간다의 문제를 다루는 데 핵심적인 것은 미디어의 다양성이며 국가는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다양한 소통 환경을 조성하는 의무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서 ① 다양하고 고품질의 미디어 콘텐츠가 생산되도록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것, ② 언론 소유권이 집중된 구조가 되지 않도록 규제할 것, ③ 언론이 소유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공동선언문은 국가의 의무로서 미디어 및 디지털 리터러시(media and digital literacy)를 함양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디지털 리터러시, 또는 사이버 리터러시(cyber literacy)는 “허구와 진실을 가려내고, 정당한 논쟁과 극단주의를 간파하고,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에서 문제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될 수 있다.¹⁴²⁾ 공동선언문에서는 시민사회에서 이러한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정규교육과정에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 그리고 관련 이슈에 대한 인식확대를 위해 관계자들 및 시민사회와 협력하는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외에도 서비스제공자의 의무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삭제 등 직접적인 행동을 취할 경우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기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서비스제공자는 이러한 조치와 관련된 기준 및 규칙에 대해 이용자들이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조치를 취할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즉각 통보하고 소명기회를 제공한 후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용자들이 원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위정보나 프로파간다에 대한 팩트 체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협조하는 등 가능한 기술적 해결

141)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OHCHR), Joint Declaration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Fake News”, Disinformation and Propaganda,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1287&LangID=E>(2017년 12월 11일 최종검색).

142) 로라 J. 구락(강수아 옮김), 『거미줄에 걸린 웹』, 2002, 들녘(오강탁·송경재·장우영·양희인, 앞의 논문, 605쪽에서 재인용).

책을 도모할 것을 서비스제공자의 몫으로 제시하고 있다.

결국, 유엔의 공동선언은 명확한 원칙없이 허위사실을 규제하는 것은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으며, 가짜뉴스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호견제가 가능한 미디어 다양성이 보장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 서비스제공자, 언론사, 시민사회, 학계의 공동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시민사회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중요한 축으로 제시하고 있다.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사이버상)
유권자 왜곡에 대한 법적 규제와 쟁점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사이버상) 유권자 왜곡에 대한 법적 규제와 쟁점

제1절 표현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와의 충돌

우리 헌법 제21조에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이 표현의 자유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자유도 예외 없이 보장하고 있다.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규제하게 된다면 기본권 침해가 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 또한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자유권을 제한하는 경우까지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기본권이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가짜뉴스가 표현의 자유로 유보 없이 보장되어야 하는 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가짜뉴스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만 가짜뉴스로 인하여 타인의 존엄을 해치거나, 기본권에 대한 침해를 수반한다면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도 마찬가지다. 원칙적인 자유이긴 하나 언제, 어디서, 어떤 형식으로든 보장되는 이른바 유보되지 않는 자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선거 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 가짜뉴스를 표현의 자유에서 보장의 예외를 인정할 경우, 선거운동의 자유가 침해를 문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과거 금권, 관권이 개입된 선거가 횡행했던 혼탁한 선거문화와 역사를 지닌 우리나라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정치·선거 문화 확립을 위해 이러한 금권, 관권이 개입된 부정한 선거를 방지하고자 이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을 두었다. 이 공직선거법의 목적은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자유'를 보장하는 선거운동의 자유 보장에 기초를 두고 있다.¹⁴³⁾ 여기서 선거운동의 자유란 현대 민주주의사회

143) 선거에서 사용되는 가짜뉴스는 목적이 뚜렷한 목적범이자 확산범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상 선거목적형 가짜뉴스라고 하는데, 이 선거목적형 가짜뉴스는 후보자나 후보자의 가족에 대

에서 공정성,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돈은 묶고, 말은 푼다’는 원칙하에 토론과 연설을 통한 선거운동의 자유는 비교적 폭넓게 보호하고 있다.¹⁴⁴⁾

다만, 허위사실 유포¹⁴⁵⁾, 흑색선전 등으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는 제재를 가하고 있다(공직선거법 제250). 즉 공직선거법 제250조에서 규제하고 있는 명예훼손은 표현의 자유 뿐 아니라 선거운동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애초부터 허위의 사실이라는 명백한 인식 내지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선거에

한 허위의 사실을 기사형식으로 제작·배포·유통되어진다. 때때로는 ‘~카더라’ 식으로 카카오톡이나 주로 일대일 사적인 대화를 통해 문자나 카카오톡 등 온라인 메신저를 통하여 살포되고 확산되어진다. 지난 20대 대선처럼 ‘~후보자 아들 공기업 채용비리’, ‘~ 후보자 차매설’ 등등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가짜뉴스다. 이러한 가짜뉴스는 물론 선거과정에서 많이 발생한다. 허위의 사실을 통해 상대 후보자를 비방, 모욕함으로써 유권자의 지지를 철회하거나 이를 통해 반사효과(선거에서는 지지)를 얻으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가짜뉴스는 후보자의 재산축적과정에서의 부정한 방식을 사용, 병역 비리, 채용 비리, 가족사, 학력위조 의혹, 논문 표절 의혹 등등 다양한 내용으로 만들어지고 때로는 특정 후보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당락을 좌우하기도 한다. 이러한 가짜뉴스는 기본적으로 명예훼손형 가짜뉴스에 해당하고 이는 표현의 자유 뿐 아니라 선거의 자유에서도 보호 되지 않는다.

144) 선거운동의 자유를 특히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와의 긴장 속에서 논의하는 김대근·권수진·윤지영·임석순,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방안 연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2015 참조.

145) 헌법재판소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형사 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을 위반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이 발단된 그 결정이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입법인면서 동시에 형벌조항에 해당하여 엄격한 의미의 명확성원칙을 적용해야 하고, 적용 결과 ‘공익’의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허위 사실의 표현’이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다만 보충의견에서는 ‘허위의 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으로 보아 비례성 심사를 한 바 있다(헌재 2010.12.28. 선고 2008헌바157등). 여기서 재판관 5인의 보충의견을 통해 헌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동시에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요건을 명시한 규정으로 볼 것이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의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표현이 어떤 내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서 애당초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고, ‘허위사실의 표현’이 일정한 경우 사회윤리 등에 반한다고 하여 전체적으로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서 배제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즉 허위의 표현도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고, 다만 제37조 제2항에 따라 일반적 제한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재의 논리를 일부러 목적성을 가지고 ‘허위의 사실’을 공익성이라는 형태를 차용해와서 유포하는 가짜뉴스에는 처음부터 적용되어 논의될 여지는 없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이 결정에서 의미는 ‘허위’의 개념을 명확히 밝힌 데 있다. 4인의 보충의견은 ‘허위’란 일반적으로 ‘바르지 못한 것’ 또는 ‘참이 아닌 것’을 말하고 그 안에서는 내용의 거짓이나 형식의 오류가 모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용어, 특히 형벌조항의 구성요건으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보다 구체적인 부연 내지 체계적 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반면, 2인의 반대의견에서는 ‘허위’라는 개념은 형사처벌 규정에서 비교적 쉽게 발견되는 것으로 형법의 허위유가증권작성죄(제216조), 허위공문서작성죄(제233조), 허위진단서작성죄(제227조) 등에서 ‘허위’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영향을 끼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언론보도의 공신력을 탈취해 생산·배포·확산하는 선거목적형 가짜뉴스의 경우는 애초부터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와 충돌 사항은 고려대상이 되지 못한다. 또한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충돌' 문제로 해결할 성격도 아니다.

선거에 있어서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나라들이 꽤 있다. 주로 선거문화가 발달되고, 표현의 자유가 폭 넓게 보장되며,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불리는 영국과 미국, 프랑스에서는 이 같은 부정행위를 형사적으로 제재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만큼이나 선거에서의 투명성, 공정성의 담보가 민주적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간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예컨대 미국은 연방선거운동법 제1001조를 통해서 사실관계의 위조 및 거짓진술을 금지하고 있고, 영국은 1983년 국민대표법 제106조에 의해서 후보자에 관한 허위진술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는 선거법 제197조를 통해서 새로운 위조물, 비방 또는 그 외의 기만적 술책으로 1인 또는 수인의 선거인들로 하여금 기권하도록 만든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만 5000유로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스페인도 선거법 제148조에 의거해 선거운동기관과 선거 직전 및 직후에 후보자 비방죄를 범할 경우 형법에 명시된 해당 구금형 중 가장 높은 장기형을 처하고 있다.¹⁴⁶⁾

제2절 관련 법적 규제와 제도 검토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는 이미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가짜뉴스의 생산자가 언론에 속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서로 다른 법의 규율을 받게 된다. 또 다른 한편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을 대상으로 개인적 법익과 사회적 법익으로 나누어지는 데, 국가의 안전과 기밀보호 등과 연관되는 국가적 법익이 가짜뉴스에서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 다시 말해 가짜뉴스로 인해 한 개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는 개인적 법익의

146) 한갑운·윤종민, 「가짜뉴스의 규율방법에 대한 법적 고찰」, 『과학기술과 법』 제8권 제1호, 2017.6, 72쪽.

침해에 해당하지만, 가짜뉴스로 인해 대중이 왜곡된 정보로 공적의사 결정과정에서 혼란을 겪었고 이로 인해 사실상 선택의 자유를 침해 받았다면 사회적 법익이 침해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짜뉴스를 규제하고 있는 현행 법률은 언론중재법과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등이다. 언론중재법은 가짜뉴스 생산자가 언론인 경우 개인적, 사회적 법익을 불문하고 침해하였을 경우 직접 적용을 받게 되고, 정보통신망법은 비언론인이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였을 경우 적용받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언론인과 비언론인을 불문하고, 개인적 법익과 사회적 법익의 구분 없이 사안에 따라 적용 받는다.¹⁴⁷⁾

우리나라에서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법률은 형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명예훼손죄(제307조), 업무방해죄(제314조)이다. 가짜뉴스에서는 대체적으로 제307조 명예훼손죄가 주로 문제되고 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허위의 내용을 전달하는 가짜뉴스로 인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허위사실 적시와 공연성, 타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저하로 인한 명예훼손 등 구성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¹⁴⁸⁾ 다만, 이때에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제310조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더하여 형법상 업무방해죄도 책임 범위에 따라 허위사실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 다만, 간과해서는 안되는 점은 이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는 온오프라인, 언론과 비언론을 막론하고 인격권 침해와 관련된 일반적 규율사항이라는 점이다.¹⁴⁹⁾

또 가짜뉴스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현행 법조항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2항 등에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은 '허위사실'의 적시, 유통을 통한 인격권 침해 행위나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

147) 황용석·권오성, 「가짜뉴스의 개념화와 규제수단에 관한 연구 -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언론과법』 제16권 제1호, 2017.4., 70-71쪽.

148) 박아란, 「Fake News(가짜뉴스) 개념과 대응방안」, 『한국언론학회 주최 세미나 발제문』, 2017. 2.14. 같은 의견.

149) 한갑운·윤종민, 「가짜뉴스의 규율방법에 대한 법적 고찰」, 『과학기술과 법』 제8권 제1호, 2017.6., 72쪽.

및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허위사실의 공표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률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을 침해하지 않은 가짜뉴스 혹은 법익을 침해한다고 해도 가짜뉴스에 대해 규제를 통한 대응은 적절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실상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무방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규정들은 각각의 입법목적에 따라 구성요건을 달리하고 있으며 소셜미디어를 통한 가짜뉴스의 유포가 그러한 구성요건에 해당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과거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하였으므로 가짜뉴스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2015년 개정된 바 있다.¹⁵⁰⁾ 이러한 이유로 현재로서는 가짜뉴스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규범은 미흡한 실정이다.¹⁵¹⁾ 그럼에도 가짜뉴스의 위법성을 규정하고 있고, 제한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과 공직선거법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1. 공직선거법에 따른 ‘가짜뉴스’ 제재 가능성 - 이른바 “찌라시”를 이용한 유권자 의사왜곡의 경우

가짜뉴스는 ‘선거’의 목적을 위해 태어났다고 할 정도로 선거와 운명을 같이 한다. 특히 최근에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총선거와 같은 규모가 큰 선거에서 주로 횡행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선거에 관한 범죄는 공직선거법을 통해 규제되는데, 가짜뉴스도 공직선거법 규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한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특히, 정치인 - 구체적으로는 공직선거 후보자 내지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 - 과 연관된 가짜뉴스의 경우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중첩하여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에 대한 공표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150) 현재 2010.12.2. 선고 2008헌바157결정

151) 장휘일, 「가짜뉴스의 심각성과 법적대응방안 - 한국의 19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제10권 제1호, 2017.06, 38쪽.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자·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 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보호 주체와 보호 내용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방식에 대해서도 열거 규정을 두어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이 보호 주체와 보호 내용, 방식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유형의 가짜뉴스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제251조는 후보자 비방죄를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당선되지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단 이 경우에도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예외 조항을 두었다. 이 단서 조항의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는 문구는 진실한 사실이어야 하고, 사생활 침해나 사적인 비방의 목적이 아닌 공익에 관한 때 즉 공익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때 처벌하지 않는 예외를 두어, 처음부터 사실 왜곡 및 비방의 목적을 가진 그리고 선한 공익이 아닌 사적 이익에 초점을 맞추어 제작·공표된 가짜뉴스는 이 단서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 공직선거법 제252조는 언론사와 언론인, 언론사와 언론인을 불문하고 누구든지 후보자에 대한 허위논평, 보도 금지를 어긴 경우 형사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2조 2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하였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¹⁵²⁾ 또 제1항에서는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에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또 인터넷 언론사를 통한 대통령선거에서 정당추천후보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의 제한 기준을 두었고(제82조의7), 방송·신문 등을 통한 광고시 일정한 요건을 두었다(제94조). 또 방송을 이용한 선거운동에도 일정한 기준과 제약을 두었고(제98조), 이를 위반 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제252조 3항). 동법 제252조 제4항은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이나 후보자 초청 대담 토론회와 같은 신문·방송 등 언론을 통한 선거 운동 제한 기준을 두었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사제재 규정을 두었다. 동법 제252조 제4항의 경우는 후보자 자신에 대한 규정이 아니고 후보자를 초청한 선거 방송에 관련된 방송사의 방송기준에 관한 규정으로서, 가짜뉴스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후보자가 초청 방송 토론회 및 연설에서 가짜뉴스를 만들어 공표한다거나, 가짜뉴스의 내용을 잘못

152) 잘못된 여론조사를 공표하거나 선거에 이용하여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정확한 데이터나 조사방식이 불분명한 '잘못된' 조사결과인 줄 알면서도 이를 선거운동에 적극 이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캠프 인사가 있었고, 특히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 소위 말하는 '깜깜이' 기간에 이러한 여론조사를 왜곡하여 가짜뉴스를 살포하는 선거운동이 난무한다.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캠프 인사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재외국민선거 출구조사 1위' 결과를 SNS를 통해 유포해 해당 선관위가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으나, 이미 퍼져나간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 왜곡의 목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유도하는 방식의 여론조사도 언론사별로 감행하고 있어, 이 또한 가짜뉴스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남일, 「홍준표 캠프 정책특보 등 '허위 여론조사 유포' 고발당해」, 『한겨레신문』 2017.05.01. 링크: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92972.html 최종검색일: 2017.12.12. ; 이재진, 「여론조사의 비밀, 언론과 여론조사업체는 '스폰관계」, 『미디어오늘』 2017.04.11., 링크: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6152> 최종검색일: 2017.12.12. ; 박상욱, 「국민의당, '재외선거 출구조사' 가짜뉴스 논란에도 유세 활용 논란」, 『중앙일보』 2017.05.04., 링크: <http://news.joins.com/article/21543217>, 최종검색일 : 2017.12.12.

된 정보인 줄 알면서도 이용하여 공표하는 경우는 부차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 경우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동법 제252조의 제4항이 적용될 여지는 적어진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제253조는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를 규정하여, 당선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하여 우편이나 전보 또는 전화 기타의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이 또한 가짜뉴스에 직접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라는 특수한 상황에 한해서이긴 하지만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도 규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서는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두고,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한 방송사에 대한 제재조치를 명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8조의3은 선거기간 동안 언론보도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추천하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신문, 잡지 등의 선거 기사를 대상으로 “공정성”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공정성 기준에 미달하는 기사에 대해서는 정정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경고결정문 게재, 주의사실 게재, 경고나 주의, 권고 등의 제재 조치를 부과하고 있다. 나아가 공직선거법 제8조의5는 방송, 신문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기사에 대해서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두어 인터넷언론사의 공정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96조 제2항 제1호는 언론에 대해서도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8조의8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심의 규정은 불공정 정보로 인한 왜곡된 선거 결과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성을 띤다. 이 법 조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들 조사를 심의하며, 여론조사의 주체가 정해진 공정성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시정명령·경고·정정보도문 게재 등의 제재 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른 제재 대상은 언론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가짜뉴스와 관련하여, 또한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된 조항은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이다. 이 조항과 관련하여 큰 논란이 되었던 사건은 소위 ‘정봉주 사건’이다. 지난 17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자가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되었음을 주장하는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캠프의 정봉주 의원의 일련의 발언이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대법원은 2011년 12월 22일 정봉주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¹⁵³⁾

이 법조항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서는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허위의 증명’이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은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 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하며, 그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이를 벌할 수 없다”고 하였다.¹⁵⁴⁾ 또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궁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증명할 수 있다. 이때에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증명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였다.¹⁵⁵⁾

이와 같은 법원의 해석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함에도 과도하게 법을 해석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 위축을 가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¹⁵⁶⁾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비판

153) 대법원 2011.12.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154) 대법원 2003.2.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7.13. 선고 2007도2879 판결 등 참조.

155) 대법원 2005.7.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도11743 판결 등 참조

156) 김종철,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적 검토 - 소위 ‘정봉주 사건’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22권 제1호, 연세대학교 법학

이 애초부터 왜곡된 정보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교란시킬 목적에서 고도로 지능적으로 제작·유포되는 가짜뉴스에 제251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의 경우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선거현실을 고려할 때 그 존재의의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직검증의 필요성을 확보하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를 굳건히 유지하기 위해 엄격하게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¹⁵⁷⁾는 주장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바로 선거에서 가짜뉴스를 생산하여 배포하는 경우에서 공직선거법 제251조 제2항의 존재의의를 찾을 수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유권자 의사왜곡 -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분석

공직선거법에서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게재한 경우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에서는 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선거운동기간 동안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혹은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비방을 금지하고 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할 때에 인터넷홈페이지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인터넷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법 제82조의4 제3항). 이 법조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인터넷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같은 법 제4항). 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해당 정보의 삭제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자는 당해 정보가 삭제되거나 그 취급이 거부·정지

연구원, 2012.3., 9-12쪽.

157) 김종철,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적 검토 - 소위 '정봉주 사건'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22권 제1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3., 12-16쪽.

또는 제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요청을 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같은 법 제5항).

이와 같은 규정은 사이버상에서 가짜뉴스(정확히는 ‘허위의 사실 혹은 정보’)의 급속한 유포에 대비하여 사법절차에 따른 처벌 외에도 일부 불법정보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법 및 공직선거법에 의한 임시조치 및 삭제요청 권한 등을 통하여 불법정보의 확산을 방지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2015조에 해당하는 허위사실공표죄 혹은 제251조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및 해당정보의 삭제요청 등을 통해 확산 방지대책을 규정하였고, 해당 정보 게시자에게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표현의 자유 보장과 불법 정보의 억제를 통하여 법익의 조화를 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요컨대, ‘가짜뉴스’의 외양을 갖추고 있는 비방·흑색선전물의 경우 즉 SNS 등 인터넷상에서 뉴스형태로 만들어 특정 후보자의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공표·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250조와 제251조의 적용을 받는다. 반면, ‘가짜뉴스’의 외양을 갖추고 있지만 비방·흑색선전에 이르지 못하는 게시물은 사이버상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혹은 반대는 상시적으로 허용되어 선거법상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다만, 그 내용이 모욕·명예훼손·업무방해에 해당되는 경우는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단, ‘가짜뉴스’ 전반에 대해 입법을 통한 규제는 미비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법정책적 해결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¹⁵⁸⁾

아울러 가짜뉴스는 사이버상에서 유포 및 확산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어, SNS 서비스제공업자와 뉴스포털 등에 대한 팩트체크를 의무화하는 규정 마련이 거론되고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 입법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¹⁵⁹⁾ 단,

15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9대 대통령선거 가짜뉴스 등 비방·흑색선전 대응 유관기관 대책회의」 회의자료, 2017.03.28. 이 회의안에 따르면이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가짜뉴스를 통한 비방·흑색선전과 언론보도와는 관계에서 자칫 가짜뉴스 대책이 언론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축하는 효과를 낳게 되는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을 크게 우려했던 흔적이 보인다.

159) 독일 연방정부는 소셜네트워크 운영자의 책임을 가중하는 법안(NetzDG)을 추진한 바 있다. 이른바 ‘페이스북 법’안이라고 하여 독일 내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법률이다. 골자는 소셜 미디어 서비스 회사가 가짜뉴스 등을 확인한 후 일정 시간 내에 삭제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00만 유로(약 602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입법안이다. 비록 연방의회가 표현의 자유 침해로 위헌적 법률이라는 이유를 들어 부결시키긴 했으나, 가짜뉴스에 대한 소셜네트워크 운영자에게 강력한 형사제재 조치를 취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법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조(적용범위) : 네트워크 법집행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플랫폼을 제공하여 대중이 이용하게 하는 통신미디어 서비스제공자에게 적용되는 법률로서, 서비스 제공자가 기사의 내용에 책임을 지는 일반 언론사는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제1항). 독일 국내 2백만 미만의 이용자를 보유한 콘텐츠는 형법에서 말하는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제3장). 여기서 독일 형법에서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위법한 게시물'이라 함은 독일형법(Strafgesetzbuch)에 규정된 내용 중 일부, 즉 위헌단체의 선전물 반포나 위헌단체의 표시 사용, 연방대통령 및 국가헌법기관에 대한 모욕, 간첩목적의 위조, 공공의 안전교란, 범죄-테러단체 조직, 국민선동 폭력물의 반포, 타인의 종교에 대한 모욕, 아동음란물의 취득 및 반포, 모욕 및 비방, 협박, 데이터 조작 등과 관련된 게시물이 포함된다. 제2조(보고서의 제출) : 보고서에는 SNS제공자가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 노력한 내용, 위법한 콘텐츠의 차단 기술 등을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제1항). 보고서의 내용은 SNS제공자가 플랫폼상의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 기울인 노력, 위법한 콘텐츠의 삭제와 차단에 대한 판단기준, 접수된 위법한 콘텐츠의 불만 건수, 불만 처리 업무 조직과 인적구성, 삭제나 차단이 행해진 불만건수, 불만접수에서 차단까지 걸린 시간(불만의 이유에 따라 '24시간 이내', '48시간 이내', '1주일 이내', '항수 시점' 등으로 분류됨), 그리고 불만신청인에게 결정에 대한 알림 등이다(제2항). 제3조(불만처리절차) : SNS제공자는 위법한 콘텐츠에 관한 불만처리를 위하여 효과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즉 위법한 콘텐츠에 관한 불만이 전달을 알아보기 쉽고, 직접적으로 접근가능하게 하고, 항상 이용가능하게 하는 절차를 제공해야 한다(제1항). SNS제공자는 불만을 즉시 인지하고 콘텐츠가 위법적인지, 제거하거나 접근을 차단할지 검토해야 한다. 명백히 위법한 콘텐츠는 불만이 접수된 후 24시간 이내에 제거하거나 접근을 차단하고, 모든 위법한 콘텐츠는 불만이 접수된 후 7일 이내에 제거하거나 접근을 막아야 한다(제2항). 제4조(과태료) : 고의 또는 과실로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절차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 경우, 조직상 미비점을 개선하지 않거나 국내 송달대리인을 지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질서위반에 해당(제1항)한다. 송달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만 유로를 부과하고, 그 밖에 불만처리 접수와 이행을 위해 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은 때에는 최대 500만 유로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제2항 제1문). 독일연방정부의 이와 같은 법 제정 움직임은 9월 총선에 대비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짜뉴스와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결단이었다. 주 타깃이 페이스북의 공유를 통해 유통되는 가짜뉴스에 대한 페이스북의 삭제 조치를 위한 법이어서 '페이스북법'으로 불리기까지 했다. 그동안 독일에서는 사실 확인이 가능한 거짓 주장은 명예훼손법(Ehrengesetz)을 통해 처벌이 가능했다. 그러나 SNS를 통해 확산되는 가짜뉴스를 처벌할 근거법률이 없었고, 오랜 논의와 연구를 통해 독일의 가짜뉴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나치 옹호 등 혐오표현물을 유통, 확산시키는- 를 처벌하는 법률안은 결국 SNS제공자가 보다 신속하고 포괄적으로 중요범죄를 처리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요범죄에 대한 감독 의무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독일 내에서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다는 비판과 함께 인터넷상의 정보를 SNS제공자가 사전 검열을 할 수 있어 위헌적 법률이라는 이유로 연방의회에서 부결 시켰다. 장휘일, 「가짜뉴스의 심삭성과 법적대응방안 -한국의 19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10권 제1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06.26. 이 논문에서는 독일의 이와 같은 법률안이 연방의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게재되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연방의회에서는 부결시켰으나 이 같은 사실이 반영되지 않았다. 비록 부결된 법률이나 NetzDG는 SNS이용자가 아닌 운영자만을 규율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향후 SNS운영자를 규율하는 입법정책을 시도할 경우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법안은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우리의 '정보통신망법'과 구별되는 부분이다. 우리의 '정보통신망법'과 상응하는 부분이 있어, 차이점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NetzDG와 '정보통신망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운영자의 조치와 관련된 내용이다. NetzDG는 운영자의 삭제-차단의무에 대해 이용자의 신고를 전제로 하고 있다. 반면 '정보통신망법'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삭제요청을 전제로 하나(동법 제44조의2 제2항), 청소년유해매체와 관련된 경우에는 이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 또한 운영자의 차단의무와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임시조치'라

우리 대법원은 인터넷 포털 운영자의 게시물 삭제·차단 의무를 인정하는 - 비록 민사상 불법행위 관련 책임을 물었지만 - 판결을 내놓기도 했다.¹⁶⁰⁾ 이는 ‘정보통신망법’을 직접 적용하여 인터넷 포털 운영자의 게시물 삭제·차단 의무에 대해 논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 판결의 다수의견에 따르면 SNS 운영자가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삭제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또한 기술적·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해자의 삭제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게시물에 대한 삭제의무를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정보통신망법’의 취지와 상충되고, 운영자에게 법령의 해석을 넘어 과중한 의무를 부과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아울러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도 운영자 및 관리자에게 사실상 모든 게시물에 대한 ‘검열의 의무’를 부과하게 된다고 비판하는 견해도 있다.¹⁶¹⁾

이러한 모든 입법정책적 논란을 차치하고,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권 등 권한에 근거하여 개방형 인터넷공간을 모니터링 하여 위법 게시물 내지 위법정보를 확인하고 확산을 방지하도록 대응하였다. 또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 혹은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비방·흑색선전 전담 TF팀을 두어 가짜뉴스 등

는 특수한 형태를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삭제요청이 있더라도 그 위법성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요건으로 하여 임시적으로 게시물을 차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동법 제44조의3), 피해자의 삭제요청과 무관한 이용자의 임의의 임시조치(동법 제44조의3)도 인정되고 있다. 즉 NetzDG의 경우 우선 이용자들이 게시물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것을 요구하고, 그에 대해 이의제기가 있을 때에만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NetzDG는 ‘24시간 이내 또는 7일 이내’에 그러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지체없이’ 삭제 및 임시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과 구별된다. NetzDG의 경우, 조치를 취해야 할 단기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소셜네트워크 운영자의 행위를 더욱 강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하여 ‘정보통신망법’에서 위의 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아무런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제재조치를 부과하지 않았던 것과는 달리, NetzDG에서는 사실상 운영자에게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는 상당한 액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운영자에게 의무를 강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신상현, 「위법한 명예훼손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의무에 관한 소셜네트워크 운영자의 형법적 책임 - NetzDG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학연구』 제20권 3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9.72-73쪽).

160) 대법원 2009.4.16. 선고 2008다53812.

161) 신상현, 「위법한 명예훼손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의무에 관한 소셜네트워크 운영자의 형법적 책임 - NetzDG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학연구』 제20권 3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9., 80-81쪽.

허위사실 유포에 대응하였다. 또 지난 해 미국 대선의 사례에서와 같이, 가짜뉴스를 제작하는 앱이나 홈페이지가 우리나라에도 존재하거나 생겨날 가능성을 염두하고 앱, 홈페이지 제작자에게 선거 관련 게시물에 대한 위법 가능성을 사전 안내해, 홈페이지 등에 이와 같은 안내문구가 게재되도록 하는 등의 협업을 통한 가짜뉴스 확산 방지책을 강구하였다. 네이버와 다음 그리고 온라인 메신저 카카오 등과 같은 포털사의 경우 앞서 언급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게시물 적발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삭제요청에 대하여 가능한 빠른 삭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정보가 확산되지 않도록 협업관계를 실시하였다. 그 밖에 포털사의 알고리즘을 통한 허위사실 검색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였다.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과 같은 외국계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사업자의 경우 국내법의 직접적용을 받지 않아 어려움이 따르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¹⁶²⁾ 가짜뉴스는 게시, 유포자에 대한 사법처리와는 별개로 온라인상에서 가짜뉴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대응한 게 우선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빠른 대응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계 사업자는 앞서 설명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삭제요청에 따라야 할 의무를 부과한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에 직접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한, 음란표현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불법표현으로 인정받은 표현물이 아닌 경우 국내법 규정을 이유로 해당 사업자가 본사를 설득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따르는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가장 우선하여 보호하고 있는 미국에 서버를 두거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더더욱 국내법을 근거로 들어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청이 관철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실정이다. 다만 이러한 사정에도 페이스북코리아와는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짜뉴스 삭제 및 블라인드 처리에 관한 업무협조 등을 통해 특정 영역에서만 블라인드 조치(regional blocking)가 가능토록 대안을 마련하였다. 사적이고 폐쇄적 성격을 지닌 SNS인 카카오톡과 라인 등은 사생활의 자유 침해와도 직결되어져 이를 통한 가짜뉴스 유포, 확산 방지에는 오픈형 SNS 보다는 더 곤란한 측면이 있다. 이 경우 가짜뉴스 피해 당사자들이나 신고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신고·제보한 경우에만 법 위반혐의에 따라 조사할 수밖에 없어 대응에 어려움이 따르

162) 허위사실을 이와 같은 SNS를 통해 게시 또는 유포한 자가 내국인인 경우는 당연히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다.

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실무상에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조사와 관련하여 현행 소송법상 인정되는 디지털 증거 확보를 위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비슷한 정보저장매체 압수가 공직선거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디지털포렌식에 의하여 스마트폰을 분석하려 해도 당사자의 임의제출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에 부딪치는 현실이다.¹⁶³⁾

이와 같은 현실에서 가짜뉴스는 주로 개인의 자유권 그중에서도 특히 헌법상 비교적 강하게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와 충돌을 우려해 자정 능력, 예방책, 그리고 각 영역에서 작동되고 있는 기존 법에 따라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점점 가짜뉴스의 폐해가 심각해지고 선거의 결과 까지도 좌지우지 할 만큼 그 현실적 위력이 커지고 있어, 자정능력이나 미온적인 사전 예방책 그리고 완전한 확산을 방지할 수 없는 사후 게시물 삭제 및 블라인드 조치만으로는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책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연장선상에서 가짜뉴스 전반을 규제하는 입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지만¹⁶⁴⁾ 입법으로 가짜뉴스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만약 그것이 SNS운영자에게 사전 검열에 가까운 강력한 의무를 강제하게 된다면 역시나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을 통해 SNS 운영자에게 허위·왜곡 게시물에 대한 삭제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 제재수단으로 행정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가 과도해 사실상 형벌적 성격이 강한 경우 - 강력한 강제수단을 두는 방식의 문제 해결은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163) 김수연, 「가짜뉴스, 어떻게 막을 것인가?」, 『가짜뉴스, 어떻게 막을 것인가?』 토론회 토론문, 2017.2.21., 20-22쪽.

164) 김수연, 「가짜뉴스, 어떻게 막을 것인가?」, 『가짜뉴스, 어떻게 막을 것인가?』 토론회 토론문, 2017.2.21., 22쪽.

제3절 피해자 구제방안

1. 해당 선거 무효 및 재선거 가능성

가짜뉴스가 선거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더라도 가짜뉴스만으로 해당 선거의 당선 무효 및 재선거는 사실상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최종적인 사법 판단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재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 또 선거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해위, 예를 들어 투개표의 부정을 비롯한 부정선거로 드러난 경우 그 선거를 무효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가짜뉴스 피해자를 위한 온전한 피해방안이 될 수 없을뿐더러 가짜뉴스가 직접적인 근거가 되어 선거 무효에 따른 재선거 실시는 아니다.

가짜뉴스를 생산, 확대 및 유포한 당사자가 선거에 당선된 이후 이러한 사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는 경우도 재선거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겠으나, 이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이라기보다는 선거의 투명성과 선거정의 실현 측면에 더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2. 선거관리위원회 및 후보자의 삭제요청 권한

정보통신망법 및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및 후보자가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더 큰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는 대안일 뿐 피해구제에 까지 이르지 못하는 못한다.

3. 당사자의 이의신청 권한

현행 공직선거법은 허위의 사실 게재로 인해 당선에 이르렀을 경우, 공소기간-선거의 경우 통상 6개월- 내에 고소, 고발 등의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당선이 무효 또는 취소가 가능하지만, 사법적 판단을 통한 결정이 내려지려면 통상 6개월의 공소시효를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그 직을 상실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선출직의 임기는 진행된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매우 희박하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사이버상
유권자 의사 왜곡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사이버상 유권자 의사 왜곡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제1절 미국의 대응 사례와 정책

1. 선거에 등장한 가짜뉴스 현황

가. 가짜뉴스 사례

미국 역사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가짜뉴스가 이용된 사례는 독립혁명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 건국의 주역이자 제2대 대통령을 역임했던 존 애덤스(John Adams)는 1769년 자신의 일기에 메사추세츠에서 영국 왕의 권위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허위의 과장된 이야기가 당시 신문을 통해 발간된 사례를 쓴 바 있다.¹⁶⁵⁾ 역사가인 팀 스탠리(Tim Stanley)에 따르면 치열했던 1828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앤드류 잭슨(Andrew Jackson) 선거본부에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존 퀸시 애덤스(John Quincy Adams)¹⁶⁶⁾가 러시아의 황제를 만족시키기 위해 미국 소녀를 (매춘부로) 제공하였다'는 소문을 퍼트렸으며, 이에 대해 애덤스는 잭슨의 모친이 노예와 잠자리를 같이 했고 아이도 낳았다는 소문을 퍼뜨리는 등 가짜뉴스를 이용한 정치적 공방이 있었다고 하였다.¹⁶⁷⁾ 이와 같은 가짜뉴스 공방이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선거에서 존 퀸시 애덤스는 앤드류 잭슨에게 패하였다.¹⁶⁸⁾

165) The Washington Post, "Fake news? That's a very old story.", 2016.11.25., https://www.washingtonpost.com/opinions/fake-news-thats-a-very-old-story/2016/11/25/c8b1f3d4-b330-11e6-8616-52b15787add0_story.html?utm_term=.91a42e641204, 2017.11.7. 최종방문.

166) 제2대 대통령인 존 애덤스의 아들로 제6대 대통령(1825~29)을 역임하였다.

167) Fortune, "Fake News Isn't a New Problem, and We're Better Equipped to Fight It Now", 2017.2.8., <http://fortune.com/2017/02/08/fake-news-history/>, 2017.11.7. 최종방문.

168) 1828년 대통령 선거는 미국 역사상 가장 '더러운' 선거로 평가되기도 한다 : ThoughtCo., "The

정부가 주도적으로 가짜뉴스를 활용한 경우도 있다. 냉전시대에 2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시각과 외교정책을 형성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산정권을 약화시키기 위한 막대한 양의 홍보 캠페인을 양산·보급하였으며, 이러한 작업은 중앙정보국(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A)의 은밀한 지휘 아래에서 모든 TV 네트워크와 라디오, 신문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한다.¹⁶⁹⁾

2016년도 대통령 선거에서는 가짜뉴스가 소셜네트워크 덕에 그 어느 때보다도 전 세계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버즈피드(BuzzFeed)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미국 대선기간 중 마지막 석 달동안 날조 사이트와 극단주의 블로그에서 퍼져나갔던 20개의 주요 거짓 선거뉴스가 페이스북(Facebook)에서 약 870만 회 가량 '좋아요' 등 리액션을 받거나 댓글이 달리거나 공유되었는데, 이는 주요 언론사 19곳에서 생산해 낸 20개의 주요 선거뉴스가 페이스북에서 리액션을 받거나 댓글이 달리거나 공유된 약 730만 회를 앞선 수치이다.¹⁷⁰⁾ 민주당 소속 정보위원회 부의장인 마크 워너(Mark Warner) 상원의원에 따르면 러시아에 있는 한 시설에서 작동하는 수천 개의 인터넷 트롤(internet troll)¹⁷¹⁾이 봇넷(botnet)이라고 불리는 컴퓨터를 점유하여 특정 분야에 대한 뉴스를 생성한 것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러시아가 힐러리 클린턴(Hillary Diane Rodham Clinton)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1,000 명 이상의 군 인력을 동원해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한 것이라고 한다.¹⁷²⁾ 동유럽에 위치한 마케도니아(Macedonia)의 소도시 벨레스(Veles)라는 곳에서는 친트럼프 성향의 악의적 가짜뉴스가 쏟아졌다고 한다. 이 도시에 거주하는 10대 후반의 청소년들이 미국 극우성향의 영터리 뉴스사이트나

Election of 1828 Was Marked By Dirty Tactics", 2016.7.31., <https://www.thoughtco.com/the-election-of-1828-1773861>, 2017.11.7. 최종방문.

169) The New York Times, "The C.I.A.'s Fake News Campaign", 2017.10.13., <https://www.nytimes.com/2017/10/13/opinion/cia-fake-news-russia.html>, 2017.11.7. 최종방문.

170) BuzzFeed News, "This Analysis Shows How Viral Fake Election News Stories Outperformed Real News On Facebook", 2016.11.17., https://www.buzzfeed.com/craigsilverman/viral-fake-election-news-outperformed-real-news-on-facebook?utm_term=.ywoPvzaAX#.nrw0xe972, 2017.11.7. 최종방문.

171) 소셜미디어에 비하나 거짓 메시지를 게시하는 사람 또는 집단을 일컫는다(PC Encyclopedia, <https://www.pcmag.com/encyclopedia/term/53181/trolling#>, 2017.11.7. 최종방문).

172) INDEPENDENT, "Russia hired 1,000 people to create anti-Clinton 'fake news' in key US states during election, Trump-Russia hearings leader reveals", 2017.3.30., <http://www.independent.co.uk/news/world/americas/us-politics/russian-trolls-hilary-clinton-fake-news-election-democrat-mark-warner-intelligence-committee-a7657641.html>, 2017.11.7. 최종방문.

SNS의 글들을 모아 짜깁기하여 가짜뉴스를 만들었다고 한다.¹⁷³⁾ “가디언”에 따르면 벨레스에서는 150개 이상의 가짜뉴스가 개설·운영되고 있었다고 한다.¹⁷⁴⁾ 목적은 대부분 돈이었으며, 유명인들에 대한 자극적인 가짜뉴스로 조회수와 공유빈도를 올리고 그에 따른 광고수익을 챙기는 것이었다.¹⁷⁵⁾

한편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후보시절 이른바 음모론을 종종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공화당 경선 라이벌이었던 테드 크루즈(Ted Cruz)의 부친이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에 연루되었으며,¹⁷⁶⁾ 기후변화는 날조된 것(hoax)이라고¹⁷⁷⁾ 주장하였다. 그 외에 “교황이 트럼프 지지선언을 하였다”, “힐러리가 ISIS에 무기를 팔았다”, “힐러리의 이메일 스캔들을 수사하던 FBI 요원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등의 가짜뉴스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도 페이스북을 통해 퍼져 나가면서 선거의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¹⁷⁸⁾는 평가가 나오기도 하였다.

나. 소셜네트워크에서 가짜뉴스 유통 경로

미국의 인구수 대비 소셜네트워크 계정 보유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인구수 대비 소셜네트워크 계정을 보유하고 있던 시민이 2008년에는 약 24% 정도에 불과하던 것이 점차 증가하여 2017년도에는 전체 시민 가운데 약 81%가 소셜네트워크 계정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¹⁷⁹⁾ 특히 18세에서 29세 사이의 사람들은 약 90% 정도가

173) BLOTTER, “[IT열쇳말] 가짜뉴스”, 2017.3.9., <http://www.blotter.net/archives/273350>, 2017.11.3. 최종방문.

174) The Guardian, “How Facebook powers money machines for obscure political 'news' sites”, 2016.8.24., <https://www.theguardian.com/technology/2016/aug/24/facebook-clickbait-political-news-sites-us-election-trump>, 2017.11.7. 최종방문.

175) NBC NEWS, “Fake News: How a Partying Macedonian Teen Earns Thousands Publishing Lies”, 2016.12.9., <https://www.nbcnews.com/news/world/fake-news-how-partying-macedonian-teen-earns-thousands-publishing-lies-n692451>, 2017.11.8. 최종방문.

176) The Telegraph, “Trump claims Ted Cruz's father was with Lee Harvey Oswald before JFK assassination”, 2016.5.3., <http://www.telegraph.co.uk/news/2016/05/03/trump-claims-ted-cruz-father-was-with-lee-harvey-oswald-before/>, 2017.11.7. 최종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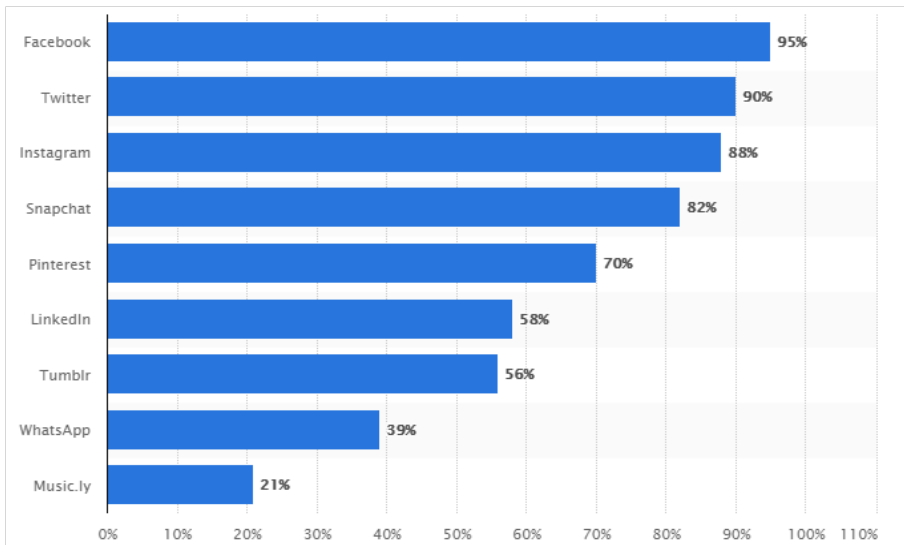
177) The Telegraph, “Donald Trump says climate change is a 'hoax' but tries to protect his Irish real-estate from its impact”, 2016.5.25., <http://www.telegraph.co.uk/news/2016/05/23/donald-trump-says-climate-change-is-a-hoax-but-tries-to-protect/>, 2017.11.7. 최종방문.

178) The Telegraph, “What is fake news? Its origins and how it grew in 2016”, 2017.3.16., <http://www.telegraph.co.uk/technology/0/fake-news-origins-grew-2016/>, 2017.11.7. 최종방문.

179) statista, “Percentage of U.S. population with a social media profile from 2008 to 2017”,

적어도 하나 이상의 소셜네트워크 계정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미국 인구의 약 95%는 실제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페이스북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아래 그림 5-1). 트위터(Twitter)와 인스타그램(Instagram)도 각각 90%와 88%의 인지도를 보이고 있어, 미국에서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인스타그램이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소셜네트워크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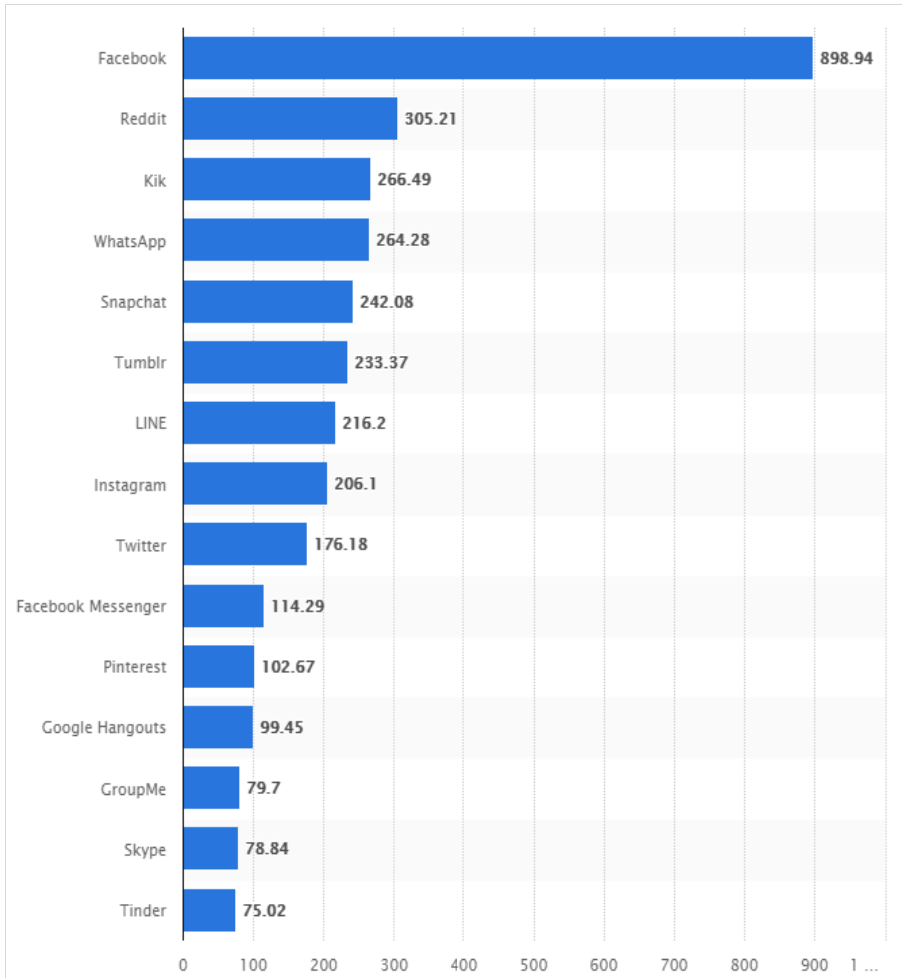
[그림 5-1] 미국의 소셜미디어 인지도¹⁸⁰⁾

위와 같은 각종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가운데 페이스북은 미국 내 방문자 수의 44%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¹⁸¹⁾ 그리고 2017년 7월 기준 모바일 소셜네트워크 사용시간에 관한 통계를 살펴보면(아래 그림 5-2), 페이스북이 7월 한달간 평균 898.94분으로, 다른 소셜미디어에 비해 현저히 오랜 시간동안 이용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273476/percentage-of-us-population-with-a-social-net-work-profile/>, 2017.11.10. 최종방문.

180) 출처 : statista, "Social media awareness in the United States as of February 2017",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410793/us-social-media-awareness/>, 2017.11.10. 최종방문.

181) statista, "Percentage of U.S. population with a social media profile from 2008 to 2017",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273476/percentage-of-us-population-with-a-social-net-work-profile/>, 2017.11.10. 최종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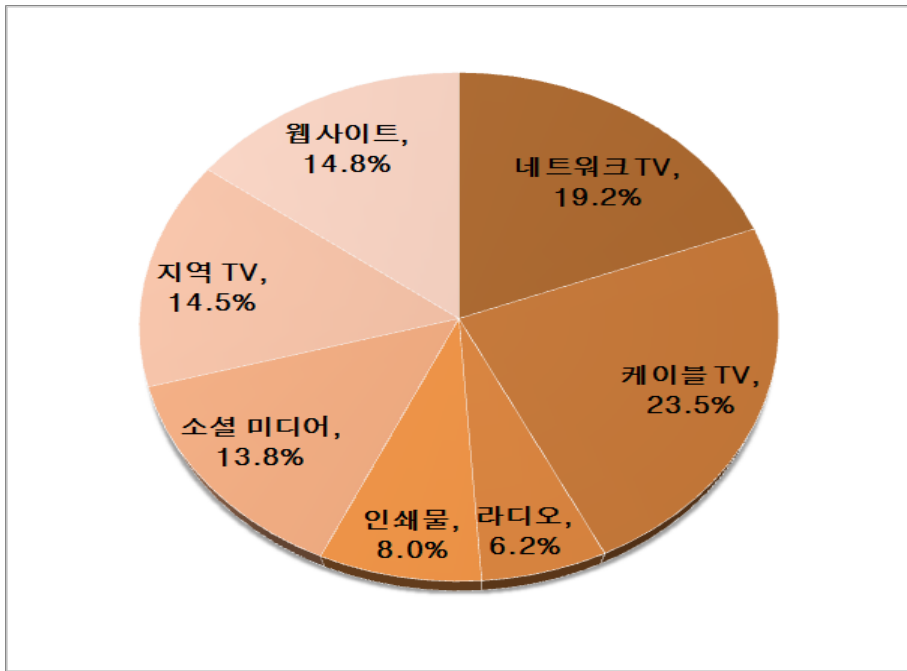
[그림 5-2] 월간 소셜 네트워킹 모바일 앱 사용시간(7월)¹⁸²⁾

요컨대 가짜뉴스는 통계적으로 페이스북을 통해 확산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주요 언론보도에서도 페이스북의 “공유하기(share)” 기능을 통한 유포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82) 출처 : statista, “Most popular mobile social networking apps in the United States as of July 2017, by user engagement (in minutes per month)”,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579358/most-popular-us-social-networking-apps-ranked-by-engagement/>, 2017.11.10. 최종방문.

다. 가짜뉴스의 영향력에 대한 평가

선거 직후에는 선거 국면에서 가짜뉴스의 실질적 영향력을 분석한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뉴욕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매튜 겐츠크프(Matthew Gentzkow)와 스탠포드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헌트 앨콧(Hunt Allcott)이 행한 연구에 따르면, 페이스북을 통해 침투된 가짜뉴스가 2016년도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통념은 잘못된 것이고, 가짜뉴스의 영향력은 상당히 과장된 것이라고 한다.¹⁸³⁾ 2016년 선거에서 시민들이 각 후보와 정당에 대한 정보를 취한 수단은 케이블 TV가 23.5%로 가장 많았고, 네트워크 TV가 19.2%, 웹사이트가 14.8%, 지역 TV가 14.5%로 그 뒤를 이었으며, 소셜 미디어의 점유율은 13.8%를 보였다(아래 그림 5-3 참조).



[그림 5-3] 2016년도 선거에 대한 정보획득 수단¹⁸⁴⁾

183) Quartz, “A new study kills the notion that fake news swung the US election to Trump”, 2017.1.29., <https://qz.com/896758/a-new-study-kills-the-notion-that-fake-news-swing-the-us-election-to-trump/>, 2017.11.7. 최종방문.

184) Hunt Allcott/Matthew Gentzkow, “Social Media and Fake News in the 2016 Election”,

웹브라우징 데이터와 설문응답, 실제 가짜뉴스 기사를 비교분석한 결과 트럼프 지지자이든, 클린턴 지지자이든 뉴스의 헤드라인에 대한 신뢰도는 약 2% 정도에 그쳤으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가장 많이 접했다는 응답자들의 신뢰도도 5%를 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¹⁸⁵⁾

2.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가.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의 역사 및 기본 태도

가짜뉴스에 대한 미국의회의 최초 대응은 1789년 “선동법(Sedition Act)”로 정부에 대한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당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정부에 반하는 견해를 막는다는 이유로 그 시행이 원활치 않았다.¹⁸⁶⁾ 미국 의회는 1차 세계대전 기간에 “적국의 승리를 도모할 목적으로 잘못된 보도나 정보를 의도적으로 전달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는데, 이에 대해 연방대법원의 브랜다이스(Brandeis) 판사와 홀즈(Holmes) 판사는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언론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는 부분의견을 개진하였다(Schaefer vs. United States, 1920).¹⁸⁷⁾ 요컨대 미국에서는 자유주의적 전통 하에 수정헌법 제1조¹⁸⁸⁾에 근거한 표현의 자유를 매우 중시해 왔으며, 이를 이유로 명예훼손죄를 인정하지 않거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폐기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¹⁸⁹⁾ 연방대법원이 2017년 6월 성범죄자들에게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한 노스캐롤라이나 주법이 언론의 자유를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31 No. 2, 2017, p. 224.

185) Hunt Allcott/Matthew Gentzkow, “Social Media and Fake News in the 2016 Elect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31 No. 2, 2017, p. 231.

186) The Washington Post, “Fake news and the law, from 1798 to now”, 2016.12.9.,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volokh-conspiracy/wp/2016/12/09/fake-news-and-the-law-from-1798-to-now/?utm_term=.4bf77140f789, 2017.11.8. 최종방문.

187) The Washington Post, “Fake news and the law, from 1798 to now”, 2016.12.9.,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volokh-conspiracy/wp/2016/12/09/fake-news-and-the-law-from-1798-to-now/?utm_term=.4bf77140f789, 2017.11.8. 최종방문.

188)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189) 한겨레21, “선진국에는 왜 명예훼손죄가 없나”, 제766호, 2009.6.25.,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5248.html, 2017.11.8. 최종방문.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한 것도 이와 같은 취지라 할 수 있다. 본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정부는 불법적인 발언을 억제하기 위해 항법적인 발언을 억눌러선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¹⁹⁰⁾ 한편 1964년 New York Times vs Sullivan 판결에서 대법원은 공무원이나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실질적인 악의(actual malice)가 없는 한, 그 내용이 허위인 경우라 할지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명시하였다.¹⁹¹⁾ 이에 따르면 정치인이나 공직자 등에 대한 가짜뉴스는 형사불법뿐만 아니라 민사불법조차 성립하지 않는다.

나. 각종 법적 규제

(1) 연방형법

미국은 범죄와 형사소송에 관한 기본 사항을 연방법(U.S.Code) 제18편에 규정하고 있다. 본 편은 전체 연방에 적용되는 형법 및 형사소송법이라 할 수 있다. 연방법 제18편 제21장은 모욕에 관한 죄(제401조, 제402조)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들 규정은 법원의 권위 또는 법원의 사무와 관련한 모욕행위를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욕적 내용의 가짜뉴스를 처벌할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제29장에는 선거와 정치활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투표방해 행위나 부당한 기부금 모금, 매관매직 등의 행위를 처벌하고 있을 뿐, 유권자의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본 장의 규제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2) 미국연방규정집

방송분야는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가짜뉴스를 규제하고자 하는 영역이다. 이른바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방송날조규정(broadcast hoax regulation)에 따르면 방송국을 인가·승인 받은 자는 범죄나 재난에 대한 정보가 거짓임을 알고 있는 경우, 그 정보를 방송하는 것이 본질적인 공중에 대한 해악을

190) ZDNet Korea, “성범죄자 폐북 금지, 언론자유 침해일까”, 2017.6.20., http://www.zdnet.co.kr/column/column_view.asp?article_id=20170620160956, 2017.11.8. 최종방문.

191) 이동훈, “미국에서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법리 - 연방 대법원판례에서 확립된 actual malice 를 중심으로 -”, 아태공법연구 제6권, 1999, 154쪽.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경우, 그 정보를 방송하는 것이 실제로 본질적인 공중에 대한 해악을 직접 야기한 경우에는 그 거짓 정보를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⁹²⁾ 다만 이 규정은 수정헌법 제1조를 고려해 매우 신중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한다.¹⁹³⁾ 여기에서 공중에 대한 해악(public harm)은 즉시 발생했을 것을 요하며, 일반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 재산을 실제로 해하였거나 법집행기관 또는 보건·안전당국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모처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강력한 허리케인이 상륙했다는 가짜뉴스를 방송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개인의 건강이나 안전, 재산에 해악이 발생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특정 정치인이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가짜뉴스를 송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중의 해악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선거와 관련한 가짜뉴스에 본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3) 캘리포니아 주의 정치적 사이버사기 방지법

최근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하원의 사생활 및 소비자보호 위원회(Committee on Privacy and Consumer Affairs) 주도로 가짜뉴스를 제한하기 위해 선거법을 개정하였다. 일명 정치적 사이버사기 방지법(The California Political Cyberfraud Abatement Act)이라고도 하며,¹⁹⁴⁾ 캘리포니아 주 선거법(Elections Code) 제18320조 수정을 그 내용으로 하였다. 그에 따르면 오도 또는 기만하거나 속일 의도로 행한 정치적 사이버사기 행위는 불법(unlawful)이다. 여기에서 정치적 사기란 인식과 의도를 가지고 ① 정치적 웹사이트(Political Web site)에 대한 접속을 거부하는 행위와 ② 정치적 웹사이트를 위한 도메인 이름을 등록할 기회를 거부하는 행위, ③ 정치적 웹사이트가 실제 포스팅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포스팅한 것으로 믿게끔 하는 행위, ④ 웹사이트를 통해 법안이나 공직후보자의 반대 또는 지지의 견해를 사실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

192) 47 CFR 73.1217 - Broadcast hoaxes.

193) The Washington Post, "Fake news and the law, from 1798 to now", 2016.12.9.,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volokh-conspiracy/wp/2016/12/09/fake-news-and-the-law-from-1798-to-now/?utm_term=.4bf77140f789, 2017.11.8. 최종방문.

194) AB-1104 The California Political Cyberfraud Abatement Act.

로 믿게끔 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㉔ 고의로 유사한 도메인 이름이나 메타태그, 기타 다른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웹사이트를 정치적 웹사이트로 전환(diverting)하거나 리다이렉트(redirecting) 시키는 행위와 ㉕ 고의로 프레임이나 하이퍼링크, 마우스트래핑, 스크린 팝업, 기타 다른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정치적 웹사이트에서 나가는 것을 막거나 거부하는 행위, ㉖ 다른 정치적 웹사이트의 도메인 이름과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는 행위, ㉗ 고의로 도메인 이름을 등록·보유함으로써 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함으로써 고의로 정치적 웹사이트의 도메인 이름 사용을 막는 행위도 여기에 포함된다. 정치적 웹사이트란 법안이나 공직후보자의 반대 또는 지지를 촉구하거나 촉구하는 것으로 보이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말한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 선거법 제18323조는 본 장(제18320조부터 제18323조)에 따라 제기된 소송의 관할권은 민사소송법(Code of Civil Procedure) 제410.10조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위와 같은 행위는 형사불법이 아닌 민사불법으로 처리된다.

이 법안은 2017년 4월 19일 의회에 제안되어 5월 31일에 통과되었고, 9월 11일 상원을 통과하였으며, 10월 12일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본 법안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미국 건국 이후 줄곧 가장 숭고한 가치로 여겨져 왔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으며, 다소 과장된 표현과 풍자, 패러디마저도 기소하는 등 정치적으로 악용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는 등의 비판을 받고 있다.¹⁹⁵⁾

3. 인터넷 사업자 등의 자체적 대응방안

미국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세계 최대의 글로벌 네트워크 사업자로 자리매김한 페이스북과 구글(Google)의 가짜뉴스에 대한 자체적 대응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페이스북

페이스북은 원론적으로 가짜뉴스가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으나, 계속된 논란으로 2016년도 12월 잘못된 정보를 제한하기 위한 몇 가지

195)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California Bill To Ban "Fake News" Would Be Disastrous for Political Speech", 2017.3.27., <https://www.eff.org/vi/deeplinks/2017/03/california-bill-ban-fake-news-would-be-disastrous-political-speech>, 2017.11.8. 최종방문.

실험을 시작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18억 명에 이르는 회원이 보다 쉽게 가짜뉴스를 신고하고, 상당한 수의 신고를 받은 기사에 대해서는 Snopes, PolitiFact, The Associated Press, FactCheck.org, ABC News 등 외부의 팩트체크 단체 및 트위터와 구글 및 뉴욕 타임즈와 CNN 등 주요 언론사들로 구성된 연합단체(The First Draft Coalition)으로 하여금 팩트체크를 하도록 하여,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그 기사에 “다툼의 여지가 있음(disputed)”이라는 표시하는 것이다.¹⁹⁶⁾ 또한 가짜뉴스를 제공하는 광고주가 수익을 내지 못하도록 광고정책도 변경하였다.

한편 페이스북은 2017년 4월 27일 “정보조작과 페이스북(Information Operations and Facebook)”이라는 문서를 통해 외부 팩트체크 단체의 협조를 얻는 것 외에, 정보조작에 대한 페이스북의 자체적 대응전략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는 정보조작을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부류로 구분하고 있다.¹⁹⁷⁾

- 목표정보수집(Targeted Data Collection)
- 콘텐츠 생성(Contents Creation)
- 허위사실 증폭(False Amplification)

목표정보수집은 정보수집(information gathering)이나 정찰(reconnaissance), 단체나 개인에 대한 사이버 조작, 스피어피싱(spearphishing)¹⁹⁸⁾이나 계정탈취, 정보절도 등의 행위를 말하며, 콘텐츠 생성은 언론에 기사뿌리기, 밈(meme)¹⁹⁹⁾과 기사생성,

196) The New York Times, “Facebook Mounts Effort to Limit Tide of Fake News”, 2016.12.15., <https://www.nytimes.com/2016/12/15/technology/facebook-fake-news.html>, 2017.11.9. 최종방문.

197) Jen Weedon/William Nuland/Alex Stamos, Information Operations and Facebook, April 27, 2017, Version 1.0., p. 6(내려받기 링크 : <https://fbnewsroomus.files.wordpress.com/2017/04/facebook-and-information-operations-v1.pdf>).

198) 특정한 개인들이나 회사를 대상으로 한 피싱(phishing) 공격을 말하며, 공격자가 사전에 공격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공격 대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피싱 공격을 수행하는 형태이다(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434661&cid=40942&categoryId=32828>, 2017.11.9. 최종방문).

199) 유전자처럼 개체의 기억에 저장되거나 다른 개체의 기억으로 복제될 수 있는 비유전적 문화요소 또는 문화의 전달단위로 영국의 생물학자 도킨스의 저서 《이기적 유전자 The Selfish Gene》에서 소개된 용어이다. 문화의 전달에도 유전자처럼 복제역할을 하는 중간 매개물이 필요한데 이 역할을 하는 정보의 단위·양식·유형·요소가 밈이다. 모든 문화현상들이 밈의 범위 안에 들

가짜계정이나 가짜인격 개설 등의 행위를 말한다. 허위사실 증폭은 가짜계정을 이용해 밈과 콘텐츠를 유포하는 행위와 더불어 선동집단(astroturfing²⁰⁰ group) 생성, 스팸성 댓글 작성행위 등을 포함한다. 이 가운데 가짜뉴스와 관련된 부류는 콘텐츠 생성과 허위사실 증폭인데, 페이스북은 이와 관련하여 우선 가짜계정 생성 방지와 제거를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²⁰¹ 기술적 진보로 이제는 자동계정생성 알고리즘 외에 수동으로 생성된 가짜계정도 차단할 수 있으며, 머신 러닝(machine learning)을 포함한 새로운 분석기술을 사용하여 보다 많은 유형의 남용사례를 찾아내고 차단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동일한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생성 콘텐츠의 이상적 볼륨 감지 등 계정의 활동패턴을 파악하여 그 계정이 가짜계정인지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기술개선을 이루어 냈다고 한다.

나. 구글

구글 또한 가짜뉴스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팩트체크 도구를 도입하였다. 다만 구글 검색엔진이 스스로 팩트체크를 하는 것이 아니라, PolitiFact와 Snopes와 같은 제3자에 의한 팩트체크 결과를 검색결과와 함께 보여주는 방법을 취하였다. 즉 특정 뉴스에 대한 검색을 시도하면, 그 뉴스 자체가 “가짜”라는 판정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팩트체크 단체가 이 기사를 가짜인 것으로 판정했다는 정도만 보여줌으로써, 이용자 스스로가 보다 많은 정보에 입각해 해당 뉴스의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²⁰²

한편 뉴스 게시자가 여기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특정 페이지에 Schema.org ClaimReview 마크업(markup)²⁰³을 사용하고 있거나, 듀크 대학교에서 개발한 Share the

어가며 한 사람의 선행 혹은 악행이 여러 명에게 전달되어 영향을 미치는 것도 밈의 한 예이다(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24073&cid=40942&categoryId=31611>, 2017.11.9. 최종방문).

200) 가짜 일반인(fake grassroots)을 모집하고 일정 대가를 지급하면서 이들로 하여금 특정 제품이나 정책, 이벤트에 대한 호의적 발언을 하도록 하는 일종의 광고전략(Collins English Dictionary 30th Anniversary Edition, 2009).

201) Jen Weedon/William Nuland/Alex Stamos, Information Operations and Facebook, April 27, 2017, Version 1.0., p. 10.

202) CNBC, “Google expands ‘Fact Check’ tool to flag up fake news in search results”, 2017.4.7., <https://www.cnbc.com/2017/04/07/google-fake-news-fact-check.html>, 2017.11.9. 최종방문.

203) 문서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문서에 추가되는 정보. 마크업 정보는 문서의 논리적 구성이나

Facts 위젯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팩트체크의 결과를 함께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판단 역시 사용자의 자발적 의사에 맡겨두고 있다. 또한 콘텐츠는 모든 데이터 마크업에 적용되는 일반정책과 팩트체크를 위한 구글 뉴스 퍼블리셔 기준(Google News Publisher criteria for fact checks), 구글 뉴스 일반 가이드라인(Google News General Guidelines)에 명시된 책임과 투명성, 가독성, 적절성 등에 대한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 구글은 재량에 따라 해당 사이트의 마크업을 무시할 수 있다.²⁰⁴⁾

제2절 영국의 대응 사례와 정책

1. 선거에 등장한 가짜뉴스 현황

가. 가짜뉴스 사례

영국에서 선거와 관련한 가짜뉴스는 영국 내 선거 또는 정치와 관련한 내용보다는 미국과 프랑스의 대선에서 이슈로 떠오른 가짜뉴스에 대한 보도가 주를 이루고 있다. 사이버 시큐리티(Cyber Security) 연구원인 모니카 카민스카(Monica Kaminska)는 영국에서 유포된 가짜뉴스는 미국의 경우보다 훨씬 발견하기 어렵다고 하였다.²⁰⁵⁾ 오히려 정치인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뉴스나 자신들이 좋아하지 않는 뉴스를 “가짜뉴스”라 호도하는 사례가 발견되었다고 하였다.²⁰⁶⁾

다만 2016년 세계적 이슈였던 브렉시트(Brexit)와 관련해서는 브렉시트 투표에 일정

체제와 같은 문서의 포맷을 지정하거나, 문서 내용의 찾아보기 또는 찾아보기 작업(indexing) 방법을 지정하거나, 문서 내용 중의 요소와 같은 문서 또는 다른 문서 중의 다른 요소와의 연결(link)을 지정한다(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844526&cid=42346&categoryId=42346>, 2017.11.9. 최종방문).

204) Google, “Fact Check now available in Google Search and News around the world”, 2017.4.7., <https://www.blog.google/products/search/fact-check-now-available-google-search-and-news-around-world/>, 2017.11.9. 최종방문.

205) CNET, “Fake news, shoo! The UK’s general election doesn’t want you”, 2017.6.7., <https://www.cnet.com/news/fake-news-whats-the-story-at-the-uk-general-election/>, 2017.11.10. 최종방문.

206) Huffingtonpost UK, “UK Politicians Call 'Fake News' On Stories They Don't Like, Aping Donald Trump”, 2017.3.11., http://www.huffingtonpost.co.uk/entry/british-politicians-fake-news_uk_58b60832e4b0a8a9b7870126, 2017.11.10. 최종방문.

한 영향을 미치고자 했던 가짜뉴스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영국의 노동당 대표 제레미 코빈(Jeremy Corbyn)은 2017년 5월 15일 영국 왕립간호학회 연설에서,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유럽연합간의 무역회담에 앞서 유럽연합에 탈퇴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동의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내외를 불문하고 장기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법적 의무는 분명히 준수되어야 하며, 우리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답변한 바 있는데, 런던에서 발행되는 지역 무료 일간지 “이브닝 스탠다드(Evening Standard)”가 이 발언을 근거로 “노동당 대표 제레미 코빈이 총리 선출시 브렉시트 ‘위자료’로 850억 파운드를 납부할 수도 있음을 암시”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²⁰⁷⁾ 실제로 이른바 브렉스트 위자료는 1000억 유로(약 850억 파운드)가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런데 이를 토대로 YourBrexit.co.uk라는 언뜻 뉴스 사이트로 보이는 웹사이트에서 “코빈이 노동당 집권시 브렉시트 비용으로 920억 파운드 납부의사 확인(Corbyn confirms a Labour government would pay £92bn Brexit bill in full)”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시하였다(아래 그림 5-4 참조).



[그림 5-4] Your Brexit의 가짜뉴스 화면²⁰⁸⁾

207) Evening Standard, “Labour leader Jeremy Corbyn hints he would pay £85bn Brexit 'divorce bill' if PM”, 2017.5.15., <https://www.standard.co.uk/news/politics/labour-leader-jeremy-corbyn-hints-he-would-pay-85bn-brexit-divorce-bill-if-pm-a3539581.html>, 2017.11.10. 최종방문.

이는 이브닝 스탠다드의 “시사(hint)”를 “확인(confirm)”으로 바꾸고, 강조의 의미로 “확인”을 대문자로 표기하는 등 기사를 매우 과장하고 왜곡한 것이다. 기사작성자의 이름도 가짜뉴스라는 혐의를 증폭시켰다. 월터 화이트(Walter White)는 미국 TV 드라마 브레이킹 배드(Breaking Bad) 등장인물의 이름이었기 때문이다. 이 기사는 가짜뉴스 감독기관에 의해 적발되어 삭제되었는데, 삭제 전까지 총 12,000회 가량 공유되었으며, 그 가운데 페이스북을 통해 공유된 횟수는 약 4,000건으로 조사되었다.²⁰⁹⁾

나. 가짜뉴스의 영향력에 대한 평가

2017년도 6월 총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었으나, “총선거(general election)”라는 키워드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가장 많이 공유된 기사 상위 100개 가운데 가짜뉴스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분석되었다.²¹⁰⁾ 2009년에 설립된 영국의 독립적 팩트체크 기관 Full Fact의 수장인 윌 모이(Will Moy)는 영국 총선 직전에 조사를 통해 확인해 본 바, 총선에서 가짜뉴스의 영향력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하였다.²¹¹⁾

한편 옥스퍼드 대학교의 사이버 시큐리티 연구소에서는 2017년도 총선거기간 동안 트위터를 통해 시민들이 무엇을 공유하였는지, 그리고 가짜뉴스와 봇(Bots)의 소셜네트워크 점유율을 조사·분석하였다. 그에 따르면 유권자들이 트위터를 통해 공유한 콘텐츠는 주로 The Guardian이나 BBC와 같은 주요 언론사의 전문적 뉴스와 정보가 총 1,363,000건의 샘플 가운데 약 30.3%로 가장 높았다.²¹²⁾ 특히 이 조사는 봇으로

208) 출처 : The Guardian, “Truth seekers: inside the UK election's fake news war room”, 2017.5.19., <https://www.theguardian.com/politics/2017/may/19/truth-seekers-inside-the-uk-elections-fake-news-war-room>, 2017.11.10. 최종방문.

209) The Guardian, “Truth seekers: inside the UK election's fake news war room”, 2017.5.19., <https://www.theguardian.com/politics/2017/may/19/truth-seekers-inside-the-uk-elections-fake-news-war-room>, 2017.11.10. 최종방문.

210) PressGazette, “Most-shared general election stories on social media overwhelmingly anti-Tory with no sign yet of fake news”, 2017.5.18., <http://www.pressgazette.co.uk/most-shared-general-election-stories-on-social-media-overwhelmingly-anti-tory-with-no-sign-yet-of-fake-news/>, 2017.11.10. 최종방문.

211) PressGazette, “Fake news not yet an issue in general election campaign, says head of fact-checking charity”, 2017.5.23., <http://www.pressgazette.co.uk/fake-news-not-yet-an-issue-in-general-election-campaign-says-head-of-fact-checking-charity/>, 2017.11.10. 최종방문.

212) John D. Gallacher et al., “Junk News and Bots during the 2017 UK General Election: What Are UK Voters Sharing Over Twitter?”, 2017.5.31., p. 4의 표 참조(내려받기 링크 : <http://compromop.ox.ac.uk/wp-content/uploads/sites/89/2017/06/Junk-News-and-Bots-during-the>

의심되는 자동화된 트위터(tweet)를 분석하였는데, 보수당과 노동당, 자유민주당 영국 독립당의 자동화 수준은 대체로 유사했으나, 노동당에 관한 트위터를 하는 자동화된 계정은 콘텐츠를 확산시키는 데에 있어 다른 정당에 대한 트위터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전반적으로 자동화된 계정은 총선에 관해 공유된 전체 콘텐츠 가운데 12.3% 정도로 상대적으로 적은 콘텐츠를 생성하였다.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 미국과 비교해 볼 때 영국의 트위터 이용자는 미국 이용자들에 비해서는 보다 양질의 정보를 공유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프랑스와 독일 이용자들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의 뉴스와 정보를 공유하는 추세를 보였다.²¹³⁾

한편 2017년 6월 20일에는 입소스 모리(Ipsos MORI)라는 조사기관이 2017년도 총선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18세~25세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54%로 2015년도 선거에 비해 상당히 증가하였다고 한다.²¹⁴⁾ 이에 따르면, 2017년 총선에서는 비록 가짜뉴스가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미약했다 할지라도, 소셜미디어 활용도가 높은 젊은 유권자들 사이에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확산될 위험은 여전히 있고, 이로 인해 앞으로의 선거에 악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한다.²¹⁵⁾

2.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응방안

가. 명예훼손법(Defamation Act 2013)

(1) 보통법상 명예훼손죄 폐지와 명예훼손법 개정

영국의 보통법(Common Law) 상 명예훼손죄는 크게 신성모독적 명예훼손(blasphemous libel)과 외설적 명예훼손(obscene libel), 선동적 명예훼손(seditious libel), 사인 간 명예훼손(criminal libel, 또는 defamatory libel)으로 분류되어 왔다.²¹⁶⁾ 이 가운데 사인

-2017-UK-General-Election.pdf).

213) John D. Gallacher et al., "Junk News and Bots during the 2017 UK General Election: What Are UK Voters Sharing Over Twitter?", 2017.5.31., p. 5.

214) Ipsos MORI, "How Britain voted in the 2017 election", 2017.6.20., https://www.ipsos.com/ipsos-mori/en-uk/how-britain-voted-2017-election?language_content_entity=en-uk, 2017.11.10. 최종방문.

215) Equaliteach, "First Month Reflections: UK General Election, Fake News and Social Media", 2017.7.4., <http://www.equaliteach.co.uk/reflections-fake-news-social-media/>, 2017.11.10. 최종방문.

간 명예훼손은 우리 법제에서 통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명예훼손과 유사하며, 위의 다른 네 형태의 명예훼손에 대한 보충적 구성요건이라 할 수 있다. 외설적 명예훼손은 1959년과 1964년 음란출판물법(Obscene Publications Acts)에 의해 보통법에서 사라지고 단지 성문법으로만 존속하고 있으며, 신성모독적 명예훼손은 2008년 형사사법과 이민에 관한 법률(Criminal Justice and Immigration Act 2008)로 보통법과 성문법에서 모두 폐지되었고, 2010년에는 검시관 및 사법법(Coroners and Justice Act 2009)에 의해 외설적 명예훼손과 선동적 명예훼손, 사인 간 명예훼손을 보통법과 성문법에서 모두 삭제하였다.²¹⁷⁾

특히 가짜뉴스의 처벌근거가 될 가능성이 있던 구성요건은 선동적 명예훼손과 사인 간 명예훼손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2009년까지 약 400년간 명예훼손죄로 판례집에 실린 사건이 119건에 불과하며, 주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위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용되어왔던 것이라고 한다.²¹⁸⁾ 다만 그간 명예훼손적 표현이 문서나 기타 지속성을 갖는 형태로 적시된 경우에만 형사처벌하였고, 말이나 몸짓 등 휘발성 형태로 이루어진 명예훼손은 처벌하지 않아왔다.²¹⁹⁾ 자유로운 토론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비판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0년 1월 1일부터 모든 유형의 명예훼손죄를 폐지하였다. 선동적 명예훼손죄는 종래 왕과 의회, 국가체제에 대한 비난을 강압적으로 다스리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언론과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비난을 억제하는 정책은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는 구시대적 유물이므로 폐지하며, 사인 간 명예훼손도 결투나 보복을 방지한다는 애초의 목적이 더 이상의 무의미하며, 형량도 지나치게 무겁고 표현의 자유에 심각하게 위축시키므로 더 이상 존속시킬 이유가 없다는 이유였다.²²⁰⁾ 이와 같은 명예훼손죄 폐지와 더불어 2013년도에는 명예훼손법을 개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언론

216) 정태호·김훈집, 「영국의 명예훼손죄 폐지와 그 교훈」, 경희법학 제50권 제1호, 2015, 5쪽.

217) Legislation.gov.uk,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09/25/section/73>, 2017.11.12. 최종방문.

218) Matthew Collins, Collins On Defamation ix, 2014, pp. 493, 498-499(허순철, 「영국의 명예훼손법 개정과 그 의미」, 공법학연구 제16권 제4호, 2015, 128-129쪽 재인용).

219) 정태호·김훈집, 「영국의 명예훼손죄 폐지와 그 교훈」, 경희법학 제50권 제1호, 2015, 14쪽.

220) House of Lords, Parliamentary Debates, House of Lords Hansard, 9 July 2009, Column 884 6-851, <https://publications.parliament.uk/pa/ld200809/ldhansrd/text/90709-0013.htm#09070996000340>, 2017.11.13. 최종방문(본 기술내용의 출처는 정태호·김훈집, 「영국의 명예훼손죄 폐지와 그 교훈」, 경희법학 제50권 제1호, 2015, 29-30쪽).

의 자유를 보다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명예훼손법의 주요 내용

2013년에 개정된 명예훼손법은 총 1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명예훼손 죄 폐지 취지에 맞추어 민사상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중대한 해악

우선 본 법률은 명예훼손의 조건으로 “중대한 해악(serious harm)” 요하고 있다. 제1조 제1항은 “진술이 원고의 명예에 중대한 해악을 야기했거나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진술을 출판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신적 고통(distress)이나 불쾌감(hurt feelings)만으로는 중대한 해악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²²¹⁾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중대한 해악”의 요건은 더욱 엄격하게 적용된다. 같은 조 제2항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명예에 대한 해악은 그 단체에 심각한 재정적 손실을 야기하였거나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중대한 해악이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일반적 면책사유 : 본질적 진실과 정직한 의견

피고가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는 진술에 담긴 비방이 본질적으로 진실(substantially true)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으나, 그러한 비방내용이 본질적으로 진실이라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해야 한다(제2조 제1항). 그리고 하나 이상의 비방이 본질적으로 진실임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진실임이 입증된 비방을 참작하여, 본질적으로 진실임이 입증되지 않은 비방이 원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는 경우에도 면책사유가 적용된다(동조 제3항). 명예훼손이라고 주장되는 진술

221) James Price QC/Felicity McMahan(ed.), Blackstone's Guide to the Defamation Act 2013, 2013, 20쪽(허순철, 「영국의 명예훼손법 개정과 그 의미」, 공법학연구 제16권 제4호, 2015, 133쪽 재인용).

이 둘 이상의 비방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같다(같은 조 제2항).

본 법률은 “본질적 진실” 외에 “정직한 의견(honest opinion)”도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공익적 사항에 대해 논평한 경우에는 면책된다는 보통법상 “공정한 논평(fair comment)의 원칙”을 다소 완화한 것으로, 반드시 공익적 사안에 대한 의견이 아닌 경우에도 면책사유로 인용될 수 있다.²²²⁾ 그 요건으로는 우선 진술이 의견표명이어야 하며, 그러한 진술이 일반적 또는 구체적 용어로 의견의 근거를 표시한 것이어야 한다(제3조 제2항, 제3항). 그리고 정직한 사람이라면 그러한 진술이 공표될 당시에 존재했던 사실을 근거로 의견을 표명했을 것으로 인정되거나, 그러한 진술 이전에 공표된 것으로서 특권으로 보호받는 진술 내에서 인정된 사실을 근거로 의견을 표명했을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정직한 의견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같은 조 제5항).

한편 “특권으로 보호받는 진술(privileged statement)”은 그 진술에 대해 출판책임을 지는 사람이 공익적 사안에 대한 출판물(제4조)이거나 동료의 심사를 거친 과학저널 또는 학술저널상의 진술(제6조), 1996년도 명예훼손법 제14조상의 절대적 특권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재판절차 보고, 같은 법 제15조 상의 기타 제한적 특권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기타 보고임을 입증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에 대한 입증은 피고가 부담한다. 그리고 공익적 사안에 대한 출판물인 경우에는 피고인이 그 진술의 공표가 공익에 해당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였음을 입증해야 하며(제4조 제1항 제b호), 동료의 심사를 거친 과학저널 또는 학술저널상의 진술은 과학적·학술적 대상에 대한 진술 이면서, 출간 전에 그러한 진술의 과학적·학술적 가치에 대한 독자적인 심사가 학술지 편집부나 관련분야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졌어야 한다(제6조 제2항, 제3항)

3) 웹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면책규정

본 개정법은 웹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면책규정을 두고 있다(제5조). 우선 웹사이트에 명예훼손이라 주장되는 진술을 직접 게시하지 않은 웹사이트 운영자는 면책되는 것이 원칙이다(제2항). 다만 원고가 그 진술 게시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고 운영자에게 그러한 진술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웹사이트 운영

222) 허순철, 「영국의 명예훼손법 개정과 그 의미」, 공법학연구 제16권 제4호, 2015, 135쪽.

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그러한 민원에 회신하지 않았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는다(제3항). 이때 원고가 게시자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에만 게시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제4항). 그리고 민원에는 민원인의 이름을 명시해야 하며, 문제되는 진술과 그 진술이 명예를 훼손하는 이유를 적시하고, 해당 진술이 게시되어 있는 구체적인 위치를 명시해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른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제6항). 관련규정은 민원이 접수된 경우 운영자가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한 규정, 그러한 조치의 기한에 관한 규정, 기한만료 이후에 제기된 민원을 기한 전에 제기된 것으로 간주하는 재량을 법원에 부여하는 규정 등으로 국무부가 만든 것을 말한다(제5항 및 제10항).

한편 웹사이트 운영자가 문제의 진술을 게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악의를 갖고 행위하였음을 원고가 입증한 경우에는 본 조항에 의한 면책효력은 상실된다(제11항). 다만 웹사이트 운영자가 그 웹사이트에 다른 사람이 게시한 진술을 관리한다(moderate)는 것이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본 규정에 따른 면책사유의 상실을 주장하지 못한다(제12항).

본 규정에 대해서는 제1조의 “중대한 해악”과 “금전적 손실”과 더불어 면책사유가 판례를 통해 보다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는 비판²²³⁾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관리한다(moderate)”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입법취지상 편집권(editorial control)을 행사하지 않고 단지 제3자가 게시한 글을 관리하는 수준에 불과한 웹사이트 운영자를 보고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웹사이트에 따라서는 자동으로 욕설이나 금칙어가 삭제되거나 차단되도록 설정해두기도 하고, 특정 관리인이 일일이 게시물의 내용을 검토하고 삭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²²⁴⁾ 이를 보다 상세하게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나. 하원 문화·미디어·스포츠위원회의 조사

2017년 1월 영국 하원은 문화·미디어·스포츠위원회(House of Commons culture, media and sport committee) 주도로 아래와 같은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 가짜뉴스에

223) 허순철, 「영국의 명예훼손법 개정과 그 의미」, 공법학연구 제16권 제4호, 2015, 142쪽.

224) 허순철, 「영국의 명예훼손법 개정과 그 의미」, 공법학연구 제16권 제4호, 2015, 138쪽.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²²⁵⁾

- 가짜뉴스란 무엇인가? 편파적이긴 하지만 합법적인 논평은 어디에서 선전이나 거짓으로 곱해되는가?
- 가짜뉴스는 대중의 세계관 및 전통적 저널리즘에 대한 대중의 반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모든 관점이 동일하게 유효하다면 객관성과 균형은 모든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가?
- 연령이나 사회적 배경, 성별 등에 따라 사람들이 가짜뉴스를 활용하고 반응하는데에 차이가 있는가?
- 가짜뉴스를 활용해 웹사이트 방문수를 유도하여 광고주로부터 보다 많은 수익을 얻어내는 등 광고판매와 배치의 변경이 가짜뉴스의 증가에 기여하였는가?
-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검색엔진과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어떠한 책임을 지는가? 진실한 보도로부터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한 컴퓨팅 알고리즘 개발 및 사용이 가능한가?
- 다양한 뉴스소스를 평가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할 수 있을 것인가?
- 공영방송과 신문독자의 전통을 고려할 때 영국과 다른 국가의 사람들이 가짜뉴스를 받아들이는 정도에 차이가 있는가?
- 외국 정부는 가짜뉴스에 어떻게 대응하였는가?

위원회는 가짜뉴스에 현혹되기 쉬운 사람들을 식별하고 이러한 현상을 규정짓기 위한 산업표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검색엔진과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 제공자들이 가짜뉴스 확산에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도 조사하기로 하였다.²²⁶⁾ 위원장인 데미안 콜린스(Damian Collins) 의원은 “가짜뉴스 확산현상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며 언론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를 떨어뜨린다. … 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조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짜뉴스의 출처,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동기, 그리고 가짜뉴스가 선거와 기타 중요한 정치적 쟁점에서 어떻게 이용되어왔는

225) UK Parliament, “Fake news’ inquiry launched”, 2017.1.10., <https://www.parliament.uk/business/committees/committees-a-z/commons-select/culture-media-and-sport-committee/news-parliament-2015/fake-news-launch-16-17/>, 2017.11.9. 최종방문.

226) POLITICO, “British MPs launch inquiry into fake news”, 2017.1.30., <https://www.politico.eu/article/british-mps-launch-inquiry-into-fake-news/>, 2017.11.9. 최종방문.

지도 조사할 것이다”라고 하였다.²²⁷⁾ 다만 본 위원회는 6월 총선실시와 함께 그 역할도 정지되었다.²²⁸⁾

다. 각종 위원회와 공공기관의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

영국의 통신청(Office of Communications, OFCOM)은 2002년 통신청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승인 위원회로, 텔레비전과 라디오, 통신, 우편 부문에 걸쳐 경쟁을 진흥하고 유해하고 위협적인 내용들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소비자들과 시민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통신청의 수장 패트리샤 호드슨(Patricia Hodgson)은 페이스북과 구글 등이 뉴스환경에서 하는 역할을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주요 인터넷 플랫폼의 역할과 책임, 법적 지위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하였다.²²⁹⁾ 언론규제기관인 독립적 언론표준기구(Independent Press Standards Organisation, IPSO)는 2014년에 설립되어 신문과 잡지 등에 관하여 저널리즘의 표준을 장려하고 법규 위반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그 외에 디지털 시대의 독립적 저널리즘 확보를 위해 Independent Monitor for the Press(IMPRESS)를 설치해 온라인 형식을 신문을 규제하고 있다. 다만 이들의 규제범위는 각각 텔레비전과 라디오 등의 지상파 매체, 신문 등으로 규제범위가 제한적이다. 그나마도 IPSO나 IMPRESS가 중요한 규제조치를 한 것은 알려져 있지 않다.²³⁰⁾ 특히 IMPRESS는 가짜뉴스의 악영향보다는 “가짜뉴스라는 용어의 무기화(weaponisation of the term ‘fake news’)”를 우려하고 있다. 이는 언론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짜뉴스 자체보다 더 큰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²³¹⁾

227) UK Parliament, “‘Fake news’ inquiry launched”, 2017.1.10., <https://www.parliament.uk/business/committees/committees-a-z/commons-select/culture-media-and-sport-committee/news-parliament-2015/fake-news-launch-16-17/>, 2017.11.9. 최종방문.

228) 선거연수원, 「가짜 선거뉴스 현황과 각국의 대응사례」, 2017.6., 34쪽.

229) The Guardian, “Ofcom chair raises prospect of regulation for Google and Facebook”, 2017.10.10., <https://www.theguardian.com/media/2017/oct/10/ofcom-patricia-hodgson-google-facebook-fake-news>, 2017.11.20. 최종방문.

230) Norton Rose Fulbright, “UK Government seeks to tackle the ‘fake news’ problem”, 2017.3., <http://www.nortonrosefulbright.com/knowledge/publications/147055/uk-government-seeks-to-tackle-the-fake-news-problem>, 2017.11.10. 최종방문.

231) IMPRESS, “Fake news is contaminating journalism...”, 2017.7.20., <https://impress.press/news/fake-news-speech.html>, 2017.11.20. 최종방문.

3. 인터넷 사업자 등의 자체적 대응방안

페이스북은 영국의 충선을 맞이하여 가짜뉴스에 대한 상당한 압력을 받고, The Times와 The Guardian, Daily Telegraph 등 주요 매체에 가짜뉴스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한 캠페인을 확대했으며, 아래와 같은 10가지 주의사항을 언급하였다.²³²⁾

- 헤드라인을 의심할 것
- URL(웹 주소)을 면밀히 살펴볼 것
- 출처를 조사할 것
- 비정상적인 포맷을 확인할 것
- 사진을 주시할 것
- 날짜를 확인할 것
- 증거를 확인할 것
- 다른 보도를 볼 것
- 이야기가 농담인지 확인해 볼 것
- 어떤 이야기들은 의도적 거짓(pongja)인 경우도 있음

그리고 구글크롬 등 웹브라우저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외부의 팩트체크 전문가들이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경고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해당 게시물의 정당성이 의심스럽다는 표시를 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²³³⁾

한편 영국의 지역신문들은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영국 언론사를 대표하는 뉴스 미디어협회(News Media Association)의 후원을 받아 “Fighting Fake News”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²³⁴⁾

2009년에 설립된 영국의 독립적 팩트체크 기관 Full Fact는 개인과 단체의 기부금 및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민간단체로서 Ipsos MORI 이슈목록에서 영국인들의 가장

232) BBC, “Facebook publishes fake news ads in UK papers”, 2017.5.8., <http://www.bbc.com/news/technology-39840803>, 2017.11.9. 최종방문.

233) The Guardian, “What is fake news? How to spot it and what you can do to stop it”, 2016.12.17., <https://www.theguardian.com/media/2016/dec/18/what-is-fake-news-pizzagate>, 2017.11.20. 최종방문.

234) The Week, “Could fake news impact the general election?”, 2017.5.3., <http://www.theweek.co.uk/84203/could-fake-news-impact-the-general-election>, 2017.11.9. 최종방문.

중요한 관심사로 집계되고 있는 경제와 범죄, 건강, 이민, 교육, 법 등에 대해 각종 주장에 대한 팩트체크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만 외교와 국방은 독립적 소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경과 과학 등의 분야는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팩트체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²³⁵⁾

제3절 독일의 대응 사례와 정책

1. 선거에 등장한 가짜뉴스 현황

가짜뉴스와 관련하여 독일에서 나타나고 있는 보도는 대체로 미국과 프랑스의 대선에 관한 내용들이었다.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도 미국 대선과정에 등장했던 가짜뉴스로 인해 촉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최근에는 독일에서도 몇 가지 가짜뉴스가 이슈화된 바 있다. 아랍인들이 교회를 불태웠다는 뉴스와 난민이 수영장에서 소녀를 강간했다는 뉴스, 한 여성 정치인이 살인자를 보호하고 있다는 뉴스²³⁶⁾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뉴스들은 2016년도 후반부터 2017년도 초반에 걸쳐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급격히 확산되었다. 이때 이용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유튜브(Youtube) 등이었다. 이와 같은 가짜뉴스는 시리아 등 중동의 난민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난민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이 난민정책에 불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유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²³⁷⁾

이 외에도 2017년 연방하원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자 했던 가짜뉴스가 발견되었다. 2017년 9월 24일 “수도관 파열로 기차역 앞에 설치된 투표소가 폐쇄되었다”, “후보자 XY가 후보직에서 사퇴하였다”, “선거서류에 조작이 확인되었다”라는 등의 유언비어가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타고 퍼지기 시작했다.²³⁸⁾ 다만 이러한 가짜뉴스

235) Full Fact, About, Effectiveness, <https://fullfact.org/about/effectiveness/>, 2017.11.20. 최종방문.

236) deutschland.de - So tickt Deutschland, “Gefälschte Nachrichten im Netz”, 2017.2.2., <https://www.deutschland.de/de/topic/kultur/kommunikation-medien/gefaelschte-nachrichten-im-netz>, 2017.10.30. 최종방문.

237) 선거연수원, 「가짜 선거뉴스 현황과 각국의 대응사례」, 2017.6., 5쪽.

238) MDR AKTUELL, “Städte bereiten sich auf Fake News zur Wahl vor”, 2017.9.18., <http://www.mdr.de/nachrichten/politik/regional/umgang-mit-fake-news-zur-bundestagswahl-100>.

가 실제 연방하원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구체적인 물증은 포착되지 않았다.

정치적 내용이 담긴 가짜뉴스는 대체로 극우세력에 의해 만들어져 현 집권여당과 제2정당인 사회민주당을 표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회민주당의 장관후보자 마틴 슐츠(Martin Schulz)의 부친이 전범이자 강제수용소의 지휘관이었다는 조작된 주장이 등장하였다.²³⁹⁾ 이러한 주장은 2016년 3월 슐츠의 부친이 아닌 다른 실제 전범의 사진과 함께 폴란드인의 블로그에서 발견되었다. 2017년 1월에는 독일어로 된 우익선전 웹사이트에 슐츠와 강제수용소의 수용자들이 함께 있는 합성사진과 함께 조작된 이야기가 게시되었는데, 이 사이트의 주소는 러시아의 도메인으로 확인되었다. 여기에 게시된 이야기의 내용들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주의 선거에서 독일을 위한 대안(Alternative für Deutschland, AfD)²⁴⁰⁾이라는 정당에 유리한 여론형성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은 러시아계 독일인이 다수 사는 지역에서는 다소간 효과를 발휘하긴 했으나,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한편 AfD는 2016년 가을 무렵 2017년 연방하원 총선을 대비하여 연방하원 선거에서 소셜봇(Social Bots)을 활용하겠다고 예고한 한 바 있다.²⁴¹⁾ 이와 관련하여 파사우(Passau) 대학교에서 행한 연구에 따르면, 설문조사 참여자의 64%가 가짜뉴스가 투표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변하였다고 한다.²⁴²⁾ 이 정당이 실제 2017년도 선거에서 소셜봇을 활용하였는지, 그리고 활용했다면 그것이 실제로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

html, 2017.10.30. 최종방문.

239) Spiegel Online, "Fake News werden nicht die Wahl entscheiden", 2017.7.25., <http://www.spiegel.de/wissenschaft/mensch/fake-news-werden-nicht-die-wahl-entscheidenkolumne-a-1153819.html>, 2017.10.30. 최종방문.

240) 독일의 극우정당으로 반이슬람과 반유로 성향을 띄고 있으며, 이민자와 동성애자, 성소수자에 반대를 내세우고 있다. 처음에는 독일의 유로화 사용 중지 정도만을 주장하였으나, 2015년 중순에 프라우케 페트리(Frauke Petry)가 당권을 장악해 극우노선을 선택한 이후 당파가 갈라졌다. 당권 경쟁에서 밀린 설립자 베르트 루케(Bernd Lucke)는 지지자들과 함께 탈당해 진보와 개혁 연합(Allianz für Fortschritt und Aufbruch, AFLA)을 설립하였다.

241) deutschland.de - So tickt Deutschland, "Gefälschte Nachrichten im Netz", 2017.2.2., <https://www.deutschland.de/de/topic/kultur/kommunikation-medien/gefalschte-nachrichten-im-netz>, 2017.10.30. 최종방문.

242) FOCUS Online, "Wie gefälschte Umfragen und Fake News Ihre Wahl beeinflussen sollen", 2017.9.20., http://www.focus.de/politik/deutschland/bundestagswahl_2017/manipulation-erkennen-wie-gefalschte-umfragen-und-fake-news-ihre-wahl-beeinflussen-sollen_id_7617770.html, 2017.10.30. 최종방문.

지는 분명치 않다. 다만 2013년도와 2017년도 연방하원 선거에서 각 정당의 득표율을 비교해 보면(아래 표 5-1), 두드러진 차이점이 하나 발견된다.

〈표 5-1〉 2017년도 독일 연방하원 총선 득표율²⁴³⁾

총투표율 : 76.2% (2013년도 : 71.5%)

정당	2017년도 득표율	2013년도 득표율	변동폭
CDU	26.8%	34.1%	-7.3%
SPD	20.5%	25.7%	-5.2%
AfD	12.6%	4.7%	+7.9%
FDP	10.7%	4.8%	+5.9%
DIE LINKE	9.2%	8.6%	+0.6%
GRÜNE	8.9%	8.4%	+0.5%
CSU	6.2%	7.4%	-1.2%
기타	5.0%	6.2%	-1.2%

2017년도 연방하원 선거에서 AfD는 총 12.6%의 득표율을 보였다. 주요 정당 가운데 가장 상승폭이 크다. 이것이 실제 소셜봇을 활용한 “여론조작”이 결과물인지, 현 정부의 친이민자 정책에 대한 반대여론이 실제로 증가하였기 때문인지는 아직 명료하게 분석되지 않고 있다.²⁴⁴⁾ 다만 어쨌거나 AfD는 이번 선거에서 94석을 확보해 CDU/CSU 연합과 SPD에 이어 원내 제3당의 지위로 약진하게 되었다.²⁴⁵⁾

한편 2017년 3월 7일에는 가짜뉴스에 관한 주목할 만한 판례가 나왔다. 시리아 난민 아나스(Anas M.)가 메르켈 총리와 찍은 자신의 사진이 페이스북에 게시되어 혐오 표현과 무고에 이용되었다는 이유로 페이스북에 즉각적인 삭제조치를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해 뷔르츠부르크 지방법원(LG Würzburg)은 페이스북에게는 난민에 대한 불법적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색하고 삭제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하였다.²⁴⁶⁾ 그에 따르면

243) Der Bundeswahlleiter, Bundestagswahl 2017: Endgültiges Ergebnis, Pressemitteilung Nr. 34 /17, 2017.10.12., https://www.bundeswahlleiter.de/info/presse/mitteilungen/bundestagswahl-2017/34_17_endgueltiges_ergebnis.html, 2017.10.31. 최종방문.

244) 공교롭게도 AfD의 증가폭은 CDU의 감소폭과 대략 유사하다.

245) 2013년에는 의석확보의 하한선인 5%를 넘지 못해 의석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였다.

246) Redaktion beck-aktuell, “LG Würzburg: Facebook muss Hetz-Beiträge nicht aktiv suchen und löschen”, 2017.3.7., <https://rsw.beck.de/aktuell/meldung/lg-wuerzburg-facebook-muss-hetz-beitraege-nicht-suchen-und-loeschen>, 2017.10.31. 최종방문.

웹사이트 상의 불법적인 내용은 직접 당사자가 스스로 찾아 페이스북에 신고해야 하며, 페이스북은 그러한 신고가 제기된 경우에만 비로소 해당 게시물을 삭제조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법원은 게시물의 인격권 침해 정도가 중대하고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페이스북이 해당 게시물을 찾아 삭제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2.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가. 독일형법

(1) 국민선동죄(형법 제130조)

가짜뉴스를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가짜뉴스의 내용에 따라 독일형법 제130조 국민선동죄(Volksverhetzung)에 해당할 수 있다. 아래에서 기술할 형법 제186조 이하의 규정이 가짜뉴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규정이라면, 본 규정은 공공질서에 대한 죄(Straftaten gegen die öffentliche Ordnung)로서 가짜뉴스 제작·유포 등 행위의 사회적 유해성을 근거로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독일형법 제130조 제1항은 “공공의 평온을 교란하기 적합한 방법으로 (1) 특정 국가나 민족, 종교집단, 인종에 대해 증오심을 불러일으키거나 폭력적·자의적 조치를 요구하거나 그러한 집단이나 일부 주민에 대한 소속감을 이유로 일부 주민이나 개인에 대해 증오심을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자, 또는 (2) 특정 집단이나 일부 주민, 개인을 그러한 집단이나 일부 주민에 대한 소속감을 이유로 모욕하거나 악의적으로 비방하거나 명예훼손함으로써 타인의 인간존엄성을 침해한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행위는 하이퍼링크에 연결된 인터넷에 게시한 것으로도 가능하며, 다만 독일에서 접속할 수 있으면 된다.²⁴⁷⁾

본 규정 제2항은 “(1) a) 제1항의 (1)에서 명시한 특정 집단이나 일부 주민에 대한 소속감을 이유로 제1항의 (1)에서 명시한 특정 집단이나 일부 주민, 또는 개인에 대한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문서, b) a)에서 언급한 사람이나 집단에 대해 폭력적·자의적

247) BGHSt 46, 220 ff.; Ostendorf, NK-StGB § 130 Rn. 9.

조치를 요구하는 문서, 또는 c) a)에서 언급한 사람이나 집단을 모욕하거나 악의적으로 비방하거나 명예훼손함으로써 이들의 인간존엄성을 침해하는 문서를 유포하거나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하거나 18세 미만인 사람에게 문서를 제공, 양도 또는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자, (2) 앞의 (a)에서 c)에서 언급한 내용을 방송이나 텔레미디어를 이용해 18세 미만의 사람 또는 공공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자, (3) 위 문서 또는 이를 통해 만들어진 제작물을 앞의 두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 문서를 생산, 취득, 인도, 보관, 제공, 입수하거나 수입·수출한 자”를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문서는 책이나 신문, 현수막뿐만 아니라 비디오나 오디오, CD, USB 저장매체에 수록된 것들, 사진 등도 포함하기 때문에,²⁴⁸⁾ 웹문서 형태로 제작된 가짜뉴스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한편 가짜뉴스에 나치의 행위와 관련된 내용이 담긴 경우에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의해 처벌할 수 있다. 제3항은 “국가사회주의 지배 하에서 범한 국제형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행위를 공공의 평온을 교란하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공연히 또는 집회에서 승인 또는 부인하거나, 별 일 아닌 것으로 무시하는 표현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4항은 “공연히 또는 집회에서 국가사회주의의 폭력적·자의적 지배를 승인·찬양하거나 정당화함으로써 피해자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공공의 평온을 교란한 자”를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가짜뉴스를 제작하여 유포하는 행위는 공연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가짜뉴스에 나치의 행위를 찬양하거나 그 불법성을 부인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본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그리고 제3항과 제4항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방송이나 텔레미디어를 이용해 18세 미만의 사람이나 공공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자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제5항).

(2) 모욕에 관한 죄(형법 제185조 ~ 제188조)

독일형법 제14장은 모욕에 관한 죄(Beleidigung)를 규정하고 있다. 그 가운데 가짜뉴스와 관련해 적용할 수 있는 구성요건으로는 제185조 모욕죄(Beleidigung)와 제186조

248) Ostendorf, NK-StGB § 130 Rn. 20.

비방죄(Üble Nachrede), 제187조 중상죄(Verleumdung)가 있으며, 정치인에 대한 비방과 중상은 별도의 규정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다(제188조). 이들 구성요건 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제185조(모욕) 모욕은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모욕이 행동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 제186조(비방) 타인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을 경멸하거나 세평을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을 주장하거나 유포한 자는, 이러한 사실이 증명할만한 진실이 아닌 경우,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그 행위가 공연히 또는 문서의 유포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 제187조(중상) 타인에 대한 관계에서 보다 나은 지식에 반하여 타인을 경멸하거나 세평을 저하시키거나 타인의 신용을 해할 수 있는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그 행위가 공연히, 집회에서 또는 문서의 유포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 제188조(정치인에 대한 비방 및 중상) ① 정치인에 대하여 공연히, 집회에서 또는 문서의 유포를 통해 공적 생활에서 피해자의 지위와 관련한 동기로 피해자를 비방(제186조)하고, 그 행위가 피해자의 공적 활동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 ② 같은 요건에 의한 중상(제187조)은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가짜뉴스의 내용에 따라, 그것이 피해자(집단)를 경멸하거나 세간의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으며, 또한 증명할만한 진실이 아닌 경우에는 비방죄로 처벌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실의 증명불가능성(Nichterweislichkeit)은 가별성의 객관적 조건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²⁴⁹⁾ 따라서 주장한 사실이 실제 진실에 반하더라도 논증이나 맥락에 따라 - 어쨌거나 - 그 주장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정도이면 본 규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연히 또는 문서유포를 통해 비방한 경우에는 가중해서 처벌한다. 한편 행위자가 “보다 나은 지식에 반하여(wider besseres Wissen)” 가짜뉴스를 통해 일정 인물이나 집단을 경멸하거나 세간의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거나 유포한 경우에는 중상죄에 해당하여 비방죄보다

249) Zaczyk, NK-StGB, § 186 Rn. 15 참조.

강하게 처벌할 수 있다. 여기에는 타인의 신용을 해할 우려도 포함된다. “보다 나은 지식에 반하여”라는 요건은 본인이 주장하는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알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²⁵⁰⁾ 공연히, 집회에서 또는 문서유포를 통해 증상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한다. 가짜뉴스를 통한 비방이나 증상의 대상이 정치인인 경우에는, 공연히, 집회에서 또는 문서유포를 통해 그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처벌할 수 있다. 다만 공적 생활에서 피해자의 지위와 관련한 동기를 요하며, 실제로 그 행위가 피해자의 공적 활동을 현저히 저해할 위험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제185조의 모욕죄는 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로서 타인에게 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보충적 구성요건이다.

위의 구성요건들은 모두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제194조 제1항 제1문). 다만 그 행위가 문서의 반포나 공개를 통하여, 집회에서, 또는 모욕적 내용을 방송이나 텔레미디어를 이용해 공개한 경우, 나치나 기타 폭력적·자의적 지배하에 있는 집단의 소속원인 피해자가 소추되었으면서 이러한 집단이 국민의 일부이면서 그 모욕이 이러한 소추와 관련된 때에는 고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같은 항 제2문). 다만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직권으로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같은 항 제3문). 한편 모욕 등의 행위가 공무원이나 공적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연방군의 군인에 대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직무의 수행이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해진 경우에는 상관의 고소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제1문). 관청이나 기타 공적 행정업무를 대리하는 기관에 대한 모욕행위는 기관장이나 감독관청의 장이 고소할 수 있다(같은 항 제2문). 그리고 연방이나 주의 입법기관 또는 본 법률의 지역적 적용범위에 있는 정치단체에 대한 행위는 당해 단체의 수권(Ermächtigung)이 있는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나. 독일 연방선거법

독일은 연방하원선거를 위한 기본법으로 연방선거법(Bundeswahlgesetz, BWahlG)을 두고 있다. 이는 총 9개의 장과 50여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선거시스템,

250) Zaczyk, NK-StGB, § 187 Rn. 2.

제2장은 선거기구, 제3장은 선거권과 선거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4장은 선거의 준비, 제5장은 선거행위, 제6장은 선거결과의 확정, 제7장은 보궐선거와 재선거에 관한 특별규정, 제8장은 독일연방하원 자격의 취득과 상실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9장은 보칙규정으로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규정(제49조a)을 포함하고 있다. 그 가운데 선거절차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제32조가 유일하다.

본 법률 제32조는 “허용되지 않는 선거선전과 서명수집, 허용되지 않는 유권자설문 공개”를 표제로 하고 있고, 두 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항은 “선거기간동안 투표소가 있는 건물의 내부나 옆에, 그리고 그 건물의 입구에 단어나 소리, 문서, 그림 등 어떠한 형태로든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며, 모든 서명수집도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항은 “선거결정의 내용에 대한 투표 후 유권자 설문 결과의 공표는 선거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컨대 이 규정들은 사실상 투표 당일 유권자의 표심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즉 현행 선거법에는 선거기간 여부를 막론하고 정치권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가짜뉴스를 규제하기 위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소셜네트워크에서 법집행 개선을 위한 법률

지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데에 가짜뉴스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은 독일에서도 상당한 이목을 끌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정치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를 사고 있는 여러 가짜뉴스와 혐오표현들에 대한 규제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독일에서도 이를 규제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났다. 사회민주당(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SPD) 소속인 연방 법무부장관 하이코 마스(Heiko Maas)는 2017년 3월 14일 “소셜네트워크에서 법집행 개선을 위한 법률(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sdurchsetzung in sozialen Netzwerken)”²⁵¹⁾을 제안

251)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이른바 “가짜뉴스처벌법”으로 의역하여 보도하고 있다 : ZDNet Korea, “독일 의회는 왜 ‘가짜뉴스 처벌법’ 폐기했나”, 2017.6.21., http://www.zdnet.co.kr/column/column_view.asp?article_id=20170621102516, 2017.10.27. 최종방문. 그러나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본 법률은 가짜뉴스보다는 혐오표현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표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독일에서는 본 법률에 대한 은유적 표현으로 “반혐오법률(Anti-Hass-Gesetz)”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Frankfurter Allgemeine, “Facebook wehrt sich gegen Maas’ Anti-Hass-Gesetz”, 2017.5.29., <http://www.faz.net/aktuell/wirtschaft/>

하였다. 본 법률은 네트워크집행법(Netzwerkdurchsetzungsgesetz, NetzDG)으로 줄여 표기하기도 한다. 연방내각은 4월 5일 이를 통과시켰다. 연방하원은 각 정부기관과 시민단체, 학자, 유관기업들의 격론을 수용하여 정부초안을 다소 수정하여 2017년 6월 30일 본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본 법률은 10월 1일부터 발효·시행되었다.

(1) 입법 배경 및 경과

지난 미국 대선과정에서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확산된 가짜뉴스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관측은 2017년 연방하원 선거를 앞두고 있던 독일에서도 상당한 우려를 낳았다. 그와 더불어 네트워크를 통해 점차 확산되고 있던 각종 혐오표현과 인종, 종교, 성에 관한 차별적 표현도 작지 않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짜뉴스와 혐오표현과 같은 범죄를 즉시 저지하고 명백히 범죄적인 게시물을 삭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요청이 증가하였다.

연방법무소비자보호부(Bundesministerium der Justiz und für Verbraucherschutz)는 2015년 페이스북과 유튜브, 트위터 등 네트워크 운영자와 시민사회 대표자들과 함께 이른바 특별전담반을 구성하여 자율적 규제를 시도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다소간의 개선이 이루어진 듯하였으나, jugendschutz.net이 2017년 1월과 2월에 시행한 모니터링 결과 위와 같은 불법 콘텐츠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유튜브의 경우에는 약 90%의 불법 콘텐츠를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각각 39%와 1% 정도의 불법 콘텐츠가 삭제되었다고 한다.²⁵²⁾

이에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운영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소셜네트워크의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혐오표현과 가짜뉴스 등 불법 콘텐츠에 대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운영자에게 불법 콘텐츠에 대한 차단 및 보고의무를 법제화하고자 본 법률안을 제안하였다. 2017년에 행해진 각 지역선거 및 연방하원 선거에서 AfD의 약진이 본 법률안 제안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분석²⁵³⁾도 있다.

netzwirtschaft/der-facebook-boersengang/facebook-wehrt-sich-gegen-netzwerkdurchsetzungsgesetz-15037014.html, 2017.11.2. 최종방문.

252) Gesetzentwurf der Bundesregierung, Entwurf eines Gesetzes zur Verbesserung der Rechtsdurchsetzung in sozialen Netzwerken, S. 1.

(2) 주요 내용

본 법률은 여섯 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비교적 짧은 법률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제1조는 본 법률의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이 법률은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와 임의의 콘텐츠를 공유하거나 공개할 수 있도록 고안된, 이익창출을 목적으로 인터넷에 플랫폼을 운영하는 텔레미디어 제공자(즉 소셜네트워크)에게 적용된다. 다만 서비스 제공자 자신의 책임 아래에서 저널 편집을 위해 제공된 플랫폼은 본 법률의 소셜네트워크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인간 커뮤니케이션이나 특정 콘텐츠의 배포만을 위한 소규모 플랫폼도 마찬가지로 본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제1항). 따라서 이메일 서비스와 메신저 서비스도 본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²⁵⁴ 직무상 활용되는 네트워크와 전문포털, 온라인게임, Amazon과 같은 온라인숍 등도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²⁵⁵ 그리고 본 법률이 규제하고자 하는 불법 콘텐츠는 형법 제86조(위헌조직 선전물 반포), 제86조a(위헌조직의 표시 사용), 제89조a(중대한 국가위해적 폭력행위 예비), 제91조(중대한 국가위해적 폭력행위 지시), 제100조a(간첩목적 위조), 제111조(공연한 범죄선동), 제126조(범죄위협을 통한 공공평온 교란), 제129조부터 제129조b(범죄단체조직 등), 제130조(국민선동), 제131조(폭력물 반포), 제140조(범죄의 대가지급 및 찬양), 제166조(신앙, 종교단체, 세계관단체 모욕), 제184조b(아동음란물 반포, 취득, 소지), 제184조d(방송 및 텔레미디어를 이용한 음란물 공개), 제185조부터 제187조(모욕 등), 제201조a(사진촬영을 통한 가장 개인적인 생활영역 침해), 제241조(협박), 제269조(증거가치가 있는 정보의 조작)이며, 위법성조각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제3항).

제2조에 따르면 연간 100건 이상의 불법 콘텐츠 신고를 접수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는 반기별로 자신의 플랫폼에 불법 콘텐츠 신고에 대한 처리내역을 독일어

253) 미디어스, “독일, 가짜뉴스보다 SNS 혐오발언에 초점”, 2017.6.2.,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Print.html?idxno=93144>, 2017.10.31. 최종방문.

254) Nikolas Guggenberger, “Das Netzwerkdurchsetzungsgesetz in der Anwendung”, NJW 2017, 2578.

255) Nikolas Guggenberger, “Das Netzwerkdurchsetzungsgesetz in der Anwendung”, NJW 2017, 2577.

로 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각 반기의 종료 한 달 이내에, 즉 7월 말일과 1월 말일까지, 그 보고서를 연방관보 및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본 규정에 따른 최초 보고서는 2018년도 상반기에 제작·공개하도록 하고 있다(제6조 제1항). 다만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들이 불법 콘텐츠를 찾아내기 위해 검색이나 감시를 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신고가 제기된 콘텐츠에 대해 24시간 이내에 차단하고, 불법성이 확인된 경우 7일 이내에 해당 콘텐츠를 삭제한 후(제3조) 신고자에게 통보하면 된다. 다만 콘텐츠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사실주장의 허위성이나 다른 객관적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7일의 기한 이후에 해당 콘텐츠를 차단할 수 있다. 독일 국내에서 등록된 사용자의 수가 200만 명 미만인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는 제2조와 3조의 의무로부터 면제된다(제1조 제2항).

그리고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2조에서 규정한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실제적 또는 절차적으로 부당하게 작성 또는 공개한 경우, 제3조에 따른 신고처리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로서 500만 유로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제4조). 이때 과태료는 질서위반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보다 많아야 한다. 그 밖에 질서위반법 제130조에 따르면 소셜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기업의 소유자에게도 효과적인 신고관리체계 유지의무 또는 보고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같은 법 제30조에 따르면 법인이나 조합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때 과태료는 최대 5천만 유로까지 부과할 수 있다(질서위반법 제30조 제2항 제3문 참조).

(3) 본 법률에 대한 평가

본 법률은 가짜뉴스보다는 혐오표현(Hasskommentare)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가짜뉴스 제작·유포행위 또는 혐오표현행위 자체를 형사처벌하는 것에 앞서, 네트워크를 통해 가짜뉴스나 혐오표현이 확산되는 것을 미연에 기술적·제도적으로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선은 가짜뉴스 제작이나 유포, 혐오표현 그 자체는 이미 앞서 기술한 형법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형사처벌만으로는 가짜뉴스와 혐오표현의 확산을 예방 또는 방지할 수 없기 때문에, 소셜네트워

크 서비스 제공자에게 일정한 법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이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커졌기 때문이다.

본 법률(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셜네트워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여전히 불분명하고,²⁵⁶⁾ 규제대상이 되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의 범위가 과연 타당한 것인가 하는 점도 여전히 쟁점이 될 듯하다. 과태료의 액수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있다.²⁵⁷⁾

다만 이와 같은 각론적 쟁점에 앞서, 본 법률(안)에 대한 비판은 네트워크상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 등 헌법적 기본권을 현저히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즉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는 과태료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정한 범주의 합법적인 콘텐츠를 임의로 삭제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²⁵⁸⁾ 이에 대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의 잘못된 콘텐츠 삭제에 대해 이용자가 효과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방어할 수 있는 기재를 확립할 필요가 있으며, 삭제조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²⁵⁹⁾ 또한 사기업에 불과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표현물 또는 콘텐츠의 합법과 불법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²⁶⁰⁾

이와 같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본 법률의 가장 직접적인 타겟으로 인식되고 있는 페이스북과 함께, 국경 없는 기자회견(Reporters sans

256) Georg Nolte, “Hate-Speech, Fake-News, das »Netzwerkdurchsetzungsgesetz« und Vielfaltsicherung durch Suchmaschinen”, ZUM 2017, 555.

257) Frankfurter Allgemeine, “Facebook wehrt sich gegen Maas’ Anti-Hass-Gesetz”, 2017.5.29., <http://www.faz.net/aktuell/wirtschaft/netzwirtschaft/der-facebook-boersengang/facebook-wehrt-sich-gegen-netzwerkdurchsetzungsgesetz-15037014.html>, 2017.11.2. 최종방문.

258) Georg Nolte, “Hate-Speech, Fake-News, das »Netzwerkdurchsetzungsgesetz« und Vielfaltsicherung durch Suchmaschinen”, ZUM 2017, 556.

259) netzpolitik.org, “Ab heute gilt das NetzDG - und das sind die Gefahren für die Meinungsfreiheit”. 2017.10.1., <https://netzpolitik.org/2017/ab-heute-gilt-das-netzdg-und-das-sind-die-gefahren-fuer-die-meinungsfreiheit/>, 2017.10.31. 최종방문.

260) Nikolas Guggenberger, “Das Netzwerkdurchsetzungsgesetz in der Anwendung”, NJW 2017, 2582; Georg Nolte, “Hate-Speech, Fake-News, das »Netzwerkdurchsetzungsgesetz« und Vielfaltsicherung durch Suchmaschinen”, ZUM 2017, 555; Frankfurter Allgemeine, “Facebook wehrt sich gegen Maas’ Anti-Hass-Gesetz”, 2017.5.29., <http://www.faz.net/aktuell/wirtschaft/netzwirtschaft/der-facebook-boersengang/facebook-wehrt-sich-gegen-netzwerkdurchsetzungsgesetz-15037014.html>, 2017.11.2. 최종방문.

frontières)와 독일의 디지털 사업자연합인 Bitkom(Bundesverband Informationswirtschaft, Telekommunikation und neue Medien), 독일언론인협회(Deutscher Journalisten-Verband), 연방 디지털 경제협회(Bundesverband Digitale Wirtschaft) 등 각종 시민단체와 더불어 상당수의 법학자들이 본 법률안에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였다.²⁶¹⁾ 이와 달리 독일 유대인연맹 최고위원회(Zentralrat der Juden in Deutschland)는 본 법률안에 적극 찬성하면서, 오히려 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등록 사용자 수에 따라 제한할 것이 아니라, 모든 제공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²⁶²⁾ 1,600 여명의 판사와 검사가 가입되어 있는 독일 최대의 판·검사 직업조합인 “독일 판사협회(Deutscher Richterbund)”도 과태료 규정에 대한 이견을 제시하기는 했으나, 전반적인 찬성과 환영의 의견서²⁶³⁾를 제출하였다. 다만 또 다른 판·검사 직업조합인 “새로운 판사협회(Neue Richtervereinigung)”는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혐오표현과 가짜뉴스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환영하면서도, 본 법률(안)은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음을 지적하였다.²⁶⁴⁾

3. 인터넷 사업자 등의 자체적 대응방안

본 법률(안)의 가장 직접적인 적용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페이스북, 보다 정확히는 함부르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페이스북 독일법인은 본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자신들은 이미 다음과 같은 충분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²⁶⁵⁾

261) Redaktion beck-aktuell, “Allianz für Meinungsfreiheit kritisiert Gesetz gegen Hassrede im Netz”, 2017.4.12., <https://rsw.beck.de/aktuell/meldung/allianz-fuer-meinungsfreiheit-kritisiert-gesetz-gegen-hassrede-im-netz>, 2017.10.31. 최종방문.

262) Stellungnahme des Zentralrats der Juden in Deutschland, S. 1, https://www.bmjv.de/SharedDocs/Gesetzgebungsverfahren/Stellungnahmen/2017/Downloads/03272017_Stellungnahme_ZdJ_RefE_NetzDG.pdf;jsessionid=9116AF16B8632D782F1DB9598C562BDD.1_cid289?__blob=publicationFile&v=2, 2017.11.3. 최종방문.

263) Stellungnahme des Deutschen Richterbundes, S. 1, https://www.bmjv.de/SharedDocs/Gesetzgebungsverfahren/Stellungnahmen/2017/Downloads/03272017_Stellungnahme_DRB_RefE_NetzDG.pdf?__blob=publicationFile&v=3, 2017.11.3. 최종방문.

264) Stellungnahme der Neuen Richtervereinigung, S. 1, https://www.bmjv.de/SharedDocs/Gesetzgebungsverfahren/Stellungnahmen/2017/Downloads/03292017_Stellungnahme_NRV_RefE_NetzDG.pdf?__blob=publicationFile&v=2, 2017.11.3. 최종방문.

265) Stellungnahme der Facebook Germany GmbH, SS. 1-4 참조, <https://www.bmjv.de/SharedD>

우선 페이스북은 혐오표현과 가짜뉴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자율적 자기통제 멀티미디어 서비스제공자(Freiwillige Selbstkontrolle Multimedia-Diensteanbieter, FSM)인 jugendschutz.net 및 다른 자율통제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였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미 각 관할 국가기관과 적절하고 지속적으로 협조하여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였다고 한다. 연방내무부 장관 토마스 데메지에르(Thomas de Maizière)는 페이스북과 형사소추기관의 협조가 이미 매우 긴밀하고 수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²⁶⁶⁾ 독일 국내적 차원뿐만 아니라 유럽적 차원에서도 “불법 온라인 혐오발언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기준(Code of Conduct on Countering Illegal Hate Speech Online)”에 가입하는 등 혐오표현과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노력을 상당히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또한 형사소추기관을 위한 질의포털 www.facebook.com/records를 설치하여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의 접근 및 범죄행위 수사를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4,500 여명으로 구성된 팀을 만들어 신고된 콘텐츠가 자사의 기준을 벗어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인원을 3,000명 더 충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현재 이 팀은 40여개 국가의 언어로 된 게시물을 관찰하고 평가하며 삭제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신고된 게시물을 즉각 삭제하기 보다는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다 존중하는 입장에서 이와 같은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페이스북은 2017년 연방하원 선거에 앞서 가짜뉴스 필터링 테스트를 실시하였는데, 이용자가 가짜뉴스를 신고하면 비영리 언론기관 “코렉티브(CORRECTIV)”²⁶⁷⁾에서 팩트체크 과정을 거치고, 그 결과 가짜뉴스임이 판명되면 이용자가 해당 콘텐츠를 공유할 때 경고알림이 뜨고 알고리즘에서도 제외되었다고 한다.²⁶⁸⁾

ocs/Gesetzgebungsverfahren/Stellungnahmen/2017/Downloads/05242017_Stellungnahme_Facebook_RefE_NetzDG.pdf;jsessionid=9116AF16B8632D782F1DB9598C562BDD.1_cid289?_blob=publicationFile&v=2, 2017.11.3. 최종방문.

266) heise online, “De Maizière lobt Zusammenarbeit mit Facebook im Kampf gegen Hassrede”, 2016.8.29., <https://www.heise.de/newsticker/meldung/De-Maiziere-lobt-Zusammenarbeit-mit-Facebook-im-Kampf-gegen-Hassrede-3307120.html>, 2017.11.3. 최종방문.

267) 홈페이지 : <https://correctiv.org/>

268) BLOTTER, “[IT열쇳말] 가짜뉴스”, 2017.3.9., <http://www.blotter.net/archives/273350>, 2017.11.3. 최종방문.

제4절 프랑스의 대응 사례와 정책

1. 선거에 등장한 가짜뉴스 현황

프랑스의 가짜뉴스는 1789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리벨(libelles)이라고 불리는 풍자문은 가짜뉴스의 첫 사례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는 프랑스 대혁명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²⁶⁹⁾ 최근 선거와 관련해서는 극우파 정당의 대선 후보 마린 르 펜(Marine Le Pen)이 대선공약으로 “프랑스 국경에 알제리의 재정지원으로 장벽 건설”이라는 패러디 웹사이트 Le Gorafi의 거짓 기사를 알제리 신문이 인용한 바 있다. 이외에도 유사 뉴스사이트 lesoir.info가 벨기에의 르스와르(Le Soir) 일간지 기사를 인용하고 AFP통신을 정보원으로 명시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엠마뉴엘 마크롱 후보의 대선경비 30%를 지원한다”는 허위정보가 퍼지기 시작했으나, 르스와르와 AFP통신 등이 부인하면서 가짜뉴스로 판명된 바 있다.²⁷⁰⁾ 2016년 4월에는 급진좌파연합의 대선후보 장-뤽 멜랑송(Jean-Luc Mélenchon)이 18,000유로 상당의 로렉스 시계를 차고 있는 모습이 SNS를 통해 확산되었으나, 실제 그가 차고 있던 시계는 세이코(Seiko)사의 2,300유로 상당의 시계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²⁷¹⁾

대통령 선거기간 중에는 허위의 여론조사결과 공표도 있었다. 2017년 3월 20일 프랑스 대선후보 11명이 참석한 TV 토론회 다음 날, 극우정당의 회계 월랑 드 생-쥐스트(Wallerand de Saint-Just)가 자신의 트위터에 후보자간 지지도에 대한 르피가로 신문의 여론조사를 발표하였다. 국민전선의 마린 르 펜 후보가 32%로 1위를, 급진보당의 멜랑송 후보가 28%로 2위를 달리고 있으며, 우파정당의 피용(François Fillon) 후보가 17%, 마크롱 후보가 15%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르피가로지는 사실

269) ouest france, “« Fake news » : cinq choses que vous ignoriez peut-être à leur sujet”, 2017.4.3., <https://www.ouest-france.fr/high-tech/internet/fake-news-cinq-choses-que-vous-ignoriez-peut-etre-leur-sujet-4903331>, 2017.12.12. 최종방문.

270) Le Monde, “Macron « financé par l'Arabie saoudite » : une intox massivement relayée par l'extrême droite”, 2017.3.2., http://www.lemonde.fr/les-decodeurs/article/2017/03/02/macron-finance-par-l-arabie-saoudite-une-intox-massivement-relayee-par-l-extreme-droite_5088356_4355770.html, 2017.12.12. 최종방문.

271) franceinfo, “Non, Jean-Luc Mélenchon n'arbore pas une Rolex à 18.000 euros”, 2016.4.28., https://www.francetvinfo.fr/replay-radio/le-vrai-du-faux-numerique/non-jean-luc-melenchon-n-arbore-pas-une-rolex-a-18-000-euros_1781339.html, 2017.12.12. 최종방문.

무근임을 발표하였고, 월랑 드 생-쥐스트는 계정에서 이 내용을 삭제하였다.²⁷²⁾

파리 8대학의 파스칼 프루와사르(Pascal Froissart) 교수는 가짜뉴스를 단순한 거짓 정보가 아니라 미디어를 이용하여 어떠한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사실을 변조하여 전파하려는 허위정보로 규정하고 있다.²⁷³⁾ 이와 같은 가짜뉴스는 크게 세 가지 경로로 유통된다. 우선 Le Gorafi와 같은 유머·풍자 사이트로 이들은 공개적으로 패러디와 풍자를 표방하며, 기사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의지도 없다. 두 번째는 주로 SNS를 중심으로 전파되며, 대표적인 가짜뉴스로 분류되는 언론 모방 사이트이다. 세 번째는 극우성향 주간지인 Minute와 같은 어용사이트로 여론조작과 정치적 영향력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²⁷⁴⁾

한편 2017년 대선기간 중 SNS를 통해 유통된 가짜뉴스의 영향력을 분석한 레PUTATIO 연구소(Reputatio Lab)의 연구결과²⁷⁵⁾에 따르면, 대선기간 중 트위터에 대한 관심과 횡수가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프랑스의 유권자들은 질이 낮거나 선동적인 가짜뉴스에 대한 경계심이 높았고, 대부분의 트위터들은 정통 언론사의 기사를 근거로 하거나 본 기사로 인도하는 경향이 눈에 띈다고 하였다. 프랑스 유권자의 가짜뉴스에 대한 관심도는 미국과 독일에 비해 매우 낮았다고 한다.

2.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가. 언론 출판의 자유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

프랑스 형법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오로지 공연성이 없는 명예훼손에 관한 처벌규

272) Libération, “Non, Wallerand de Saint-Just, Marine Le Pen n'est pas arrivée en tête d'un sondage du Figaro”, 2017.3.21., http://www.liberation.fr/desintox/2017/03/21/non-wallerand-de-saint-just-marine-le-pen-n-est-pas-arrivee-en-tete-d-un-sondage-du-figaro_1557363, 2017.12.12. 최종방문.

273) ouest france, “« Fake news » : cinq choses que vous ignoriez peut-être à leur sujet”, 2017.4.3., <https://www.ouest-france.fr/high-tech/internet/fake-news-cinq-choses-que-vous-ignoriez-peut-etre-leur-sujet-4903331>, 2017.12.12. 최종방문.

274) Le Monde, “Pourquoi il faut arrêter de parler de « fake news »”, 2017.1.31., http://www.lemonde.fr/les-decodeurs/article/2017/01/31/pourquoi-il-faut-arreter-de-parler-de-fake-news_5072404_4355770.html, 2017.12.12. 최종방문.

275) Reputatio Lab, Présidentielle 2017, <http://www.reputatiolab.com/presidentielle-2017/>, 2017.12.12. 최종방문.

정만을 두고 있다. 공연한 명예훼손죄는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률(*la loi sur la liberté de la presse*)”²⁷⁶⁾ 제29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다.

우선 본 법률 제29조는 “인격이나 신체의 명예나 생각에 대해 피해를 주는 모든 주장이나 비난은 명예훼손(*diffamation*)이다. 이러한 주장과 비방의 생산 및 재생산의 형태가 구체적이지 않고, 인격이나 신체를 구체적으로 지칭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장이나 외침, 헐뜯, 필기물, 인쇄물, 현수막, 벽보 등에 사용된 언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다.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욕설 등 모든 모욕적 표현은 중상(*injure*)에 해당한다.” 본 법률 제32조에 따르면 이와 같은 명예훼손은 12,000 유로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명예훼손이 국적이나 인종, 종교 등에 기인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45,000 유로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양자는 병과할 수도 있다. 한편 본 법률 제27조는 “제3자에 대한 허위 정보나 위조된 문서를 공표하거나 유포, 재생산하는 행위가 공공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경우에는 45,000 유로의 벌금에 처하며, 이를 악의적으로 공표하거나 유포, 재생산하여 국가의 전투력을 저하시키거나 군대의 규율 및 사기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135,000 유로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선거법상 허위정보로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프랑스 “선거법(*Code électoral*)”²⁷⁷⁾ 제L97조는 허위정보를 이용해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거짓 뉴스나 비방 기타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득표하거나 투표의사결정을 바꾸게 하거나 유권자 1인 이상의 투표불참을 유도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15,0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한다.”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로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직접적인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가짜뉴스를 이용해 실제 득표나 투표의사결정 변경, 투표불참을 유도하였는지 입증하는 것이 용이할지는 다소 의문스럽다.

276) 1881년 7월 29일 제정, 2017년 1월 29일 최종개정.

277) 2017년 10월 2일 최종개정.

다.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안

2017년 3월에는 가짜뉴스를 척결하기 위해 나탈리 구레(Nathalie Goulet) 상원의원이 법안을 제출하였다. 이는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률의 법적용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으로,²⁷⁸⁾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처벌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법안²⁷⁹⁾에 따르면 가짜뉴스는 “선동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변조된 정보나 근거와 증거가 부족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 정의되며, SNS 등을 이용해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 자유형 1년의 집행유예(d'emprisonnement avec sursis)와 15,000 유로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Art. 226-12-1). 이러한 행위가 공권력을 담당하는 인물이나 기관을 향한 경우에는 자유형 3년의 집행유예와 75,000 유로의 벌금형으로 가중처벌 할 수 있으며(Art. 226-12-3), 일정한 조직에 의해 행해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및 100,000 유로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Art. 226-12-5). 한편 본 법안은 출판사나 방송사, 검색엔진 또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거짓 뉴스가 신고된 경우, 그러한 뉴스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출처 등에 대한 충분하고 상당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Art. 226-12-2).

본 법안은 소셜네트워크 등을 통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가짜뉴스를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한다는 점에서 독일의 네트워크집행법보다 강력한 대응책이라 볼 수 있다. 다만 독일의 네트워크집행법과 비교해 볼 때, 본 법안은 형사처벌을 예정하고 있음에도 소셜네트워크의 개념과 범주, 위법행위의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다. 소셜네트워크 등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제공의무와 관련해서도, 독일의 네트워크집행법과 같은 구체적인 행위 지침이나 기한 등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소셜네트워크 등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일정한 정보제공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어, 독일의 네트워크집행법과는 달리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표현물이나 콘텐츠의 합법과 불법을 결정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278) PUBLIC SÉNAT, “Fake news : la sénatrice Nathalie Goulet dépose une proposition de loi”, 2017.3.30., <https://www.publicsenat.fr/article/politique/fake-news-la-senatrice-nathalie-goulet-depose-une-proposition-de-loi-58064>, 2017.12.12. 최종방문.

279) 법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SÉNAT, Un site au service des citoyens, <http://www.senat.fr/leg/ppl16-470.html>, 2017.12.12. 최종방문.

비판으로부터는 자유롭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3. 민간 차원의 대응책

가.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페이스북과 프랑스 언론사의 공조

프랑스의 주요 일간지 르 몽드(Le Monde)를 비롯해 AFP통신과 BFM-TV, 프랑스 TV(France Télévisions), France Médias Monde, L' Express, Libération, 무료일간지 “20분(20 Minutes)” 등 8개의 언론매체는 대통령 선거를 맞이해 소셜네트워크에서 가짜뉴스가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페이스북과 협공조하기로 하였다. 대략적인 과정은 아래와 같다.²⁸⁰⁾

- (1) 사용자가 어떠한 콘텐츠에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확인필요”라고 신고를 제기
- (2) 팩트체크를 담당하기로 한 언론사가 사실여부 확인
- (3) 2곳 이상이 허위정보라고 판단한 경우, 해당 콘텐츠의 정확성에 대해 팩트 체커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깃발(“논쟁의 여지가 있음, disputed”) 표시
- (4) 사용자가 이 콘텐츠를 공유하고자 할 때 경고창이 열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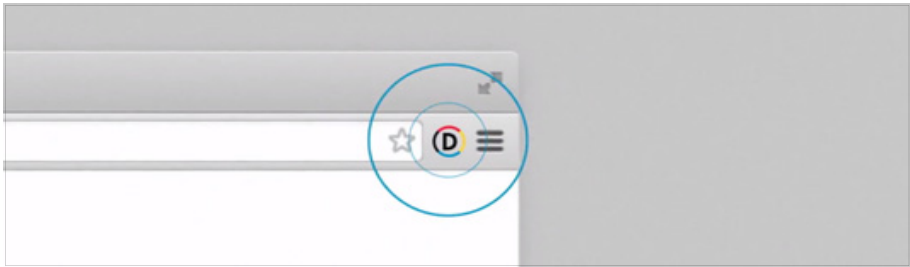
나. 르 몽드의 Les Décodeurs

프랑스 뉴스매체인 르 몽드(Le Monde)는 2017년 2월 초부터 독자로 하여금 정교한 팩트체크를 통해 검색을 행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디코딩 위젯인 “Les Décodeurs”를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²⁸¹⁾ 이 위젯의 목표는 독자에게 팩트 체커가 팩트체크 작업을 중복적으로 하지 않도록 하면서 독자들에게 이전에 사실확인이 된 주장을 빠르게 찾도록 하는 것이다.²⁸²⁾ 이 위젯은 구글크롬(Google Chrome)이나 파이어폭스(Firefox)

280) Le Mond, “Huit médias français s’allient à Facebook contre les « fake news »”, 2017.2.6., http://www.lemonde.fr/actualite-medias/article/2017/02/06/huit-medias-francais-s-allient-a-facebook-dans-sa-lutte-contre-les-fake-news_5075054_3236.html, 2017.12.12. 최종방문.

281) Mediashift, “Finding Solutions for Fake News”, 2016.12.2., <http://mediashift.org/2016/12/combats-fake-news/>, 2017.12.12. 최종방문.

등 브라우저에 인스톨할 수 있다.²⁸³⁾ 인스톨된 후에는 검색을 진행하는 동안 실시간으로 그 웹사이트가 신뢰할만한 사이트인지 아니면 대체로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고 있는지를 알려준다.



[그림 5-5] Les Décodeurs가 설치된 브라우저²⁸⁴⁾

Les Décodeurs를 이용해 언론인들은 각종 사이트를 다음과 같이 크게 다섯 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 이 사이트는 원칙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신뢰할만한 소스를 찾거나 그 출처로 돌아가 정보를 확인하는 데에 망설이지 마십시오.
- 이 사이트는 대체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출처가 불분명하고 정보를 별 다른 검토 없이 게시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요하며 다른 소스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정보의 원래 소스를 찾으십시오.
- 이 사이트는 대체로 거짓 정보나 착오를 일으키는 주제를 유포하고 있습니다. 신중히 다른 신뢰할만한 소스를 찾으십시오. 가능하다면, 정보의 원래 소스를 찾으십시오.
- 조심하십시오. 이 사이트는 진실한 정보의 확산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유머 또는 풍자 사이트입니다. 의심을 갖고 읽으십시오.
- 경고. 이 사이트는 아무런 출처도 제시하고 있지 않거나, 우리의 기준에 부합하기에는 그 신뢰성이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다른 출처를 찾아 정보의 출처로 돌아가십시오.

282) Poynter, "Le Monde wants to build a B.S.-detector", 2016.11.22., <https://www.poynter.org/news/le-monde-wants-build-bs-detector>, 2017.12.12. 최종방문.

283) 다만 윈도우(Window) 사용자에게 마이크로 소프트가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익스플로러(Explorer)에도 본 위젯을 인스톨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알려져 있지 않다.

284) 출처 : Le Monde, "Décodex : des extensions pour vérifier l'info directement dans votre navigateur Internet", 2017.2.1., http://www.lemonde.fr/les-decodeurs/article/2017/02/01/decodex-des-extensions-pour-verifier-l-info-directement-dans-votre-navigateur-internet_5072850_4355770.html, 2017.12.12. 최종방문.

다만 이 위젯은 각 사이트가 제공하고 있는 정보의 소스와 출처를 확인함으로써 사용자가 방문하고 있는 사이트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인지를 알려주는 것에 그치고 있으며, 그 사이트가 제시하고 있는 정보를 수용할 것인지 또는 믿을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맡겨져 있다.

제5절 일본의 대응 사례와 정책

1. 선거에 등장한 가짜뉴스 현황

일본에서 나타난 가짜뉴스의 대표적인 역사적 사례는 우리에게도 익히 알려진 내용이다. 1923년 관동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일본 내무성이 조선인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유포해 잔인한 학살로까지 이어진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오늘날 일본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가짜뉴스도 이와 맥을 크게 달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혐한을 조장하는 “대한민국민간보도(大韓民國民間報道)”라는 가짜뉴스 사이트²⁸⁵⁾와 이를 한국어로 번역해 게시하고 있는 “한국신문”이라는 사이트가 존재한다.

285) 이 사이트는 현재 폐쇄된 상태이나, 한국어 번역사이트인 “한국신문”은 여전히 접속할 수 있다.

한국 신문

Home 생활 사건 사고 정치
Text to Search...



불상 반환 거부해 한국 정부 쓴 소리 대통령령에 의한 한국군의 강제 징수도 시야



반 트럼프 데모 폭도 그치지 않고, 새로운 4명 사망 한국 전역에 퍼져 반미



한국 서울 시내에서 대규모 트럼프 대통령 퇴진 시위 방화 은행 습격



트럼프 대통령 정부 중추과 전화 회담 한 미 군사 협력 줄이기

POPULAR POSTS



한국 서울 일본인 소녀 강간 사건 판결 일전 무죄로



인육 공장 적발 기형아 통조림으로 노인의 햄버거



한국 해군, 중국 군적 잠수함 1척을 나포 한 척을 격침 사망자 불명



10 세 인기 아역 소녀가 임신 "이 업계에서는 흔하있는 일"



차기 미국 국무 장관, 위안부 문제로 한국에 무역 중단의 경제 제재



한국에서 148 세 노인 찾을 수 사실이라면 기네스 인정 여부



딸을 강간하고 4 명의 아이를 낳게 한으로 남성 아이돌 제포



반 트럼프 데모 폭도 그치지 않고, 새로운 4명 사망 한국 전역에 퍼져 반미

[그림 5-6] “한국신문” 메인화면 캡처(286)

“한국신문”에 게시된 가짜뉴스들을 살펴보면, 우선 한국 내에서도 일본의 가짜뉴스라며 보도된 바 있는²⁸⁷⁾ 기사를 볼 수 있다. 우선 서울법원에서 일본인 여자아이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1심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된 노무현에 대해 2심이 무죄를 선고했다는 뉴스가 등장하고 있다.²⁸⁸⁾ 2심을 담당했던 판사를 “김준 재판장”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마치 사실에 근거한 기사인 듯 작성되어 있다. 이 기사는 페이스북과 트위터로 1만 건 이상 공유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²⁸⁹⁾ 이 기사 외에 “한국 남서부 경찰청은 11일 인육을 가공 한 식품 제품을 가공·판매 한으로 식품 업계 국내 매출 3위 주식회사 모츠츠크 식품을 압수 수색했다고 밝혔다. 모츠츠크 식품은 통조림 제품이나 인스턴트라면으로 국내 소비량 2위의 대기업이며 국내에서는 파문이 일고 있다”²⁹⁰⁾는 기사, “22일 오전 한국 전역에 퍼져서 보이는 반 트럼프 시위 운동의 피해자가 새롭게 6명이 증가해 2명이 사망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제 연일 계속되는 국내에서 반 트럼프 시위 운동의 사망자 수는 6명이었다. 정부는 이 사태를 심각하게보고 한국군 특수 부대 ROKNSWF를 출동시켜 폭도로 변한 민중의 진압에 임하고 있다”²⁹¹⁾는 기사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첫 번째 기사에서 2심 재판에 대해 검찰이 “항소절차”에 들어갔다는 문장은 우리나라의 재판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며, 위의 기사 모두 - 그대로 인용한 앞의 문장에서도 볼 수 있듯이 - 전체적인 어투 또한 번역기를 돌려 번역한 부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작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혐한조장 가짜뉴스 사이트 외에 선거와 관련한 가짜뉴스 보도는 미국과 프랑스 대선의 가짜뉴스에 관한 기사, 또는 이들 선거에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관한 해외기사가 대부분이다. 일본 내 선거와 관련해서는 2017년 10월 22일에 실시된

286) <https://korean-newsspot.blogspot.kr/>, 2017.11.9. 최종방문.

287) 노컷뉴스, “‘한국인이 일본 소녀 성폭행’ 악질적인 日 가짜뉴스”, 2017.1.31., <http://www.nocutnews.co.kr/common/popprint.aspx?index=4725823>, 2017.11.3. 최종방문.

288) 한국신문, “한국 서울 일본인 소녀 강간 사건 판결 일전 무죄로”, 기사작성날짜 불명, https://korean-newsspot.blogspot.kr/2017/01/blog-post_58.html, 2017.11.6. 최종방문.

289) 노컷뉴스, “‘한국인이 일본 소녀 성폭행’ 악질적인 日 가짜뉴스”, 2017.1.31., <http://www.nocutnews.co.kr/common/popprint.aspx?index=4725823>, 2017.11.3. 최종방문.

290) 한국신문, “인육 공장 적발 기형아 통조림으로 노인의 햄버거”, 기사작성날짜 불명, https://korean-newsspot.blogspot.kr/2016/11/blog-post_28.html, 2017.11.6. 최종방문. 오탈자도 그대로 인용하였다.

291) 한국신문, “반 트럼프 데모 폭도 그치지 않고, 새로운 4명 사망 한국 전역에 퍼져 반미”, 기사작성날짜 불명, https://korean-newsspot.blogspot.kr/2017/01/4_23.html, 2017.11.6. 최종방문. 이 기사에 반 트럼프 데모라며 함께 실린 사진은 2008년 미국최고기 수입반대 집회 사진이다.

제48회 중의원 총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사례 정도가 보도되고 있을 뿐이다. 니가타현(新潟県) 제4구 후보로 출마한 자민당 소속 가네코 에미(金子恵美)가 “현지 지지자들 중에서 상대 후보의 후원회 임원으로부터 상대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본인(가네코)을 지지한다면 내일 당장 거래를 끊겠다는 협박성 전화를 받았으며, 상대후보에게 투표 하라는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에 대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상대후보 기쿠타 마키코(菊田真紀子)가 “자신에 대한 루머가 가네코 후보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데, 이는 완전한 가짜뉴스로서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2항 위반이므로, 경찰에 신고했다”라고 반박하였다.²⁹²⁾ 제48회 중의원 총선거 결과 기쿠다 마키코가 종전(제46회 및 제47회) 의원이었던 가네코 에미를 제치고 당선되었다.

2.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가. 일본형법

(1) 명예훼손죄

앞의 중의원 선거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히 선거와 관련하여 생성되고 유포되는 가짜뉴스는 특정인의 당선 여부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과거의 사실이나 날조된 허위의 사실이 적시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가네코 에미 후보가 페이스북에 게시했다는 글의 내용도 그것이 진실이든 허위이든 관계없이 누구나 접근하여 열람할 수 있는 페이스북이라는 소셜네트워크에 일정한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행위는 일본형법²⁹³⁾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일본형법도 우리 형법과 마찬가지로 명예훼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규정들은 각칙 제34장에 총 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제230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그 사실의 유무에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형법의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허위사실을

292) BLOGOS, “総選挙とフェイクニュースを総点検! BuzzFeed Japan編集長と判定 1/2”, 2017.10.21., <http://blogos.com/article/253797/?p=1>, 2017.11.3. 최종방문.

293) 2016년 6월 3일 최종개정, 6월 23일 시행, 법률 제54호.

적시한 것과 사실을 적시한 것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가짜뉴스에 기재한 사실이 허위이든 진실이든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본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가네코 에미 후보가 적시한 내용은 - 일단은 -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도모하는 것이었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 적시한 사실이 진실인 것으로 증명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제230조 제1항). 한편 그러한 행위가 공무원이나 공직선거에 의한 공무 후보자에 관한 사실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공익을 도모한다는 목적을 요하지 않고 오로지 그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되기만 하면 그러한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3항). 가네코 에미 후보의 게시물로 피해를 입게 된 또는 입게 될 상대방이 공직선거로 중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1항의 위법성 조각사유가 아닌 제3항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여, 가네코 에미 후보가 오로지 공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적시한 사실을 진실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게 된다.

별다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지 공개적으로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는 제231조의 모욕죄가 성립하여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피해당사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제232조).

(2) 업무방해죄

일본형법 제233조는 “허위의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이용하여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날조하여 뉴스 형태로 유포한 경우에는 정당의 고유 업무를 방해하였거나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사무를 방해하였음을 이유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

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일본의 공직선거법²⁹⁴⁾은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 등 선거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294) 2016년 5월 27일 최종개정, 시행일 미정, 법률 제49호.

을 두고 있다. 일본공직선거법상 벌칙규정은 제16장 제221조부터 제25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선거관련 가짜뉴스 제작 및 유포 등의 행위와 관련된 처벌규정으로는 제235조 허위사실공표죄가 있다. 그에 따르면 당선을 위해 공직 후보자나 공직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의 신분이나 경력, 그 사람의 정당이나 단체의 소속, 그 사람에 대한 다른 사람이나 정당, 기타 단체의 추천이나 지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제1항). 그리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직 후보자 또는 공직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개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공개한 자는 4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제2항). 제2항은 앞의 니가타현 사례에서 기쿠타 마키코 후보가 언급한 규정이다. 가네코 에미 후보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진실인지 여부와는 별개로 경쟁자인 기쿠타 마키코 후보를 선거에서 떨어뜨리려 했다는 목적이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가네코 에미 후보의 게시물이 기쿠타 마키코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이거나 왜곡된 사실인 경우에는 가네코 에미 후보는 본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한편 본 법률은 제251조 이하에 당선무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에 따르면 당선인이 본 장에 규정한 죄로 처벌받게 된 경우에는 당선도 무효로 한다. 다만 본 규정은 당선무효에서 제외되는 위반행위를 나열하고 있는데, 제235조 허위사실공표죄는 제외되는 위반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 죄는 국외범도 처벌한다(제255조의3). 즉 제235조 등의 죄는 일본형법 제3조에 따라 일본 국외에서 범한 일본 국민에게도 적용된다.

3. 민간 차원의 대응책 : 팩트체크 이니셔티브

(ファクトチェック・イニシアティブ)

가. 단체의 설립배경 및 취지

일본의 SNS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페이스북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트위터와 구글플러스(Google+), 인스타그램(Instagram)이다. 다섯 번째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SNS는 일본 고유의 SNS인 아메바(Ameba)이다.²⁹⁵⁾ 여전히 가짜뉴스와 혐오표현에 대

한 특별한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우려섞인 비판이 있는 가운데, 일본 내에서 이들 네트워크 제공자들이 독자적으로 가짜뉴스와 혐오표현을 예방·방지 또는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구축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움직임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 듯하다.

다만 팩트체크 이니셔티브(ファクトチェック・イニシアティブ, FactCheck Initiative Japan, FIJ)이라는 민간기구가 거의 유일하게²⁹⁶⁾ 루머와 진위불명의 정보를 검증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미디어와 플랫폼 사업자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넘쳐나는 보도와 담론에 대한 팩트체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일본에서는 여전히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팩트체크를 전담하는 조직이나 매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출발해, 특정 담론이나 정보를 검열하여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진위를 검증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정확한 사실을 인식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판단자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언론인과 학자 등 10여명이 모여 설립한 민간단체이다.²⁹⁷⁾

나. 2017 총선거 프로젝트

팩트체크 이니셔티브는 해외의 팩트체크 단체와 협력하고 최신지식이나 팩트를 체크하여 미디어나 개인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2017년도 중의원 선거에서는 이른바 “2017 총선거 프로젝트(2017総選挙プロジェクト)”를 실시하였다.²⁹⁸⁾ 본 프로젝트는 팩트체크 이니셔티브의 요청에 의해 여러 미디어가 팩트체크 협동프로젝트를 실시한 것을 일컫는다. 여기에 참여한 미디어는 BuzzFeed Japan과 GoHoo, Japan In-depth, ニュースのタネ(뉴스의 씨앗), ポリタス(폴리타스, politas) 등 5개이다. 본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골자로 진행되었다.²⁹⁹⁾

295) App Ape Lab., “日本と韓国SNS利用の違い [日韓SNSランキングTOP5付]”, 2016.2.17., <https://lab.appa.pe/2016-02/korea-sns.html>, 2017.11.3. 최종방문.

296) BLOGOS, “総選挙とフェイクニュースを総点検! BuzzFeed Japan編集長と判定 2/2”, 2017.10.21., <http://blogos.com/article/253797/?p=2>, 2017.11.3. 최종방문. 한편 NHK는 가짜뉴스 전파를 막기 위해 팩트체크팀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는 하나, KBS의 보도 외에 별다른 자료를 찾을 수는 없었다: KBS, “공영방송 총회 … ‘가짜뉴스’ 이슈”, 2017.9.14.,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548377&ref=A>, 2017.11.3. 최종방문.

297) <http://fij.info/about>, 2017.11.6. 최종방문.

298) BuzzFeed News, “真偽が危ういフェイクニュース時代の総選挙 日本でもファクトチェックが始まった”, 2017.10.10., https://www.buzzfeed.com/jp/daisukefuruta/fake-vs-fact-check-in-japan?utm_term=.jpMn5XJEA#.mo4J68G51, 2017.11.3. 최종방문.

299) FIJ, “2017年総選挙ファクトチェックプロジェクトについて” 참조, <http://fij.info/election2017->

- 참가 미디어는 팩트체크의 대상과 범위, 판단기준 등 총선을 대비한 팩트체크방침을 세우고 각자 팩트체크를 실시하고 이를 기사화해 각자의 사이트에 공개한다.
- FIJ는 참가 미디어가 기사화한 내용을 평가하고 팩트체크 지침을 준수하고 있다고 평가받은 기사를 순차적으로 팩트체크 이니셔티브 사이트에 소개한다.
- 이때 평가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되며, 하나의 게시물에 대해 3명이 돌아가면서 평가를 담당한다. 평가위원은 각 미디어의 담당자에게 평가의견을 송부한다.
- 참가 미디어는 팩트체크 담당자들이 상호간에 정보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기간동안 자체적인 팩트체크팀을 설치한다.
- FIJ는 정보공유지원팀을 설치하여, 별도의 사실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정보와 토론 등을 수집하여 각 미디어의 팩트체크팀에 공유한다.
- 프로젝트 종료 후에는 그간의 성과와 향후 과제 등을 논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본 프로젝트를 통해 행해진 팩트체크 사례 가운데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 2017년 10월 3일 마이니치신문 사설에는 “자민당의 선거공약에서 여성의 활약이라는 문자가 사라졌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GoHoo의 야나이 히토후미(楊井 人文) 기자가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자민당의 정책공약집인 “정책BANK2017”에는 분명히 “여성활약”이라는 항목이 있었던 것과, 비록 지난 중의원선거에 기재된 여성의 수는 줄어들었으며, “정책 팜플렛”에도 여성활약에 관한 언급은 없지만, 공약에서 “사라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였다.³⁰⁰⁾

(2) 2017년 10월 8일 아베마 TV(Abema TV)의 “철의부실(徹の部屋)”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아베 총리가 “대부분의 교과서에 자위대가 위헌이라고 기술되어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BuzzFeed Japan의 세야 켄스케(瀬谷 健介) 기자가 검증을 실시하였다. 세야 켄스케 기자는 문부과학성에 해당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을 문의하였으며, 추가검정을 통과한 모든 교과서를 확인해 본 바, “자위대는 위헌”이라고 단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경우는 없으며, “위헌이라는 주장도 있다”는 식으로 소개한 정도에

2, 2017.11.6. 최종방문.

300) FIJ, “自民公約から「女性活躍」消えた? 毎日の社説に事実誤認”, 2017.10.13., http://fij.info/archives/election2017/gohoo_03, 2017.11.6. 최종방문.

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³⁰¹⁾

(3) 2017년 10월 19일 모 블로그에는 “아베 총리가 유엔의 선거감시단 파견을 거부했다”는 내용이 게시되었다. 이에 대해 BuzzFeed Japan의 칸바 료스케(神庭 亮介) 기자가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유엔에 확인해 본 결과 유엔은 일본에 선거감시단을 파견할 계획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³⁰²⁾

제6절 각국의 정책 비교 및 시사점

1. 가짜뉴스에 대한 우려와 영향력

가짜뉴스는 이미 상당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미국 독립혁명과 프랑스 대혁명 시기에서부터 신라시대의 서동요, 심지어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까지도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이들 가짜뉴스는 대체로 일정한 정치적·사회적 영향력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최근에는 특히 선거와 유권자의 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왜곡된 정치지형을 형성하고자 하는 가짜뉴스의 폭증이 세계적 화두로 떠올랐다. 그리고 2016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는 가짜뉴스에 대한 적극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비슷한 시기에 중요한 선거를 치렀던 독일과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도 가짜뉴스로 인한 유권자 의사왜곡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였다.

가짜뉴스가 실제로 선거와 유권자 의사형성에 실질적으로 유효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다. 2016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소셜네트워크 이용자의 뉴스기사에 대한 신뢰도가 고작 5% 정도에 그칠 정도로 가짜뉴스의 영향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미국의 뉴욕 대학교와 스탠포드 대학교의 공동연구 및 영국의 독립적 팩트체크 기관 Full Fact의 조사도 가짜뉴스의 영향력이 매우 미미했

301) FIJ, “安倍首相「ほとんどの教科書に自衛隊が違憲と記述」は本当か”, 2017.10.21., http://fij.info/archives/election2017/buzzfeed_04, 2017.11.6. 최종방문.

302) FIJ, “安倍首相が国連の選挙監視団を拒否した」は本当か”, 2017.10.21., http://fij.info/archives/election2017/buzzfeed_05, 2017.11.6. 최종방문.

음을 보여주었다.

독일에서는 2017년도 연방하원 선거를 맞이하여 가짜뉴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공언한 극우정당이 당해 선거에서 상당한 약진을 보였는데, 다만 그것이 실제로 가짜뉴스를 활용한 덕분인지 단순히 현정부의 친이민 정책에 대한 반대여론이 증가하였기 때문인지는 분명치 않다.

가짜뉴스의 영향력에 대한 이와 같은 분석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우려는 대체로 공통된 것으로 보인다. 소셜미디어 활용도가 매우 높은 젊은 유권자들 사이에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확산될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며, 이로 인해 앞으로의 선거에 악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2. 가짜뉴스 제재정책의 방향성

가. 종래 형사처벌 규정 활용

영미권은 전통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중시해 왔다. 미국에서는 수정헌법 제1조를 근거로 표현의 자유를 매우 중시해 명예훼손죄를 인정하지 않거나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폐기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정치적 사이버사기 방지법도 민사 불법만을 규제하고 있을 뿐이다. 영국도 역사적으로 각종 유형의 명예훼손죄를 폐기해 왔으며, 다만 명예훼손법을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뿐이다. 그리고 민사불법이 되는 경우에도 실질적 악의(미국)가 있거나 중대한 해악(영국)을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공무원이나 공직자, 정치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실질적 악의가 없는 한 그 내용이 허위인 경우라 할지라도 민사불법조차 되지 않는다. 오히려 가짜뉴스의 악영향 및 가짜뉴스에 대한 제재보다는 “가짜뉴스라는 용어의 무기화(weaponisation of the term ‘fake news’)”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이는 언론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짜뉴스 자체보다 더 큰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독일과 프랑스, 일본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가짜뉴스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다. 특히 독일에서는 나치 집권의 역사를 고려해,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모욕에 관한 죄(형법 제185조부터 제188조)와는 별도로 국민 선동죄(형법 제130조)를 두고 있다. 다만 가짜뉴스에 대해 이와 같은 형벌규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영미법계처럼 표현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중시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와 언론·사상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강화

페이스북과 트위터, 구글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는 대체로 팩트체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해당 기사의 진위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즉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자체적으로 가짜뉴스 여부를 판단하여 삭제하는 등의 직접조치는 행하지 않고 있다. 가짜뉴스에 대한 우려에 비해 이들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의 행동은 상당히 제한적인 것으로 비추어지고 있는데, 이는 이들 기업이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에서 설립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영미법계 국가도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에게 점차 민사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추세를 보이고는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정치적 사이버사기 방지법과 영국의 명예훼손법이 그것인데, 다만 이들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의무 강화와 관련해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운영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소셜네트워크의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혐오표현과 가짜뉴스 등 불법 콘텐츠에 대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운영자에게 불법 콘텐츠에 대한 차단 및 보고의무를 규정한 독일의 네트워크집행법이다.

다만 본 법률에 대해서는 “소셜네트워크”의 기준과 서비스제공자의 범위, 과태료의 액수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특히 네트워크상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 등 헌법적 기본권을 현저히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본 법률에 따르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는 과태료를 회피하기 위해 일정한 범주의 합법적 콘텐츠를 임의로 삭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다. 또한 사기업에 불과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표현물이나 콘텐츠의 합법과 불법을 결정하도록 강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3. 시사점

우리 현행형법상 가짜뉴스는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 이는 독일이나 일본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 대체로 유사하다. 다만 전통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영미법계에서는 형사처벌보다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민사배상책임을 인정할 뿐이다. 유엔은 - 특히 사실적시에 의한 -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의 삭제를 권고하고 있으며,³⁰³⁾ 이미 많은 나라에서 명예훼손죄가 삭제되거나 사문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네트워크 사업자는 가짜뉴스를 예방하거나, 가짜뉴스의 정치적·사회적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체적 대책으로 제3의 팩트체크 기관과 협력을 통해 의심스러운 콘텐츠에 대한 팩트체크를 실시하고, 그 콘텐츠의 진위 여부를 사용자 스스로 판별할 수 있도록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미국과 영국에는 이와 같은 서비스 제공을 강제하기 위한 법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독일에서만 불법게시물을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삭제까지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의무를 부여한 이른바 네트워크집행법이 제정되었을 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독일의 네트워크집행법을 참조하여, 예컨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에 허위의 콘텐츠에 대한 팩트체크 또는 삭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삽입하거나 별도의 조항을 두어 이와 같은 의무를 법제화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가짜뉴스”라는 형태보다는 “혐오표현”이라는 내용에 중점을 둔 법률이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혐오표현을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재규정을 두더라도 미국과 영국, 그리고 독일과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303) 한겨레, “현재, 유엔 폐지권고에도...“사실 기반한 명예훼손’ 형사처벌, 합헌”, 2016.2.29.,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2664.html, 2017.12.13. 최종방문.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

제1절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확산방지를 위한 법적 대응 방안

가짜뉴스의 대응책으로 가짜뉴스 전반에 대한 법적 대응책 마련을 통한 해결 방안이 쉽게 거론되고 있다. 입법을 통한 - 특히 형법적 제재를 통한 - 대응은 법치주의 원칙 위배, 형법의 최후수단성 위반,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회의적인 시각 또한 만만치 않다.

가짜뉴스의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거짓이거나 거짓일 수 있는 정보를 담은 뉴스는 규제해야 하지만 풍자, 해학, 루머까지 가짜뉴스의 범주에 포함시킨다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가짜뉴스는 공익을 해하는 허위통신 유포로 처벌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 법규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죄형법정주의에 의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³⁰⁴⁾ 이러한 맥락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하에서는 거짓, 조작된, 기만적인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규제 법률 개관-사전 규제의 관점에서

가. 법적 규제의 대상으로서 가짜뉴스의 문제점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가짜뉴스(fake news)라는 용어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부터

304) Sook Yeong Hong, Eui Chul Jung, 「Fake News and Journalism's Credibility Crisis」, 『Crisisonomy』 Vol.13 No.8, 2017, 47쪽. 현재 2010.12.28. 선고 2008헌바168.

쟁점으로 부각된 것이 아니라, 미국 및 유럽 등지에서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사용된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 비교하여 표현물에 관한 규제(내용규제)에 신중한 입법 태도를 견지해 오던 국가들에 있어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과학 또는 사회현상적 차원에서 가짜뉴스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의 법현실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를 규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이미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가짜뉴스 현상이 문제시 되는 것은 이러한 뉴스를 통하여 허위의 사실들이 매우 빠르고 광범위하게 유포될 수 있다는 점인데, 이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정보들을 통제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수단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가짜뉴스를 “언론의 외양적 진실스러움을 훔친 기만적 가짜정보”로 정의할 때, 이는 인터넷언론사가 아니면서 그러한 외양을 갖추어 마치 공식적인 언론사의 보도인 것과 같은 외양을 가지는 게시물 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외에도 마치 TV뉴스 등의 보도화면을 캡처한 것과 같이 이미지를 조작한 경우도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가짜뉴스라기보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특정인의 명예 및 사생활을 침해하는 전형적인 불법정보로서 규제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가짜뉴스는 공식적인 언론사의 보도인 것과 같은 외양을 가지는 게시물 등이라고 봐야할 것이다. 이러한 불법정보로서 가짜뉴스는 어떠한 방식으로 규제가 가능할까? 특히 표현의 자유 등의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견제하면서 사전적인(ex ante) 규제가 가능할지 여부는 모든 규제기관의 관심이기도 하다. 이하에서는 사전 규제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먼저 이러한 규제가 가능할 수 있는 입법적 장치들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인터넷상 가짜뉴스가 문제시 되는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 공식선거법 상 규제조항들 중 가장 핵심적인 규정들은 동법 제82조의5 이하에 제시되어 있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및 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에 관한 규정이다.

-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 그 밖에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사실·논평·사진·방송·동영상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학계, 법조계, 인터넷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 ③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④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상임위원 1인을 두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 ⑤ 정당의 당원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⑥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선거보도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권리구제 기타 선거보도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⑦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⑧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둔다.
- ⑨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 및 상임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지 못한 보도, 또는 선거의 공정성 등을 저해하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규제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원회를 법제화한 것은 분명 표현물에 대한 규제 여부 판단에 있어

신중함을 기하기 위한 공법적 차원의 입법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언론사’를 그 규율대상으로 하면서, 그 범위를 인터넷언론사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자 등까지로 넓히고 있다. 즉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를 규율한다. 그런데 가짜뉴스를 제공하는 자들의 경우 언론사라고 보기 힘들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규율 및 심의 대상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 인터넷언론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 제2조(인터넷언론사의 범위)** ① 법 제8조의5제1항에 따른 인터넷언론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1. 독자적인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을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2. 신문 및 방송사업자 등이 직접 운영하거나 별도 법인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 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신문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 나. 「방송법」 제2조제3호의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 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정기간행물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 라.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뉴스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3. 제1호 및 제2호의 인터넷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4. 그 밖에 위 각 호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로서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보지 아니한다.

1.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2. 선거운동을 하는 기관·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3.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보도내용 및 운영양태 등을 고려하여 인터넷언론사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즉 위 규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는, 결국 인터넷언론사로서 인터넷선거보도심 의위원회의 심의 및 규율대상은 언론사 및 그와 유사한 지위를 공적으로 인정받은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법 위반 선거정보 전송 및 게시

결국 가짜뉴스를 제공하는 웹페이지 등은 언론사의 외양을 갖추고 있지만, 법적으로 언론사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반 게시물, 즉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 전송(게시물)에 관한 규제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관해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4는 다음과 같다.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②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

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또는 후보자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전송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후보자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으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삭제요청 또는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한 정보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요청 또는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⑤제3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자는 당해 정보가 삭제되거나 그 취급이 거부·정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요청을 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위법한 정보의 게시에 대한 삭제 등의 요청, 이의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2항은 명시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적인 사항을 규정하면서, 동조 제3항에서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 및 후보자가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관련 정보의 삭제 및 접근제한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³⁰⁵⁾

305) 이는 사실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4항에 규정되

결국 가짜뉴스라는 형식으로 특정 후보자를 직접적으로 비방한다든가,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고의적으로 배포 및 전송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상 다수의 조항³⁰⁶⁾에 의해 그 불법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가지는 정보 전송 등의 행위는 동법 제16장 이하에 규정된 조항들에 의해 처벌된다.

라. 기타 가짜뉴스 관련 규정

정보통신망을 통한 선거정보의 전송 및 유통이라고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공직선거법 적용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기본법 및 형법 등의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우선 정보통신망법상 적용될 수 있는 동법 제44조의2 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게시물 ‘임시조치’ 규정이다. 이 규정은 개인의 명예 및 사생활 등 권리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권리침해주장자)가 관련 게시물의 삭제 등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은 받은 자가 삭제 여부 판단이 어려우면 당해 게시물에 관한 접근 제한조치(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규정이다.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 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

어 있는 “임시조치”의 규정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306) 이에 관해서는 “누구든지”라는 법문을 활용하고 있는 다수의 조항들이 연관되어 있다. 가짜뉴스 행위의 불법성과 관련한 대표적인 규정들로는 「공직선거법」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포 등 금지) 제1항,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제1항,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51조(후보자 비방죄) 등이 언급될 수 있다.

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망법은 불법정보의 유통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즉 동법 제44조의7 제1항은 불법정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항 제2호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있어, 이는 전형적인 가짜뉴스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가짜뉴스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 형법과 관련해서는 이미 주지하다시피 명예훼손 및 모욕 등에 관한 규정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전송행위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2. 사전규제 방식의 가능성 모색

가. 사전규제의 내재적 한계

가짜뉴스의 경우에도 그것이 누군가 의도적으로 제작 및 유포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기본적으로는 표현물로서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사이버상의 불법정보 규제들은 대부분 사전규제를 설정

하기보다는 사후적으로 관련 사안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사후적으로 규제를 한다고 할지라도 표현물의 경우에는 그 불법성을 일의적으로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협의체 더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심의 자체도 국가기관에서 수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표현물에 대하여 국가가 직접적으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그 불법성이 명확하게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최근 가짜뉴스뿐만 아니라 불법성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받는 정보들이 매우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SNS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를 사전에 규제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전 규제 시도들은 대부분 관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사업자) 등에게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향성을 보이는데, 이러한 시도들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표현되기 이전의 사전억제는 그 성질상 언론·출판의 자유와는 양립할 수 없다. 연혁적으로 보아도 영국의 언론의 발달사가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언론·출판의 자유는 사전검열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사전억제로부터의 해방이란 언론·출판사상 일대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룬 것이었다. 사전억제(prior restraint) 금지의 이론은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금지와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제의 금지로 나타나고 있다. 검열은 사상발표 전에 국가기관에 의하여 그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일정한 사상표현을 저지하는 제도, 즉 사전검열을 의미하는데 검열의 금지는 그러한 사전검열의 금지를 의미한다. 또한 집회·결사에 대한 사전적 허가제도 금지된다.

물론 '사전억제 금지의 원칙'은 실제로 인터넷상의 표현에는 사실상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WEB 2.0을 넘어서서 연결성이 강화 및 발전하는 경향에 있는 네트워크의 현실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그 이유는 특정 의견을 매체를 통하여 개진하는 순간 그 내용이 순식간에 전송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네트워크상에 이미 오른 표현은 불특정 다수인이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이후의 것이므로 그에 대한 제한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전제한이 될 수 없는 것이다.³⁰⁷⁾

307) 배원, 「정보관련 기본권의 독자적·통합적 보장을 위한 시론」, 「헌법학연구」 제7집 제2호, 2001, 94쪽.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전억제 금지의 원칙을 일의적으로 배제하는 국가 및 공공기관에 의한 모니터링 의무 부과는 분명 위험적인 행위로 평가받을 소지가 큰 것은 분명하다.

나. 사전규제 유사효과 도출 방안 검토

기본적으로 가짜뉴스는 정식적인 언론사가 아님에도 언론사와 같은 외관을 통해 독자들을 유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기본적으로 우리 현행법상 인터넷 언론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사무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등록과 관련해서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규정되어 있다.

제9조(등록) ① 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또는 관리하거나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기관이 그 소속원에게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명칭(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한정한다)
2.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상호 및 명칭(인터넷뉴스서비스에 한정한다)
3. 종별 및 간별(신문에 한정한다)
4. 신문사업자와 신문의 발행인·편집인(외국신문의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그대로 인쇄·배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인쇄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신문사업자 또는 인쇄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5.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및 편집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인터넷신문사업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6.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배열책임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7. 발행소의 소재지
8. 발행목적과 발행내용
9. 주된 보급대상 및 보급지역(신문에 한정한다)
10. 발행 구분(무가 또는 유가)
11.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 전자적 발행에 관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를 발행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를 발행인으로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다른 이어나 임원을 발행인으로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신문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사항 중 간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1. 일간(격일 또는 주 3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주간(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등록한 때에는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 ⑤ 이미 등록된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정기간행물 또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뉴스통신의 명칭과 같은 명칭의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는 등록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명칭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과적으로 이상과 같은 절차를 통해 공식적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가 인터넷언론사와 같은 외관을 주거나, 인터넷언론사로서 기능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등록을 이행하지 않고 인터넷신문을 발행하거나 공표한 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규정하고 있다.

-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거나 공표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거나 공표한 자

결국 가짜뉴스를 사전적인 규제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규정은 바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상 과태료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은 가짜뉴스를 통한 위법행위를 제약하기에는 미약할 수 있기에, 이를 상향조정하거나 이와 관련한 형사제재를 별도로 규정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다. 해외 사이트 차단 및 절차 간소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인 선거 관련 허위정보가 아니라 가짜뉴스 사이트 등이 법적 쟁점으로 부각한 명확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해외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볼 때 문제시되는 뉴스 및 게시물의 전송이 자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아니라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가짜뉴스 사이트의 영향력을 제약하기 위해서는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의 차단에 효과적일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두어야 하는데, 현행 공직선거법 제84조의4 제4항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관련 정보 취급의 거부, 제한, 정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규정을 활용할 수 있다. 즉 해외 사업자(사이트 등)들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지만 이들에 대해 실효적임 법집행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과 국내 이용자들간의 정보전송을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망사업자)들에게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이들은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84조의4에 따르면, 최초 관련 정보의 삭제 및 취급거부 등을 각급선거관리위원회와 후보자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후보자의 경우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재차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조치를 요청하고, 그 이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절차상 신속성을 제고함은 물론이고, 종래 후보자의 삭제 등의 요청을 명문화한 현행 규정에 관한 비판 등을 감안하여, 후보자의 경우에도 애초에 삭제 등 조치의 요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하도록 규정하는 것도 다소나마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허위 정보 도는 가짜뉴스의 급속한 확산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형법, 선거법 상 형사처벌 규정 정비

독일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운영자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을 부하는 법률안(NetzDG)과 같은 형법의 정비, 선거법상의 형사처벌 규정 정비를 통해 가짜뉴스의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자는 안(案)이 있다. 여기에서 형사처벌을 통한 가짜뉴스의 대응방안이라 함은 가짜뉴스 생산·유포·확산자에 대한 직접규제로서의 형사적 제재 방법, 행정적 규제로서의 정부와 사업자들의 가짜뉴스 방지조치, 그리고 가짜뉴스 매개자로서의 인터넷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가능할 수 있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형법과 공직선거법상 형사처벌 규정을 통해 가짜뉴스의 책임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가짜뉴스의 전체적인 대응으로 형법과 선거법의 어떤 정비를 통해 가능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가짜뉴스의 위력을 실감하고 대책마련에 나선 외국의 경우는 어떤 형사적 제재방안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추후 법적 대응 방안마련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가. 가짜뉴스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적 규제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다. 가짜뉴스로 인한 명예훼손도 일반적으로 명예훼손과 다르지 않으므로 같은 법리에 따라 규율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명예훼손법(Defamation Act 1996)을 통해서 명예훼손 범죄를 규제하고 있다. 독일은 형법 제185조를 통해 모욕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도 1881년의 ‘언론·출판법’에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규제는 ‘언론·출판법’과 ‘시청각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은 형법 제34장에 명예에 관한 죄를 규정하였다. 중국은 인터넷정보서비스관리방법,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인터넷 안전수호를 위한 결정을 통해서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을 규정하였다.³⁰⁸⁾

다만, 우리의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정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했다.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의

308) 한갑운·윤종민, 「가짜뉴스의 규율방법에 관한 법적 고찰」, 『과학기술과 법』 제8권 제1호, 2017.6., 71쪽.

자유는 허용되어야 하고 예외적인 경우를 금지해야 하는데, 우리 공직선거법은 규율하고 있는 선거운동의 범위가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에 더 가깝고, 워낙 복잡다기하고, 일관성을 찾을 수 없어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혹은 후보가 되려는 자도 그 모든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을 숙지하고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이다.³⁰⁹⁾ 실제로 선거가 끝나면 고소, 고발이 이어지고 - 선거 불복의 심리가 대체적으로 작동하긴 하지만 선거과정에서 열기가 과열 되어 비방, 흑색선전이 난무해 공직선거법 위반을 검토하여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대부분이다 - 또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많이 제기되지만, 공직선거법 조항들이 서로 연계되어 있는 조항들이 많아, 하나를 위헌 결정하면 연관된 모든 조항들까지 위헌 결정이 내려지는 문제가 뒤따라 헌법재판소도 위헌 소지가 다분하여도 쉽게 위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입법적 해결을 바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공직선거법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 또한 일관성을 상실하여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³¹⁰⁾ 따라서 공직선거법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허용하고, 선거운동의 자유 또한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를 기조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설 필요가 있어 보인다.³¹¹⁾

309) 김중철,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적 검토 - 소위 '정봉주 사건'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22권 제1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3., 7-9쪽.

310) 하나 예를 들면 지난 2015년 기각결정이 내려진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이다. 이는 선거 기간 동안 인터넷사업자로 하여금 선거계시물에 대한 인터넷 실명제를 의무화하고 있는 법안이며 이를 어겼을 시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처벌이 내려진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7월 30일 합헌결정을 내렸다(2012헌마734 2013헌바338병합). 그러나 '인터넷실명제'에 대해 표현의자유 침해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로 위헌결정을 내렸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2호에 대한 결정(헌재 2012.08.23. 선고 2010헌마47)과 같은 사안임에도 다른 결정을 내려 논리의 일관성을 상실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판결에서 공직선거법의 목적이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등을 통한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이 유포될 경우 언론사의 공신력과 지명도에 기초하여 광범위하고 신속한 정보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함이라는 이유를 들어 합헌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인터넷 공론장의 특성상, 일명 '국정인 댓글 사건'과 같이 공권력이 직접 선거에 개입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려 하기 위한 '작전 수행'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단지성의 발현 공간으로, 허위, 왜곡된 사실 등은 오히려 더 빠른 시간 안에 수정 되고 자정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간과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이와 같은 인터넷언론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인터넷상의 의견표시는 그 파급력이 심대할 수 있지만 바로 그러한 의견표시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가진 네티즌들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사회환경이라는 점에서 가장 전형적인 '사상의 자유시장이론'에 입각한 자율적 정화에 맡겨야 할 부분을 강제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측면도 간과하였다.

311) 방승주, 「선거운동의 자유와 제한에 대한 평가와 전망」, 『정치관계법 30년 평가와 전망 : 선거와 정당 제도』 정기학술대회 발제문, (사)한국헌법학회 제102회 정기학술대회, 2017.5.19.,

나. 재산취득을 위한 가짜뉴스 규제

가짜뉴스로 인한 재산편취는 가짜뉴스를 제작·배포하여 자신의 재산적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일정한 재산적 손해를 끼는 행위를 말한다. 보통은 전자거래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통해 규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짜뉴스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대한 형사적 제재는, 영국의 경우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 Act of 2000 397조(8)항에 근거하여 처벌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금융감독 규정에 의해 제재하고 있다.³¹²⁾

우리의 경우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분류되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등의 관련 법률의 규율을 받는다.³¹³⁾ 보이스피싱은 재산편취의 목적으로 전기통신을 이용한 사기범죄이고, 사이버상의 가짜뉴스 유포로 인한 재산편취의 목적이 있는 경우도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함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적용으로 인한 형사적 제재도 가능할 수 있다.³¹⁴⁾

다. 선거목적의 가짜뉴스 규제

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기 위해, 또는 선거에 혼란을 초래하거나 선거질서를 파괴할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제작·유포하는 행위자에 대하여는 보통 선거법을 통해 이를 규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앞서 상술한 바와 같다.

28-47쪽

312) 정윤모·이승진, 「주요국의 불공정거래 조사 및 제재의 분석과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2012.12, 64-71쪽 : 312) 한갑운·윤종민, 「가짜뉴스의 규율방법에 관한 법적 고찰」, 『과학기술과 법』 제8권 제1호, 2017.6., 72쪽.

313)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김대근·전현욱·김현수, 「다중사기범죄 유형분석 연구-전기통신금융사기와 유사수신을 중심으로」, 대검찰청 용역보고서, 2016. 특히 제2장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태와 쟁점 부분 참조.

314) 신종금융사기범죄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에 대해서는 김대근·임석순·김기범·강상욱, 『신종금융사기범죄의 실태 분석과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기술적 수단을 사용한 사이버 금융사기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참조. 특히 제3부 제4절 피해금 환급절차 부분 참조.

라. 사회혼란 야기를 위한 가짜뉴스 규제

사회혼란을 목적으로 하는 가짜뉴스는 그 특성상 행위자를 규제하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형사적 제재를 통해 규율하는 것은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시행하고 있다.

사회혼란 유발 목적의 가짜뉴스에 대한 형사적 제재가 가능한 외국의 법률로는 영국의 공중안전법(Public Order Act 1986)을 들 수 있다.³¹⁵⁾ 즉 영국은 동 법률을 통해 통신 기타 미디어 매체에서의 인종차별적 표현물을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가짜뉴스가 이 유형의 해당하는 경우는 이 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이 가능하다.³¹⁶⁾

우리의 경우 인종, 성적지향, 성별 등의 차별 및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일반적 혐차별 금지법 제정이 무산되었고,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하여 전기통신망법 등을 통해 형사 처벌을 하고 있다.

4. 정보매개자에 의한 가짜뉴스 유통·확산 규제

가짜뉴스도 일반적인 기사의 한 형태를 띠고 있고, 정보유통에 해당하므로 가짜뉴스의 유통과 관련한 정보매개자 즉,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형사적 및 행정적 규제가 가능할 것인지가 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독일은 지난 9월 총선을 앞두고 정보매개자(SNS 운영자)에 대한 형사제제 입법안을 추진하였다. 대체로 가짜뉴스의 확산이 대부분 정보매개자가 운영하는 인터넷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고 있고, 이로 인한 불법행위 양태와 관련해서는 종래의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규제 법리를 통한 규율로는 부족하거나 애매한 측면이 있어 가짜뉴스와 관련하여 정보매개자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규제법안 마련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는 측면이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이제 막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315) 영국의 공중안전법(Public Order Act 1986)에 대한 상세한 분석으로는 Ramsay Peter, *The Insecurity State: Vulnerable Autonomy and the Right to Security in the Crimi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참조.

316) 한갑운·윤종민, 「가짜뉴스의 규율방법에 관한 법적 고찰」, 『과학기술과 법』 제8권 제1호, 2017.6., 73쪽.

그러나 성급한 입법은 자제하여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³¹⁷⁾

왜냐하면 가짜뉴스라는 것 자체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이용자들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잘못된 여론형성을 유도하는 것이 주목적이므로, 이용자들이 그 뉴스가 사실이 아니란 점을 인식하게 되는 순간 그 존재가치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용자들이 스스로 진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소셜네트워크 운영자가 다른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면, 그 운영자에게 형법적 책임을 가할 이유가 없어진다. 형법적 위해가 아닌 다른 기술적 수단으로 문제의 해결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최후수단에 해당하는 행법의 개입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적 규제영역으로 남겨두어 해결해야 하고, 아울러 시민교육, 언론교육을 통해 의식을 전반적으로 제고하는 방향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대안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짜뉴스도 결국은 표현의 자유의 논란을 비켜갈 수는 없고 가장 좋은 '사상의 자유 시장' 이론에 따라 시장에서 사장되는 것이 법으로 강제하는 것보다 결과적으로는 더 높은 효용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5.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입법적 대응 모색

가. 현재 법적 담론 동향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대두

가짜뉴스 현상이 세계적으로 문제시 되면서,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입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언론 등을 통해 상당히 광범위하게 전파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학계의 주된 동향은 종래 허위사실 유포 등에 관한 법률상 규정들을 넘어서는 규제를 설정할 수도 없고, 만일 그렇게 될 경우 과도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317) 이가희, 「가짜뉴스 규제 방안 : 허위사실 표현의 헌법적 보호 여부 및 과잉금지원칙에 따른 규제 합헌성 검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7, 58-65쪽 : 한갑운·윤종민, 「가짜뉴스의 규율방법에 관한 법적 고찰」, 『과학기술과 법』 제8권 제1호, 2017.6., 84쪽 : 신상현, 「위법한 명예훼손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의무에 관한 소셜네트워크 운영자의 형법적 책임 - NetzDG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법학연구』 제20권 3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9., 85-87쪽 : 장휘일, 「가짜뉴스의 심각성과 법적대응방안」,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제10권 제1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55쪽.

될 수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결국 사이버 또는 인터넷 선거와 관련한 쟁점도 종래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던 허위사실 등에 기반한 정보의 유통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 여부로 재차 회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재 상황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허위정보의 급속하고 광범위한 유통이 극대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다소 비규제적 방식은 정보 소비자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 방안이 대두되고 있다.

즉 가짜뉴스 및 허위정보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직접적인 규제를 이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허위정보 판별에 대한 인지적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자는 대안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가짜뉴스 및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허위정보는 청소년이나 노령층에게 영향력이 높다는 측면이 부가되면서, 이러한 리터러시 교육 강화 대안은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나. 언론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팩트체크 기능 의무화 검토

언론 등의 팩트체크 기능 수행, 그리고 최근 정부 R&D가 주목하고 있는 가짜뉴스의 자동화된 선별은 중요한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만큼 신속하고 대규모의 정보유통 속에서 진실을 가려내는 작업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런데, 이러한 팩트체크 기능은 기본적으로 언론사 등이 자신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채택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일 뿐 이를 법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영업수행의 자유 제한이 될 수 있다.

특히 가짜뉴스 등을 통한 허위정보의 유통은 언론사 등의 팩트체크 기능을 의무화 하더라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언론사 자신이 생산한 정보에 대한 팩트체크를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며, 팩트체크가 불가능한 영역에서 주로 허위정보가 유통된다는 점에서, 이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사업자들의 규제부담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특정 규모 이상의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적 의무부과를 상정해 볼 수도 있을 것이나, 기본권의 부당한 제한 가능성은 마찬가지이다.

다. 공직선거법 개정 가능성 검토

가짜뉴스와 관련하여 현재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요인들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공직선거법 상 규제의 완화에 관한 논의가 주류를 이루어 왔던 상황을 감안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하에서는 가짜뉴스와 관련하여 논의가 가능한 개정 요소들을 제시하는 데 그치고자 한다.

(1)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기능 확대

공직선거법 제8조의5에 규정되어 있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인터넷언론사들의 선거보도 공정성에 그 규제적 범주가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동 위원회가 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인터넷언론사는 주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근거를 두고 있어, 새롭게 출현하는 언론과 유사한 서비스까지 규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인터넷언론사 사이트가 급격하게 증가함과 아울러, 1인 미디어를 통한 유사보도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 위원회의 역할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조직 및 분장 영역(특히, 인터넷언론사의 개념적 범위) 개편을 통해, 가짜뉴스 등 유사보도행위에 관한 공정성 규제를 이행할 수 있는 대안을 구상해 보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사이버부정감시단의 기능 명확화

우리나라에서 가짜뉴스 유포의 본질이 사이버부정선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분장 영역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공직선거법」 제10조의3에 규정되어 있는 사이버부정선거감시단의 역할을 명확히하고 또한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사이버부정선거감시단은 공직선거법 제10조의3에 의하여 그 인적 구성이 제한되어 있는데, 향후 인터넷을 통한 선거 운동 및 정보의 유통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이버부정선거감시단을 확대 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터넷 기술 및 저널리즘에 관한 전문가들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선거관리위원회 자체 팩트체크 링크 사이트 운영

향후 현실적으로 유력 언론사들의 경우 선거시 팩트체크 사이트를 운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더라도, 팩트체크 사이트 자체가 가짜 정보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중앙 및 각급 선관위의 입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들의 팩트체크 사이트를 종합하는 링크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특정 언론사에 대해 신뢰를 부여함으로써 언론사간의 공정 경쟁을 방해하는 결과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사 선정 기준 등을 법률에 대강이라도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4) 선거정보 활용 리터러시 교육 근거규정 신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거가 아닌 일반 정보에 대한 리터러시 교육 강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에 선거정보 습득과 이해에 관해 일반 대중 및 각급 학교를 중심으로 한 이용자 리터러시 교육을 공직선거법 상 제도화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다른 정보의 유통과는 달리 선거와 관련한 정보의 유통은 사후적인 대응이 별반 의미를 가지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용자들이 자체적으로 허위정보인지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 팩트체크를 하고자 할 때 어떤 사이트를 이용하면 좋을 것인지의 판단 등을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6. 주요 언론 및 인터넷사업자의 팩트체크 법적 의무화?

가짜뉴스의 제작과 유포를 사전에 막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다. 정보통신 특히 인터넷과 관련하여서는 '방패가 아무리 강하여도 언제나 그 방패를 뚫는 창'은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짜뉴스의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 및 활동 방안을 강구하는 데 각 국가마다 깊은 고심을 하기 마련이다.

주요 언론 및 인터넷사업자에 대해 팩트체크를 법적으로 의무화하자는 안도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자칫하다간 언론사와 인터넷사업자에게 사전검열 의무를 부과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문제다. 꼭 법적으로 의무화 하지 않더라도, 가짜뉴스의 확산지로 전락하게 되면 언론사와 인터넷사업자에게는 신망의 상실 등으로 이어져 스스로 자정을 위한 노력에 나서기 때문에 자율적 규제를 유도하는 측면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팩트체킹 강화 등 가짜뉴스에 대처하는 기술적 기반이 되기도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실례로, 페이스북의 경우 페이스북의 공유를 통한 가짜뉴스 확산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자, 결국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를 거친 후 가짜뉴스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페이스북이 IFCN(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와 제휴를 맺어 페이스북에 유통되는 가짜뉴스를 가려내는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³¹⁸⁾

또 페이스북은 가짜뉴스를 찾아내서 삭제하는 것을 넘어서, 이용자들이 가짜뉴스로 보이는 인기 있는 스토리를 공유할 경우 ‘관련 기사(Related Articles)’라고 불리는 새로운 기능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같은 주제에 대한 다른 출처의 기사들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이 뉴스의 진위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유도하였다. 또 ‘논란이 있음(disputed)’ 표시기능을 시작하는 등 제3자가 기사의 진위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대만의 ‘타이뉴스에이전시’는 채팅앱 ‘라인’을 이용해 기사검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구글’도 사실 확인 형식을 갖춘 기사에 자동으로 ‘팩트체크’라는 꼬리표를 붙여 주는 기능을 만들었으며, 인공지능을 활용해 기사 댓글에서 혐오발언을 거르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구글이 후원하는 팩트체킹 그룹 ‘크로스체크(CrossCheck)’가 활동을 게시했는데 통신사 AFP, 르몽드, 르피가로, 리베라시옹 등 프랑스 주요일간지, 영국 BB뉴스와 채널4, 미국의 블룸버그통신 등이 참여하여 미확인 보도의 사실관계를 규명

318) 김현재, 「페이스북 ‘가짜뉴스’와의 전쟁…독립기관에 팩트체크 위탁」, 『연합뉴스』, 2016.12.16, 링크<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16/0200000000AKR20161216011200091.HTML>(최종검색일 : 2017.12.12.)

하고 있다. 구글은 2016년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 '팩트체크'를 표시하는 서비스를 추가했으며 한국에도 2017년 4월초부터 이 서비스를 도입하여 시행 중이다.³¹⁹⁾ 이처럼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더라도 각 언론사와 업체들은 신뢰와 정확성을 기반으로 하므로 스스로 신망에 대한 위협을 현실적으로 그대로 방치하지는 않게 된다. 그러한 자율적, 자정적 노력을 장려하는 방안이 입법을 통한 해결 보다는 사전 예방적으로 훨씬 더 높은 효용가치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³²⁰⁾

제2절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피해 최소화 방안

가짜뉴스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근본적인 피해 최소화 방안은 시민의식의 제고가 될 것이다. 결국 교육을 통해 일상의 문화로 스며들게 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언론문해력을 제화하는 게 근본적으로 가짜뉴스와 같은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³²¹⁾³²²⁾ 즉 건강한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319) Sook Yeong Hong, Eui Chul Jung, 「Fake News and Journalim's Credibility Crisis」, 『Crisisonomy』 Vol.13 No.8, 2017, 45쪽.

320) 구글은 거짓된 정보 콘텐츠를 내놓는 사이트들에 대해서 구글 광고 서비스인 애드센스의 광고를 붙일 수 없도록 하는 방침을 내놓았으며, 페이스북 또한 구글과 유사한 간접광고 제한 정책을 내놓았다. 이 같은 두 사업자에게 경제적 제재 방침은 사이트 운영자가 가짜뉴스의 제작과 유통을 할 경우, 사이트 운영자에게 사이트 운영상 경제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방침은 정보매개자인 구글과 페이스북이 사이트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가짜뉴스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행한 자율규제라고 할 수 있다. 또 해외 언론사와 구글, 페이스북과의 팩트체크 협업 정책을 볼 수 있다. 이 정책의 내용은 다수의 신고를 받은 게시물을 전문 팩트체크그룹에서 사실 확인을 위해 넘기고, 세계 유수의 언론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체크그룹에서 진실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체크그룹을 포인트그룹이라고 하는데 현재 스노프(Snopes), 팩트체크닷오알지(Factcheck.org), 폴리티팩트(PolitiFact), 등 전문 팩트체크 사이트와 에비시뉴스(ABC News), 에이피(AP)를 비롯한 전통 언론사 등 세계 각지의 4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가 모두 자율규제 장치라고 할 수 있다(한갑운·윤종민, 「가짜뉴스의 규율방법에 관한 법적 고찰」, 『과학기술과 법』 제8권 제1호, 2017.6., 75쪽). 때로는 국가가 입법정책을 통해 빠른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법적으로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입법에 대한 고려는 게으름수록 미덕일 때가 있다.

321) 최인숙, 「초등학생에도 가짜뉴스 참과 거짓 설명, 우린?」, 『오마이뉴스』, 2017.03.01., 링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02932(최종검색일:2017.12.12.).

322) 스탠포드 대학에서도 연구를 통해 모든 학년의 학생들이 실제 뉴스와 가짜뉴스를 구분할 능력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를 계기로 학생들의 미디어 활용능력을 교육과정에서 가르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주교육신문, 「교사가 제안하는 “가짜뉴스 식별법”」, 2017.03.03., 링크 :http://www.caledu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933

시민교육이 가장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의 경우도 가짜뉴스에 대한 적극적 제재보다는 미디어 교육 등을 통해 시민들의 ‘언론문해력’(리터러시)을 향상시켜 시민사회의 자정능력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 2016년 미국 워싱턴 주는 디지털기술의 바른 이용교육인 디지털 시민의식(Digital Citizenship)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으며, 캘리포니아주의회에는 교육과정에 언론문해력(Media Literacy)에 관한 교과목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과 주교육부와 교육감과 협의하여 디지털 시민의식, 인터넷 안전 및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주 전체에 걸쳐 실시할 수 있도록 주의회 소관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 추진 중이다. 또 체코와 인도네시아 정부는 가짜뉴스 대응 전담기구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의 앙포, 르몽드 등과 같은 주력 언론사들은 가짜뉴스를 판독하는 프로그램을 개발·배포하여 가짜뉴스의 유통과 접속을 억제하고 있다.³²³⁾

여기서 흥미롭게 살펴 볼 부분은 캘리포니아 주 어바인시 플라자 비스타 초등학교 5학년반 스캇 브래들리 교사가 제안하는 “학생들이 가짜뉴스를 식별하는 7가지 체크리스트”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뉴스의 출처가 누구이며 공통 출처를 파악했는가? ② 내셔널 지오그래픽, 디스커버리 등의 잘 알려진 출처로 작성되었는가? ③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과 어떻게 다른가? ④ 제시된 정보가 의미 있는 정보이며 그 정보의 내용을 이해하는가? ⑤ 제시된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 3개 이상의 다른 출처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가? ⑥ 관련 분야 전문가가 그 정보와 연결되었거나 그 정보를 작성했는가? ⑦ 현재 알려진 정보는 무엇인가? ⑧ 저작권이 있는가?³²⁴⁾

(최종검색일: 2017.12.12.): 또 올초 1월 캘리포니아주 의원이 고교생들에게 가짜뉴스를 걸러내는 방법을 가르치도록 하는 법안을 지역의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빌 도드 상원의원은 주 교육위원회가 ‘미디어 독해’ 과목을 신설토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고,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지미 고메스 의원도 유사한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은 7-12학년 들에게 영어와 과학, 수학 및 역사 등 다양한 과목에 비판적 사고기술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유영준, 「가짜뉴스 범람에 “학교에서 뉴스진위 구분하는 법 가르쳐야”」, 『연합뉴스』, 2017.1.13., 링크:http://m.yna.co.kr/contents/?cid=AKR2017011314160009&site=box_hot(최종검색일: 2017.12.12.) 핀란드에서도 이와 같은 교육이 정규 교과목으로 편입되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김효진, 「학교에서 이민 문제, 가짜뉴스 해법 찾는다」, 『한겨레신문』, 2017.5.29., 링크:<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796712.html> 최종검색일 2017.12.12)

323) 한갑운·윤종민, 「가짜뉴스의 규율방법에 관한 법적 고찰」, 『과학기술과 법』 제8권 제1호, 2017.6., 74쪽

건강한 사회, 건강한 민주주의가 자리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민주 시민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배워야만 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우리의 경우 언론사부터 스스로의 신망을 쌓기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 가짜뉴스로부터 스스로 결벽증에 가까운 검열과 감시가 행해져야 한다. 우리사회는 지난해부터 촛불혁명을 통해 대통령을 파면하고 시민의 힘과 의지에 따른 새 정부를 출범시켰다. 그 과정에서 우리사회의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공직자의 부패, 언론의 실패, 정당정치 실패, 교육의 실패 등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에서 작동해야 할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했던 심각한 원인들을 체감하게 되었다.

기자과 쓰레기를 합친 비속어 '기레기'라는 용어가 만들어지게 된 역사적 과오를 언론사와 언론인 스스로 각성하고 신뢰성, 투명성, 정확성 제고를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언론사의 게이트 키핑은 언제고 오작동 하게 될 것이며 신뢰도 있는 건강한 여론이 반영되어야 할 사회의 공기라고 부르는 언론에는 오염된 공기인 가짜뉴스에 자리를 내주고 말 것이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자성 또한 절실한 때다. 정당이 나서서 건강하고, 투명한 선거 문화 확립에 나서야 할 때다. 지난 19대 대선 과정에서는 특정 정당 후보가 후보 토론회 및 연설회 마다 나서서 가짜뉴스를 적극 활용하여 확산시키는 모습을 수없이 보았다. 그 때마다 언론사들은 뒤늦게 팩트체크 뉴스를 보도했으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가짜정보를 시정했던 반응성에 미치지 못했던 점을 상기해야 할 때다.

324) 뉴스가 사실인지 검증해주는 미국의 팩트체크 사이트(factcheck.org)에서는 가짜뉴스를 알아채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기도 했다. 첫째, 뉴스의 출처를 파악하자 실제 언론사에서 작성한 뉴스가 맞는지, 해당 홈페이지가 확실한지 등을 확인하자. 해당 언론사는 정작 작성한 적이 없는 가짜뉴스이거나, 유명한 언론사를 흉내 내는 가짜뉴스 사이트가 많다. 둘째, 끝까지 읽자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기 위해 자극적인 제목을 달지만 정작 내용은 제목과 다른 경우가 많으니 결론 부분에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끝까지 읽어보자. 셋째, 작성자를 확인하자 누가 쓴 글인지, 글쓴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그 사람이 쓴 글이 확실한지, 혹은 글쓴이가 존재하긴 하는지에 한 정보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넷째, 근거 자료를 확인하자 해당 뉴스를 전혀 뒷받침하지 못하는 근거 자료를 링크로 걸어두는 경우도 많다. 다섯째, 기사 작성 날짜를 확인하자 현재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 담긴 아주 오래된 뉴스를 재가공하는 경우도 많다. 과거의 뉴스가 사실이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상황을 왜곡시킬 수 있다. 여섯째, 자신의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지 생각해보자 우리는 우리가 믿고 싶은 쪽의 뉴스만 찾아보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믿음이 정보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생각해보자. 일곱 번째, 전문가에게 물어보자 만약 뉴스의 출처를 확인하기도, 기사를 끝까지 읽기도, 근거 자료를 확인하기도 어렵다면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게 빠르다. 이와 같은 일상에서의 주의교육도 같이 병행해지면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은 점차 빨라지고 피해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건강한 시민, 건강한 언론, 깨끗한 정치 문화가 자리를 잡았을 때 가짜뉴스는 시장에서 더 이상 효용을 잃고 자연소멸해갈 것이다. 사회의 모든 문제는 시민의 건강한 힘으로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민주주의의 근육’을 키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³²⁵⁾

제3절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피해회복 방안

가짜뉴스로 인하여 일정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인 피해구제의 법리에 피해를 구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형사상의 손해배상 제도를 통해 손해를 보전할 수 있다. 특히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의 구제방법으로서는 민사상의 일반적 피해구제 법리인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생각해볼 수 있다. 가짜뉴스로 명예훼손이나 기타 권리침해로 손해가 발생된 자는 법원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일정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는 법원으로부터 가짜뉴스의 불법행위성과 가짜뉴스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그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절차에서의 애로사항을

325) 민주주의의 근육을 키우는 가장 최적의 방안은,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일이다. 독일 같은 경우 이를 ‘정치교육’이라 한다. 학교 내에서 교과과정에 편입하여 정치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또 교과 과정이 아닌 사회에서도 연방정부나 연방 내에 교육단체에 비용 보조를 통해 - 예를 들어, 연방정치교육아카데미 Tutzing 연구소 같은 곳 - 이러한 정치교육을 시키는 곳을 양성하기도 한다. 우리의 경우도 매 회기 때마다 국회에서 독일의 정치교육 같은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가 되었지만, 매번 제대로 된 논의조차 거치지 못하고, 회기 만료로 법안이 폐기되었다. 지난 회기에서는 이언주 의원 등 12인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신설하고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 남인수 의원도 이 같은 법안을 발의 한 바 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던 배경은 민주주의는 민주시민이 있어야 가능하고, 민주주의는 배워야 가능한 제도라는 인식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다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어야 하고 그 내용 속에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가짜뉴스에 대한 해결방안을 근원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 주체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 교육을 실시하는 가장 적합한 주체인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 기관으로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오정록, 『한국의 학교 외의 시민교육 제도화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의 한계와 개선방안』, 『한국과 독일에서의 시민교육』 발제문, 헌법이론실무학회 주체 2016 한·독 국제학술대회, 2016.10.5., 77쪽 : 게로 켈러만, 『독일에서의 학교 외 정치교육의 법적 틀과 발전상황』, 『한국과 독일에서의 시민교육』 발제문, 헌법이론실무학회 주체 2016 한·독 국제학술대회, 2016.10.5.73-74쪽.

감안하여 가짜뉴스가 불법행위로 인정되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는 데에는 문제되지 않겠지만, 가짜뉴스의 제작유포자를 확인하기 힘들고 나아가 그 유형 및 행태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가짜뉴스에 따른 손해배상 절차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³²⁶⁾

외국에서도 가짜뉴스로 인하여 개인이 입은 명예, 재산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제도를 취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가짜뉴스로 인한 손해발생시, 피해를 입은 자가 그 피해를 입증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를 취하고 있다.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일반적인 손해배상과는 달리, 언론의 오보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언론이 가짜뉴스를 제작유포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이 입증되면, 언론은 피해자에게 일반적 손해배상이 아닌 가중된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도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의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수차례 계속되어 왔지만, 구체적으로 입법화 되진 않았다.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한편, 손해배상과 달리 우리의 경우 피해자의 민사적 구제방안으로서 언론사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 청구권이 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정보도 청구권이다(동법 제14조 및 제15조). 가짜뉴스가 언론사의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도되어 질 경우 피해자는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가짜뉴스를 언론사가 만들어 보도하거나, 단순히 가짜뉴스를 재보도하는 하는 경우 피해자는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SBS가 8시 뉴스에서 특정 후보자가 세월호 인양 지연을 정부기관 담당자와 거래를 거부했다는 보도가 단순 오보를 넘어, 언론사가 제작 보도한 최악의 가짜뉴스를 선정되었다. 이때에도 보도국장과 앵커가 나서서 직접 사과 및 해명의 형식을 빌은 정정보도를 한 바 있다.³²⁷⁾ 아울러 현행 민법 제764조에서는

326) 정보통신망법 등의 개정을 통해 가짜뉴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직접 규정하여 손해발생의 입증과 청구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안도 제시되었다. 한갑운·윤종민, 「가짜뉴스의 규율방법에 관한 법적 고찰」, 『과학기술법』 제8권 제1호, 2017.6.,

327) 남지연, 「“SBS ‘세월호 고의 인양지연’ 의혹 보도 전 과정 부실」, 『경향신문』, 2017.05.15., 링크: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5151725001(최종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 법원이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적당한 처분에는 정정보도, 삭제 등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 등이 해당된다. 이는 경제적 피해구제수단 외에 피해자의 선택에 따른 정정보도, 명예회복조치 등을 통한 가짜뉴스 피해에 대한 구제 방안이다.³²⁸⁾

색일 : 2017.12.12.)

328) 한갑운·윤종민, 「가짜뉴스의 규율방법에 관한 법적 고찰」, 『과학기술과 법』 제8권 제1호, 2017.6, 83-84쪽.

참고문헌

1. 국내 단행본

- 김대근 임석순 김기범·강상욱, 『신종금융사기범죄의 실태 분석과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기술적 수단을 사용한 사이버 금융사기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 데버러 헬먼(김대근 옮김), 『차별이란 무엇인가: 차별은 언제 나쁘고 언제 그렇지 않은가』, 서해문집, 2016
- 마츠다 미사(이수형 옮김), 『소문의 시대』, 추수밭, 2016
-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4
- 캐플란(이현우 외 옮김), 『합리적 투표자에 대한 미신 : 민주주의가 나쁜 정책을 채택하는 이유』, 북코리아, 2008
- 한규석, 『사회심리학의 이해』, 개정판, 학지사, 2002
- 홍성수, 『말이 칼이 될 때: 혐오표현은 무엇이고 왜 문제인가?』, 어크로스, 2018

2. 국내 학술논문

- Sook Yeong Hong, Eui Chul Jung, 「Fake News and Journalism's Credibility Crisis」, 『Crisisonomy』 Vol.13 No.8, 2017
- 제로 켈러만, 「독일에서의 학교의 정치교육의 법적 틀과 발전상황」, 『한국과 독일에서의 시민교육』 발제문, 헌법이론실무학회 주체 2016 한·독 국제학술대회, 2016.10.5.
- 김대근, 「권리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의 의의와 한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김대근·권수진·윤지영·임석순,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방안 연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2015
- 김대근·전현욱·김현수, 「다중사기범죄 유형분석 연구-전기통신금융사기와 유사수신을 중심으로」, 대검찰청 용역보고서, 2016
- 김가희, 「가짜뉴스 규제 방안 : 허위사실 표현의 헌법적 보호 여부 및 과잉금지원칙에 따른 규제 합헌성 검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6

- 김수연, 「가짜뉴스, 어떻게 막을 것인가? - 선거의 영역에서의 가짜뉴스, 허위사실의 규제」, 『가짜뉴스, 어떻게 막을 것인가?』 바른정당 하태경의원실 주최 심포지움 토론문, 201.02.21
- 김영욱·신호창·임유진, 「정보 소스로서 홍보담당자와 언론인의 오보에 대한 인식 비교」, 한국방송학보 통권 제21-3호, 2007.
- 김유향, 「가짜뉴스 현황과 입법적 대응방향」, 『가짜뉴스, 어떻게 막을 것인가?』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주최 토론회 발제문, 2017.2.21.
- 김종철,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적 검토 - 소위 '정봉주 사건'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22권 제1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3
- 노정규·민영, 「정치 정보에 대한 선택적 노출이 태도 극화에 미치는 효과 - 비정치적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언론학보 제56권 제2호, 2012
- 박경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내용심의의 위헌성」, 법학논총 제27권 제2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 박상운, 「왜 SNS에서 정치 양극화가 지속되는가? - 의사소통 대상, SNS 정보 신뢰도, 타인 신뢰도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30권 제1호, 2014
- 박아란, 「가짜뉴스에 대한 법률적 쟁점과 대책: 범위 설정, 판별법, 판단 주체 등 해결 과제 '산 넘어 산」, 신문과 방송, 2017년 4월호.
- 박아란, 「Fake News(가짜뉴스) 개념고 대응방안」, 『한국언론학회 주최 세미나 발제문』, 2017.2.14.
- 방승주, 「선거운동의 자유와 제한에 대한 평가와 전망」, 『정치관계법 30년 평가와 전망 : 선거와 정당 제도』 정기학술대회 발제문, (사)한국헌법학회 제102회 정기학술대회, 2017.5.19.,
- 선거연수원, 가짜 선거뉴스 현황과 각국의 대응사례, 해외연구원 지정과제 제2017-2차, 2017.6.
- 송경제, 「인터넷 미디어의 인론평해 구제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구성론적 해석과 정책적 함의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제10권 제3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0.12
- 신상현, 「위법한 명예훼손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의무에 관한 소셜네트워크 운영자의 형법적 책임 - NetzDG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학연구』 제20권 3호, 인하대

- 학교 법학연구소, 2017.9.
- 오강탁·송경재·장우영·양희인, 「스마트 시대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사용자 리터러시(literacy) 제고 방안 연구: 정책적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12.
- 오세욱, 「자동화된 사실 확인(fact checking) 기술(technology)의 현황과 한계」,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34권 3호, 2017.
- 오세욱, 「팩트체킹의 현재와 자동화한 팩트체킹: 편견 없는 ‘완벽한’ 팩트체킹을 위하여」, 신문과 방송, 2017년 2월호.
- 오세욱·박아란, 「일반 국민들의 ‘가짜뉴스’에 대한 인식」, 미디어 이슈 3권 3호, 2017.
- 오정록, 「한국의 학교외의 시민교육 제도화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의 한계와 개선방안」, 『한국과 독일에서의 시민교육』 발제문, 헌법이론실무학회 주체 2016 한·독 국제학술대회, 2016.10.5.,
- 오택섭·설진아·마동훈·김해영, 「SNS 정치 발언의 ‘진실 검증(fact-checking)’: 평가와 함의」,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 2012.
- 이동훈, 「미국에서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법리 - 연방 대법원판례에서 확립된 actual malice를 중심으로 -」, 아태공법연구 제6권, 아세아태평양공법학회, 1999.
- 이상현·전홍식, 「사이버선거운동의 자유화 및 사이버선거범죄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형사제재의 대응: SNS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한국법학회 제46권, 2012.
- 이재진, 「포스트 트루스(post-Truth) 시대의 페이크뉴스와 저널리즘」, 『가짜뉴스 문제점과 대응방안』 발제문, 2017.2.23.
- 이종문, 「선거정보의 페이크뉴스에 대한 유권자 인식 분석 연구 - 제19대 대통령선거 정보를 중심으로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8권 제3호, 2017.
- 임종석, 「언론의 위기와 가짜뉴스 파동 - 뉴스에 가짜는 없다」, 『관훈저널』 제142권, 관훈클럽, 2017.3
- 임종섭, 「언론의 위기와 가짜뉴스 파동 - 뉴스에 가짜는 없다」, 『관훈저널』142, 2017.3
- 장우영, 「스마트 소셜 시대 선거법제 개선과 선거관리 전략」, 입법과 정책 제4권 제2호, 2012.
- 장휘일, 「가짜뉴스의 심각성과 법적대응방안 - 한국의 19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제10권 제1호, 2017.07.
- 정윤모·이승진, 「주요국의 불공정거래 조사 및 제재의 분석과 시사점」, 『자본시장연구

원], 2012.12.

정인태, 「선거 캠페인 법정 홍보매체의 후보자 결정요인과 투표 선택에 미치는 영향 연구: 4·11 부산지역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언론학연구 17권 2호, 2013.

정인태, 「유권자들의 소셜미디어 활용 정도가 투표결정요인에 미치는 영향: 2014년 6.4 부산 동시 지방 선거 분석」, 언론학연구 18권 4호, 2014.

정태호·김훈집, 「영국의 명예훼손죄 폐지와 그 교훈」, 경희법학 제50권 제1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정희석, 「한국형 SNS의 진화: 카카오톡 사례를 중심으로」, 디지털정책연구 제10권 제10호, 2012.

한갑운·윤종민, 「가짜뉴스의 규율방법에 대한 법적 고찰」, 『과학기술과 법』 제8권 제1호, 2017.6

허순철, 「영국의 명예훼손법 개정과 그 의미」, 공법학연구 제16권 제4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15.

황용석·이동훈·김준교, 「미디어 책무성 관점에서의 인터넷 자율규제제도 비교연구」, 『언론과 사회』 제17권 제1호,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2009.2

황용석·권오성, 「가짜뉴스의 개념화와 규제수단에 관한 연구 -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 『언론과법』 제16권 제1호, 한국언론법학회, 2017.4.

3. 외국 문헌

App Ape Lab., “日本と韓国のSNS利用の違い [日韓SNSランキングTOP5付]”, 2016.2.17., <https://lab.appa.pe/2016-02/korea-sns.html>, 2017.11.3. 최종방문.

Bakshy, Etyan, Solomon Messing, & Lada A. Adamic, “Exposure to Ideologically Diverse News and Opinion on Facebook”, Science Vol. 348 No. 6239, 2015.

boyd, danah m. & Nicole B. Ellison, “Social Network Sites: Definition, History, and Scholarship”,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Vol. 13, No. 1, 2008.

Ciampaglia, Giovanni Luca, Prashant Shiralkar, Luis M. Rocha, Johan Bollen, Filippo Menczer, & Alessandro Flammini, “Computational Fact Checking from Knowledge Networks”, PLOS ONE Vol.10 No.6, 2015.

- Del Vicario, Michela, Alessandro Bessi, Fabiani Zollo, Fabio Petroni, Antonio Scala, Guido Caldarelli, H. Eugene Stanley, & Walter Quattrociocchi, "The Spreading of Misinformation Online",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Vol.113 No.3, 2016.
- Der Bundeswahlleiter, Bundestagswahl 2017: Endgültiges Ergebnis, Pressemitteilung Nr. 34/17, 2017.10.12., https://www.bundeswahlleiter.de/info/presse/mitteilungen/bundestagswahl-2017/34_17_endgueltiges_ergebnis.html, 2017.10.31. 최종방문.
- Equaliteach, "First Month Reflections: UK General Election, Fake News and Social Media", 2017.7.4., <http://www.equaliteach.co.uk/reflections-fake-news-social-media/>, 2017.11.10. 최종방문.
- FIJ, "「安倍首相が国連の選挙監視団を拒否した」は本当か", 2017.10.21., http://fij.info/archives/election2017/buzzfeed_05, 2017.11.6. 최종방문.
- FIJ, "2017年総選挙ファクトチェックプロジェクトについて", <http://fij.info/election2017-2>, 2017.11.6. 최종방문.
- FIJ, "安倍首相「ほとんどの教科書に自衛隊が違憲と記述」は本当か", 2017.10.21., http://fij.info/archives/election2017/buzzfeed_04, 2017.11.6. 최종방문.
- FIJ, "自民公約から「女性活躍」消えた? 毎日の社説に事実誤認", 2017.10.13., http://fij.info/archives/election2017/gohoo_03, 2017.11.6. 최종방문.
- Full Fact, About, Effectiveness, <https://fullfact.org/about/effectiveness/>, 2017.11.20. 최종방문.
- Georg Nolte, "Hate-Speech, Fake-News, das »Netzwerkdurchsetzungsgesetz« und Vielfaltsicherung durch Suchmaschinen", *ZUM* 2017, 552 ff.
- Google, "Fact Check now available in Google Search and News around the world", 2017.4.7., <https://www.blog.google/products/search/fact-check-now-available-google-search-and-news-around-world/>, 2017.11.9. 최종방문.
- House of Lords, Parliamentary Debates, House of Lords Hansard, 9 July 2009, Column 8846-851, <https://publications.parliament.uk/pa/ld200809/ldhansrd/text/90709-0013.htm#09070996000340>, 2017.11.13. 최종방문

- Hunt Allcott/Matthew Gentzkow, "Social Media and Fake News in the 2016 Elect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31 No. 2, 2017.
- Ipsos MORI, "How Britain voted in the 2017 election", 2017.6.20., https://www.ipsos.com/ipsos-mori/en-uk/how-britain-voted-2017-election?language_content_entity=en-uk, 2017.11.10. 최종방문.
- Iyengar, Shanto & Kyu S. Hahn, "Red Media, Blue Media: Evidence of Ideological Selectivity in Media Use", *Journal of Communication* Vol. 59 No. 1, 2009.
- John D. Gallacher/Monica Kaminska/Bence Kollanyi/Philip N. Howard, "Junk News and Bots during the 2017 UK General Election: What Are UK Voters Sharing Over Twitter?", 2017.5.31.
- Karlova, Natascha A. & Karen E. Fisher, "'Plz RT': A Social Diffusion Model of Misinformation and Disinformation for Understanding Human Information Behaviour", *Proceedings of the ISIC 2012*, 2013.
- Legislation.gov.uk,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09/25/section/73>, 2017.11.12. 최종방문.
- Nickerson, Raymond S., "Confirmation Bias: A Ubiquitous Phenomenon in Many Guise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Vol. 2 No.2, 1998.
- Nikolas Guggenberger, "Das Netzwerkdurchsetzungsgesetz in der Anwendung", *NJW* 2017, 2577 ff.
- Nomos Kommentar zum Strafgesetzbuch, Hrsg. vom U. Kindhäuser u.a., 4. Aufl., Baden-Baden, 2013(인용방법 : 저자, NK-StGB, 법조항).
- Norton Rose Fulbright, "UK Government seeks to tackle the "fake news" problem", 2017.3., <http://www.nortonrosefulbright.com/knowledge/publications/147055/uk-government-seeks-to-tackle-the-fake-news-problem>, 2017.11.10. 최종방문.
- PUBLIC SÉNAT, "Fake news : la sénatrice Nathalie Goulet dépose une proposition de loi", 2017.3.30., <https://www.publicsenat.fr/article/politique/fake-news-la-senatrice-nathalie-goulet-depose-une-proposition-de-loi-58064>, 2017.12.12. 최종방문.
- Ramsay Peter, *The Insecurity State: Vulnerable Autonomy and the Right to*

- Security in the Crimi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 Redaktion beck-aktuell, “Allianz für Meinungsfreiheit kritisiert Gesetz gegen Hassrede im Netz”, 2017.4.12., <https://rsw.beck.de/aktuell/meldung/allianz-fuer-meinungsfreiheit-kritisiert-gesetz-gegen-hassrede-im-netz>, 2017.10.31. 최종방문.
- Redaktion beck-aktuell, “LG Würzburg: Facebook muss Hetz-Beiträge nicht aktiv suchen und löschen”, 2017.3.7., <https://rsw.beck.de/aktuell/meldung/lg-wuerzburg-facebook-muss-hetz-beitraege-nicht-suchen-und-loeschen>, 2017.10.31. 최종방문.
- Reputatio Lab, Présidentielle 2017, <http://www.reputatiolab.com/presidentielle-2017/>, 2017.12.12. 최종방문.
- Stellungnahme der Facebook Germany GmbH, SS. 1-4 참조, https://www.bmjbv.de/SharedDocs/Gesetzgebungsverfahren/Stellungnahmen/2017/Downloads/05242017_Stellungnahme_Facebook_RefE_NetzDG.pdf;jsessionid=9116AF16B8632D782F1DB9598C562BDD.1_cid289?__blob=publicationFile&v=2, 2017.11.3. 최종방문.
- Stellungnahme des Deutschen Richterbundes, S. 1, https://www.bmjbv.de/SharedDocs/Gesetzgebungsverfahren/Stellungnahmen/2017/Downloads/03272017_Stellungnahme_DRB_RefE_NetzDG.pdf?__blob=publicationFile&v=3, 2017.11.3. 최종방문.
- Stellungnahme des Zentralrats der Juden in Deutschland, S. 1, https://www.bmjbv.de/SharedDocs/Gesetzgebungsverfahren/Stellungnahmen/2017/Downloads/03272017_Stellungnahme_ZdJ_RefE_NetzDG.pdf;jsessionid=9116AF16B8632D782F1DB9598C562BDD.1_cid289?__blob=publicationFile&v=2, 2017.11.3. 최종방문.
- Stroud, Natalie Jomini, “Media Use and Political Predispositions: Revisiting the Concept of Selective Exposure”, Political Behavior Vol. 30, No. 3, 2008.
- UK Parliament, “‘Fake news’ inquiry launched”, 2017.1.10., <https://www.parliament.uk/business/committees/committees-a-z/commons-select/culture-media-and-sport-committee/news-parliament-2015/fake-news-launch-16-17/>,

2017.11.9. 최종방문.

Vallone, Robert P., Lee Ross, & Mark R. Lepper, “The Hostile Media Phenomenon: Biased Perception and Perceptions of Media Bias in Coverage of the Beirut Massac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49 No. 3, 1985.

일본 팩트체크 이니셔티브 홈페이지 : <http://fij.info/>

(내려받기 링크 : <http://comprop.oii.ox.ac.uk/wp-content/uploads/sites/89/2017/06/Junk-News-and-Bots-during-the-2017-UK-General-Election.pdf>).

(내려받기 링크 : <https://fbnewsroomus.files.wordpress.com/2017/04/facebook-and-information-operations-v1.pdf>)

BLOTTER, “[IT열쇳말] 가짜뉴스”, 2017.3.9., <http://www.bloter.net/archives/273350>, 2017.11.3. 최종방문.

Jen Weedon/William Nuland/Alex Stamos, *Information Operations and Facebook*, April 27, 2017, Version 1.0.

SÉNAT, Un site au service des citoyens, <http://www.senat.fr/leg/pp16-470.html>, 2017.12.12. 최종방문.

4. 언론보도

BLOGOS, “総選挙とフェイクニュースを総点検！ BuzzFeed Japan編集長と判定 2/2”, 2017.10.21., <http://blogos.com/article/253797/?p=2>, 2017.11.3. 최종방문.

BuzzFeed News, “This Analysis Shows How Viral Fake Election News Stories Outperformed Real News On Facebook”, 2016.11.17., https://www.buzzfeed.com/craigsilverman/viral-fake-election-news-outperformed-real-news-on-facebook?utm_term=.ywoPvzaAX#.nrw0xe972, 2017.11.7. 최종방문.

BuzzFeed News, “真偽が危ういフェイクニュース時代の総選挙 日本でもファクトチェックが始まった”, 2017.10.10., https://www.buzzfeed.com/jp/daisukefuruta/fake-vs-fact-check-in-japan?utm_term=.jpMn5XJEA#.mo4J68G51, 2017.11.3. 최종방문.

CNBC, “Google expands ‘Fact Check’ tool to flag up fake news in search results”,

- 2017.4.7., <https://www.cnn.com/2017/04/07/google-fake-news-fact-check.html>, 2017.11.9. 최종방문.
- CNET, “Fake news, shoo! The UK's general election doesn't want you”, 2017.6.7., <https://www.cnet.com/news/fake-news-whats-the-story-at-the-uk-general-election/>, 2017.11.10. 최종방문.
- deutschland.de - So tickt Deutschland, “Gefälschte Nachrichten im Netz”, 2017.2.2., <https://www.deutschland.de/de/topic/kultur/kommunikation-medien/gefaelschte-nachrichten-im-netz>, 2017.10.30. 최종방문.
-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California Bill To Ban “Fake News” Would Be Disastrous for Political Speech”, 2017.3.27., <https://www.eff.org/vi/deeplinks/2017/03/california-bill-ban-fake-news-would-be-disastrous-political-speech>, 2017.11.8. 최종방문.
- Evening Standard, “Labour leader Jeremy Corbyn hints he would pay £85bn Brexit 'divorce bill' if PM”, 2017.5.15., <https://www.standard.co.uk/news/politics/labour-leader-jeremy-corbyn-hints-he-would-pay-85bn-brexit-divorce-bill-if-pm-a3539581.html>, 2017.11.10. 최종방문.
- FOCUS Online, “Wie gefälschte Umfragen und Fake News Ihre Wahl beeinflussen sollen”, 2017.9.20., http://www.focus.de/politik/deutschland/bundestagswahl-2017/manipulation-erkennen-wie-gefaelschte-umfragen-und-fake-news-ihre-wahl-beeinflussen-sollen_id_7617770.html, 2017.10.30. 최종방문.
- Fortune, “Fake News Isn't a New Problem, and We're Better Equipped to Fight It Now”, 2017.2.8., <http://fortune.com/2017/02/08/fake-news-history/>, 2017.11.7. 최종방문.
- franceinfo, “Non, Jean-Luc Mélenchon n'arbore pas une Rolex à 18.000 euros”, 2016.4.28., https://www.francetvinfo.fr/replay-radio/le-vrai-du-faux-numerique/non-jean-luc-melenchon-n-arbore-pas-une-rolex-a-18-000-euros_1781339.html, 2017.12.12. 최종방문.
- Frankfurter Allgemeine, “Facebook wehrt sich gegen Maas' Anti-Hass-Gesetz”, 2017.5.29., <http://www.faz.net/aktuell/wirtschaft/netzwirtschaft/der-facebook-boersengang/facebook-wehrt-sich-gegen-netzwerkdurchsetzungsgesetz>

-15037014.html, 2017.11.2. 최종방문.

heise online, “De Maizière lobt Zusammenarbeit mit Facebook im Kampf gegen Hassrede”, 2016.8.29., <https://www.heise.de/newsticker/meldung/De-Maiziere-lobt-Zusammenarbeit-mit-Facebook-im-Kampf-gegen-Hassrede-3307120.html>, 2017.11.3. 최종방문.

Huffingtonpost UK, “UK Politicians Call 'Fake News' On Stories They Don't Like, Aping Donald Trump”, 2017.3.11., http://www.huffingtonpost.co.uk/entry/british-politicians-fake-news_uk_58b60832e4b0a8a9b7870126, 2017.11.10. 최종방문.

IMPRESS, “Fake news is contaminating journalism...”, 2017.7.20., <https://impress.press/news/fake-news-speech.html>, 2017.11.20. 최종방문.

INDEPENDENT, “Russia hired 1,000 people to create anti-Clinton 'fake news' in key US states during election, Trump-Russia hearings leader reveals”, 2017.3.30., <http://www.independent.co.uk/news/world/americas/us-politics/russian-trolls-hilary-clinton-fake-news-election-democrat-mark-warner-intelligence-committee-a7657641.html>, 2017.11.7. 최종방문.

KBS, “공영방송 총회 ... ‘가짜뉴스’ 이슈”, 2017.9.14.,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548377&ref=A>, 2017.11.3. 최종방문.

Le Monde, “Huit médias français s’allient à Facebook contre les « fake news »”, 2017.2.6., http://www.lemonde.fr/actualite-medias/article/2017/02/06/huit-medias-francais-s-allient-a-facebook-dans-sa-lutte-contre-les-fake-news_5075054_3236.html, 2017.12.12. 최종방문.

Le Monde, “Décodex : des extensions pour vérifier l’info directement dans votre navigateur Internet”, 2017.2.1., http://www.lemonde.fr/les-decodeurs/article/2017/02/01/decodex-des-extensions-pour-verifier-l-info-directement-dans-votre-navigateur-internet_5072850_4355770.html, 2017.12.12. 최종방문.

Le Monde, “Macron « financé par l’Arabie saoudite » : une intox massivement relayée par l’extrême droite”, 2017.3.2., <http://www.lemonde.fr/les-decodeurs/article/2017/03/02/macron-finance-par-l-arabie-saoudite->

- une-intox-massivement-relayee-par-l-extreme-droite_5088356_4355770.html, 2017.12.12. 최종방문.
- Le Monde, “Pourquoi il faut arrêter de parler de « fake news »”, 2017.1.31., http://www.lemonde.fr/les-decodeurs/article/2017/01/31/pourquoi-il-faut-arreter-de-parler-de-fake-news_5072404_4355770.html, 2017.12.12. 최종방문.
- Libération, “Non, Wallerand de Saint-Just, Marine Le Pen n'est pas arrivée en tête d'un sondage du Figaro”, 2017.3.21., http://www.liberation.fr/desintox/2017/03/21/non-wallerand-de-saint-just-marine-le-pen-n-est-pas-arrivee-en-tete-d-un-sondage-du-figaro_1557363, 2017.12.12. 최종방문.
- MDR AKTUELL, “Städte bereiten sich auf Fake News zur Wahl vor”, 2017.9.18., <http://www.mdr.de/nachrichten/politik/regional/umgang-mit-fake-news-zur-bundestagswahl-100.html>, 2017.10.30. 최종방문.
- Mediashift, “Finding Solutions for Fake News”, 2016.12.2., <http://mediashift.org/2016/12/combat-fake-news/>, 2017.12.12. 최종방문.
- NBC NEWS, “Fake News: How a Partying Macedonian Teen Earns Thousands Publishing Lies”, 2016.12.9., <https://www.nbcnews.com/news/world/fake-news-how-partying-macedonian-teen-earns-thousands-publishing-lies-n692451>, 2017.11.8. 최종방문.
- netzpolitik.org, “Ab heute gilt das NetzDG – und das sind die Gefahren für die Meinungsfreiheit”. 2017.10.1., <https://netzpolitik.org/2017/ab-heute-gilt-das-netzdg-und-das-sind-die-gefahren-fuer-die-meinungsfreiheit/>, 2017.10.31. 최종방문.
- ouest france, “« Fake news » : cinq choses que vous ignorez peut-être à leur sujet”, 2017.4.3., <https://www.ouest-france.fr/high-tech/internet/fake-news-cinq-choses-que-vous-ignorez-peut-etre-leur-sujet-4903331>, 2017.12.12. 최종방문.
- POLITICO, “British MPs launch inquiry into fake news”, 2017.1.30., <https://www.politico.eu/article/british-mps-launch-inquiry-into-fake-news/>,

2017.11.9. 최종방문.

Poynter, “Le Monde wants to build a B.S.-detector”, 2016.11.22., <https://www.poynter.org/news/le-monde-wants-build-bs-detector>, 2017.12.12. 최종방문.

PressGazette, “Fake news not yet an issue in general election campaign, says head of fact-checking charity”, 2017.5.23., <http://www.pressgazette.co.uk/fake-news-not-yet-an-issue-in-general-election-campaign-says-head-of-fact-checking-charity/>, 2017.11.10. 최종방문.

PressGazette, “Most-shared general election stories on social media overwhelmingly anti-Tory with no sign yet of fake news”, 2017.5.18., <http://www.pressgazette.co.uk/most-shared-general-election-stories-on-social-media-overwhelmingly-anti-tory-with-no-sign-yet-of-fake-news/>, 2017.11.10. 최종방문.

Spiegel Online, “Fake News werden nicht die Wahl entscheiden”, 2017.7.25., <http://www.spiegel.de/wissenschaft/mensch/fake-news-werden-nicht-die-wahl-entscheidenkolumne-a-1153819.html>, 2017.10.30. 최종방문.

The Guardian, “How Facebook powers money machines for obscure political 'news' sites”, 2016.8.24., <https://www.theguardian.com/technology/2016/aug/24/facebook-clickbait-political-news-sites-us-election-trump>, 2017.11.7. 최종방문.

The Guardian, “Ofcom chair raises prospect of regulation for Google and Facebook”, 2017.10.10., <https://www.theguardian.com/media/2017/oct/10/ofcom-patricia-hodgson-google-facebook-fake-news>, 2017.11.20. 최종방문.

The Guardian, “Truth seekers: inside the UK election's fake news war room”, 2017.5.19., <https://www.theguardian.com/politics/2017/may/19/truth-seekers-inside-the-uk-elections-fake-news-war-room>, 2017.11.10. 최종방문.

The Guardian, “What is fake news? How to spot it and what you can do to stop it”, 2016.12.17., <https://www.theguardian.com/media/2016/dec/18/>

- what-is-fake-news-pizzagate, 2017.11.20. 최종방문.
- The New York Times, “Facebook Mounts Effort to Limit Tide of Fake News”, 2016.12.15., <https://www.nytimes.com/2016/12/15/technology/facebook-fake-news.html>, 2017.11.9. 최종방문.
- The New York Times, “The C.I.A.’s Fake News Campaign”, 2017.10.13., <https://www.nytimes.com/2017/10/13/opinion/cia-fake-news-russia.html>, 2017.11.7. 최종방문.
- The Telegraph, “Donald Trump says climate change is a 'hoax' but tries to protect his Irish real-estate from its impact”, 2016.5.25., <http://www.telegraph.co.uk/news/2016/05/23/donald-trump-says-climate-change-is-a-hoax-but-tries-to-protect/>, 2017.11.7. 최종방문.
- The Telegraph, “Trump claims Ted Cruz's father was with Lee Harvey Oswald before JFK assassination”, 2016.5.3., <http://www.telegraph.co.uk/news/2016/05/03/trump-claims-ted-cruzs-father-was-with-lee-harvey-oswald-before/>, 2017.11.7. 최종방문.
- The Telegraph, “What is fake news? Its origins and how it grew in 2016”, 2017.3.16., <http://www.telegraph.co.uk/technology/0/fake-news-origins-grew-2016/>, 2017.11.7. 최종방문.
- The Washington Post, “Fake news and the law, from 1798 to now”, 2016.12.9.,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volokh-conspiracy/wp/2016/12/09/fake-news-and-the-law-from-1798-to-now/?utm_term=.4bf77140f789, 2017.11.8. 최종방문.
- The Washington Post, “Fake news? That’s a very old story.”, 2016.11.25., https://www.washingtonpost.com/opinions/fake-news-thats-a-very-old-story/2016/11/25/c8b1f3d4-b330-11e6-8616-52b15787add0_story.html?utm_term=.91a42e641204, 2017.11.7. 최종방문.
- The Week, “Could fake news impact the general election?”, 2017.5.3., <http://www.theweek.co.uk/84203/could-fake-news-impact-the-general-election>, 2017.11.9. 최종방문.
- ThoughtCo., “The Election of 1828 Was Marked By Dirty Tactics”, 2016.7.31.,

<https://www.thoughtco.com/the-election-of-1828-1773861>, 2017.11.7.
최종방문.

ZDNet Korea, “독일 의회는 왜 ‘가짜뉴스 처벌법’ 폐기했나”, 2017.6.21., http://www.zdnet.co.kr/column/column_view.asp?article_id=20170621102516,
2017.10.27. 최종방문.

ZDNet Korea, “성범죄자 폐북 금지, 언론자유 침해일까”, 2017.6.20., http://www.zdnet.co.kr/column/column_view.asp?article_id=20170620160956,
2017.11.8. 최종방문.

가주교육신문, 「교사가 제안하는 “가짜뉴스 식별법”」, 2017.03.03., 링크 :http://www.caledu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933

권오성, 「가짜뉴스, 문제는 SNS가 아니라 우파야」, 『한겨레신문』, 2017.4.03, 링크:http://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789021.html

김남일, 「홍준표 캠프 정책특보 등 ‘허위 여론조사 유포’ 고발당해」, 『한겨레신문』
2017.05.01. 링크: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92972.html

김현재, 「페이스북 ‘가짜뉴스’와의 전쟁…독립기관에 팩트체크 위탁」, 『연합뉴스』,
2016.12.16, 링크<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16/0200000000AKR20161216011200091.HTML>

김효진, 「학교에서 이민 문제, 가짜뉴스 해법 찾는다」, 『한겨레신문』, 2017.5.29., 링크: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796712.html>

남지연, 「“SBS ‘세월호 고의 인양지연’ 의혹 보도 전 과정 부실」, 『경향신문』, 2017.05.15.,
링크: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5151725001

노컷뉴스, ““한국인이 일본 소녀 성폭행” 악질적인 日 가짜뉴스”, 2017.1.31., <http://www.nocutnews.co.kr/common/popprint.aspx?index=4725823>,
2017.11.3. 최종방문.

류미나, 「선관위 “가짜뉴스 엄중 대응”…감경과 협업 강화」, 『연합뉴스』 2016.3.16, 링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16/0200000000AKR20170316143600001.HTML>

미디어스, “독일, 가짜뉴스보다 SNS 혐오발언에 초점”, 2017.6.2.,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Print.html?idxno=93144>, 2017.10.31. 최종방문.

- 박경신, 「정봉주와 BBK의 진실, 이명박 그리고 선거법」, 『오마이뉴스』, 2011.12.27., 링크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76557
- 박상욱, 「국민의당, '재외선거 출구조사' 가짜뉴스 논란에도 유세 활용 논란」, 『중앙일보』 2017.05.04., 링크:<http://news.joins.com/article/21543217>
- 서영지, 「[단독] 국정원, 댓글알바 30개팀 3500명 운영했다」, 『한겨레신문』, 2017.08.03., 링크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05477.html
- 여성국, 「벨기에, 구글에 뉴스 저작권 침해 판결」, 『중앙일보』, 2017.09.22., 링크: <http://news.joins.com/article/21960645>
- 오수진, 「'세월호 인양 고의지연 보도' SBS 8시 뉴스에 법정제재」, 『연합뉴스』, 2017.05.22., 링크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22/0200000000AKR20170522134700033.HTML>
- 유영준, 「가짜뉴스 범람에 “학교에서 뉴스진위 구분하는 법 가르쳐야”」, 『연합뉴스』, 2017.1.13., 링크: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70113141600009&site=box_hot
- 이재진, 「여론조사의 비밀, 언론과 여론조사업체는 ‘스폰관계’」, 『미디어오늘』 2017.04.11, 링크: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6152>
- 정윤섭, 「현재, '미네르바 구속' 근거 전지통신법 위헌 결정」, 『KBS 뉴스』, 2010.12.28., 링크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2217330>
- 최인숙, 「초등학생에도 가짜뉴스 참과 거짓 설명, 우린?」, 『오마이뉴스』, 2017.03.01, 링크: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02932
- 최혜정·안광옥, 「홍준표·박지원, SBS보도 이용 '문 때리기' ...세월호 가족 “가짜뉴스 정치악용 말라”」, 『한겨레신문』, 2017.5.3., 링크 :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93372.html>
- 한겨레, “현재, 유엔 폐지권고에도...“사실 기반한 명예훼손’ 형사처벌, 합헌””, 2016.2.29.,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2664.html, 2017.12.13. 최종방문.
- 한겨레21, “선진국에는 왜 명예훼손죄가 없나”, 제766호, 2009.6.25., <http://h21>.

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5248.html, 2017.11.8. 최종방문.
항금비박수지, 「대선후보들 성소수자 차별 발언 ‘혐오의 가이드라인’될 우려 커」, 『한겨레
신문』, 2017.04.26., 링크: <http://www.hani.co.kr/arti/PRINT/792440.html>
BBC, “Facebook publishes fake news ads in UK papers”, 2017.5.8., <http://www.bbc.com/news/technology-39840803>, 2017.11.9. 최종방문.
BLOGOS, “総選挙とフェイクニュースを総点検! BuzzFeed Japan編集長と判定 1/2”,
2017.10.21., <http://blogos.com/article/253797/?p=1>, 2017.11.3. 최종방문.
Quartz, “A new study kills the notion that fake news swung the US election to
Trump”, 2017.1.29., [https://qz.com/896758/a-new-study-kills-the-notion-
that-fake-news-swung-the-us-election-to-trump/](https://qz.com/896758/a-new-study-kills-the-notion-that-fake-news-swung-the-us-election-to-trump/), 2017.11.7. 최종방문.

5. 검색사이트

Buzzfeed, “Hyperpartisan Facebook Pages Are Publishing False And Misleading
Information At An Alarming Rate”, [https://www.buzzfeed.com/
craigsilverman/partisan-fb-pages-analysis?utm_term=.upPAm5G54O#.f
o01WdxdDg](https://www.buzzfeed.com/craigsilverman/partisan-fb-pages-analysis?utm_term=.upPAm5G54O#.fo01WdxdDg) (2017년 12월 5일 최종검색).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OHCHR),
Joint Declaration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Fake News”,
Disinformation and Propaganda, [http://www.ohchr.org/EN/NewsEvents/
Pages/DisplayNews.aspx?NewsID=21287&LangID=E](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1287&LangID=E)(2017년 12월 11일 최
종검색).

Politifact, “Donald Trump says President Obama wants the U.S. to take in 250,000
people from Syria”, [http://www.politifact.com/texas/statements/2015/
dec/01/donald-trump/donald-trump-says-president-obama-wants-us-t
ake-25/](http://www.politifact.com/texas/statements/2015/dec/01/donald-trump/donald-trump-says-president-obama-wants-us-take-25/) (2017년 12월 4일 최종검색).

Reuters, “Google, Facebook move to restrict ads on fake news sites”, [https://
www.reuters.com/article/us-alphabet-advertising/google-facebook-mo
ve-to-restrict-ads-on-fake-news-sites-idUSKBN1392MM](https://www.reuters.com/article/us-alphabet-advertising/google-facebook-move-to-restrict-ads-on-fake-news-sites-idUSKBN1392MM) (2017년 12월 4
일 최종검색).

The Guardian, “As fake news takes over Facebook feeds, many are taking satire as fact”, <https://www.theguardian.com/media/2016/nov/17/facebook-fake-news-satire> (2017년 12월 4일 최종검색).

The Guardian, “The Onion in the age of Trump: ‘What we do becomes essential when its targets are this clownish’ ”, <https://www.theguardian.com/culture/2017/aug/28/the-onion-in-the-age-of-trump-what-we-do-becomes-essential-when-its-targets-are-this-clownish> (2017년 12월 4일 최종검색).

WISN, “ ‘The Onion’ founder: We do satire, not fake news”, <http://www.wisn.com/article/the-onion-founder-we-do-satire-not-fake-news/8940879> (2017년 12월 4일 최종검색).

World Economic Forum, Global Risks 2013, Eighth Edition, http://www3.weforum.org/docs/WEF_GlobalRisks_Report_2013.pdf (2017년 11월 30일 최종검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짜뉴스 등 비방·흑색선전 대응 유관기관 대책회의」, 2017년 3월 16일 회의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9대 대통령선거 통계, 2017.5.10.

6. 판례

대법원 2003.2.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7.13. 선고 2007도2879 판결 등.

대법원 2005.7.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도11743 판결 등
대법원 2009.4.16. 선고 2008다53812.

대법원 2011.12.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헌재 2010.12.28. 선고 2008헌바157등

헌재 2010.12.28. 선고 2008헌바168.

헌재 2012.08.23. 선고 2010헌마47

헌재 2012헌마734 2013헌바338병합

헌재 2015.07.30. 선고 2012헌마734, 2013헌바338 병합 등

2017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사이버상 유권자의사 왜곡 방지에 관한 연구**

발 행 | 2017년 12월

발 행 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흥촌말로 44

전 화 | 02-503-1114

인 쇄 | (주)현대아트컴 02-3708-7500

•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비매품)